해외보험금융동향 2013년 봄호

KiRi 보험연구원
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 목차

Ⅰ. 테마진단

롬니케어와 오바마케어가 주는 시사점 (이태열) / 1

Ⅱ. 글로벌 이슈와 뉴스

1. 제도 / 16

EU 주요국의 연금개혁 방향 (오병국)

EU 보험모집지침 개정 움직임과 영국 보험업계에 대한 영향 (이정환)

2. 경영전략 / 37

미국 보험회사의 변액연금 판매 축소 이유 (이경아)

3. 규제/감독 / 42

일본 보험산업의 ICP평가 결과와 시사점 (전용식)

4. 글로벌 뉴스 / 63

HSBC 그룹의 PingAn 보험그룹 지분 매각 이유 (이소양)

일본 보험그룹 경영규제 개선 관련 주요 내용 (장동식)

Ⅲ. 해외보험시장 동향

1.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 (이경아) / 77

2. 글로벌 보험시장 동향 / 82

미국 동향 (이경아)

영국 동향 (이정환)

일본 동향 (장동식)

중국 동향 (이소양)

「해외보험금융동향」 창간사

그동안 우리나라 보험산업은 경제발전과 더불어 양적인 측면에서나 질적인 측면에서 비약적으로 성장하였습니다. 보험료 규모는 세계 10위, 보험산업 발전 정도를 나타내는 보험침투도도 세계 5위에 달합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보험산업은 저성장 · 저금리 기조 장기화로 성장동력이 위축되고 있으며, 인구구조 고령화라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더해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보험산업에 대한 감독규제가 전 세계적으로 표준화되고 강화되고 있습니다. 보험산업을 둘러싼 환경 변화는 보험산업에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으며, 주요국 보험회사도 글로벌 차원에서 경영전략을 새롭게 재편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보험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패러다임 변화와 글로벌 보험산업 흐름에 뒤쳐져서는 안 됩니다. 국내 보험회사의 해외진출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경영과 감독규제 방식도 기존의 관행에서 벗어나 국제적인 시각에서 글로벌화 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보험산업은 창조금융으로서 보다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보험연구원은 글로벌 환경변화 속에서 보험산업이 경쟁하고 생존 ·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해외보험금융동향」을 새롭게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해외보험금융동향」은 해외보험 · 금융시장 동향, 글로벌 금융회사의 경영전략, 글로벌 감독규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통해 국내 보험산업의 글로벌화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해외보험금융동향」 발간이 해외 보험 · 금융시장에 대한 정보 제공과 이슈 발굴이라는 보험업계의 요청에 부응하는 시금석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 시의 적절하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험업계가 경영환경 및 감독규제 변화의 국제적 흐름을 파악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면서, 보험산업의 미래를 준비해 나아가는

데에 「해외보험금융동향」이 유익하게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해외보험금융동향」이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2013년 5월

보 험 연 구 원

원장 **강 호**

Ⅰ. 테마진단

◘ 롬니케어와 오바마케어가 주는 시사점

이태열 선임연구위원

1. 검토 배경

2012년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였던 롬니(Romney)가 매사추세츠 주지사 시절 추진한 이른바 롬니케어(Romneycare)는 유사한 형태의 오바마케어(Obamacare)와 최근 복지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흥미로운 시사점을 주고 있음.

■ 2012년 공화당 대통령 후보였던 롬니는 매사추세츠 주지사 재직 중인 2006년 이른바 롬니케어라고 일컬어지는 건강보험 개혁을 추진했으며, 이는 아이러니컬하게도 대선의 경쟁자였던 오바마 대통령의 일명 오바마케어의 롤모델이 되고 있음.[1)]

○ 롬니케어는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개인과 법인에 벌금을 부과하는 한편 취약계층의 건강보험 가입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하여 매사추세츠주의 건강보험 가입률을 크게 제고하였음.

○ 오바마케어는 당초 전국민의 건강보험 가입을 강제함과 더불어 공적보험을 도입하여 공사 간에 경쟁을 유도하는 양면 전략을 추진하였으나 2010년 공적보험 설립을 포기함에 따라 사실상 롬니케어를 전국에 확대·적용하는 형태를 갖게 됨.

1) 롬니케어는 매사추세츠 건강보험 개혁법(Massachusetts health care insurance reform law)으로 2006년에 확정되었으며 오바마케어는 환자보호 및 감당 가능한 의료법(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으로 2010년에 확정되었음.

2 테마진단

■ 매사추세츠주는 롬니케어를 추진함에 있어 여론의 동의를 확보하기 위해 추가적인 증세 없이 기존의 재원을 전용하여 건강보험을 개혁할 것을 약속하였으며, 이에 따라 비용 효율성 문제가 정책의 성패를 판단하는 중요한 잣대가 되었음.

○ 오바마케어와 롬니케어의 성패여부는 취약계층의 건강보험 가입률 개선 정도와 같은 정책 효과 못지않게 이들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 재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확보하느냐에 달렸다고 할 수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도 의료 분야를 포함한 다양한 영역에서 복지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도 정책 효과 대비 재원 소요가 얼마나 효율적이었느냐가 정책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임.

■ 본 연구는 2006년부터 실시된 롬니케어에 대해 파악하고 오바마케어와 비교 분석한 후 다양한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함.

○ 우선 롬니케어의 내용과 추진경과를 살펴보고 정책 효과 및 재원 부담 측면에서 평가함으로써 정책의 성패를 결정한 요인들이 무엇이었는지 파악해보고자 함.

○ 오바마케어의 정책 내용을 롬니케어와 비교 분석하여 그 특징을 파악한 후 향후 제도의 시행과 관련하여 유의해야할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함.

○ 우리나라와 미국은 비록 건강보험 시스템이 서로 다르지만 현재 정책적으로 복지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미국의 경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자 함.

2. 매사추세츠주의 의료보험 개혁: 롬니케어

롬니케어는 적극적인 보조금 지급과 사회보장 확대로 건강보험 미가입자를 현저히 축소하였으며, 기존 사회복지 재원 전용과 연방정부 지원 등을 통해 비용 효율성을 달성함으로써 현재까지 매우 성공적으로 정책을 운용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가. 매사추세츠 건강보험 개혁 배경

■ 매사추세츠주는 미국 내에서 건강보험 가입률이 비교적 높고, 재정 여건이 양호한 편으로서 건강보험 가입 강제화를 시도하기에 비교적 무난한 조건을 갖추었던 것으로 판단됨.

○ 2006년 매사추세츠주의 건강보험 미가입률은 6.4%로서 전체 미국 평균 15.2%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었음.

○ 매사추세츠주의 경우 무보험자들의 도덕적 해이에 의한 과다한 응급실 활용으로 병원 재정이 악화되자 이를 지원하기 위해 Uncompensated Care Pool과 같은 복지 재원을 확보했는데 롬니케어는 이러한 재원을 전용함으로써 재정부담을 경감함.[2)]

○ 매사추세츠주는 연방정부로부터 매칭펀드 형태의 지원을 받아 건강보험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했었으며, 이 재원을 롬니케어를 위한 재원으로 전용할 수 있도록 합의함에 따라 추가 재원을 확보하였음.

■ 롬니케어는 공화당의 롬니 주지사가 추진했으나 당초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도 유사한 견해를 가지고 있었던 덕에 초당적인 협조 속에서 정책이 무난히 추진될 수 있었음.

○ 당시 테드 케네디 상원위원을 비롯한 민주당 정치인들은 전 주민이 건강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입장이었으며, 이러한 상태에서 공화당 출신 롬니 주지사가 건강보험 개혁을 추진하자 정치적으로 큰 추진력을 확보하게 됨.

---

2) 미국의 경우 1986년에 응급의료치료법안(EMTALA: Emergency Medical Treatment and Active Labor Act)이 통과되면서 응급실로 들어온 환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치료를 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그 결과 많은 무보험자들이 응급실을 통해서 종합병원 등에 바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치료비를 내지 않아 병원의 큰 재정 압박요인으로 작용했음. 매사추세츠주의 Uncompensated Care Pool은 이러한 병원재정 압박을 해소하기 위해 운영되었음.

나. 롬니케어의 내용

■ 공화당 출신 롬니 주지사는 2006년 매사추세츠주 전체 주민의 건강보험 가입을 목표로 매사추세츠 건강보험 개혁법을 추진함.

○ 롬니케어는 기본적으로 ① 개인과 고용주에 건강보험 가입 의무를 부과하고, ② 건강보험 상품을 단순화하고 시장경쟁을 촉진하며, ③ 기존의 사회보장을 확대하여 최빈곤층을 지원하고, ④ 관련 재원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조달하는 등 크게 4가지 영역에서 정책을 추진하였다고 볼 수 있음.

■ (가입 의무화) 건강보험 의무 가입을 위해 모든 주민에게 의료보험 가입을 요구하고, 일정 수준 이상을 고용한 고용주에게는 종업원을 위해 건강보험을 가입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의무를 미충족할 경우는 벌금을 부과함.

○ 소득과 가족 구성원의 수를 고려하여 가입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모든 주민은 스스로의 비용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함.

- 가입하지 않은 경우 3단계로 구성된 표준건강보험[3] 중 가장 저렴한 상품의 보험료를 기준으로 절반 이하의 금액을 벌금으로 부과함.

○ 10명 이상의 full-time 종업원을 고용한 고용주는 적어도 표준건강보험 중 가장 저렴한 상품을 종업원들에게 제공해 주어야 함.

- 의무를 충족하지 않은 경우 종업원 1인당 연간 295 달러까지 과징금을 부과함.

■ (경쟁 촉진) 건강보험 시장 효율화를 위해 표준화건강보험 상품을 제공하고 별도의 판매망[4]을 구축함으로써 건강보험 시장을 단순화, 투명화시켜 시장 경쟁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보험료 상승을 억제함.

○ 보험회사들은 필수 보장을 중심으로 제도적으로 설계된 3단계의 표준건강보험을 제

3) 표준건강보험은 서민 또는 소규모 사업자들이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저렴하게 설계된 상품이며, 표준건강보험 이외에 기존의 민영건강보험도 자유롭게 판매될 수 있음.

4) 원명칭이 insurance exchange이기 때문에 보험거래소로 번역할 수 있으나 속성상 건강보험 판매를 위한 별도의 온라인 웹사이트에 가까운 개념이라 본고에서는 판매망이라 칭하였음.

공하여야 하며 보험료는 연령과 흡연 여부만을 변동요인으로 감안한 커뮤니티 요율을 적용함.

- 기왕증에 따른 인수 거부는 불허하였으며, 기초보장과 자기부담금에 대한 최저 보장 수준을 설정하였음.

○ 주단위로 별도의 건강보험 판매망을 설치하여 주민들이 보험회사들의 표준건강보험 상품을 쉽게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장 경쟁을 촉진함.

■ (사회보장 확대) 건강보험 의무가입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취약계층에 대한 Medicaid 적용을 확대하거나 건강보험료 일부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함.

○ Medicaid 적용 대상은 유자녀 가구의 경우 연방빈곤기준(Federal Poverty Level, FPL)의 300%까지, 장기 실업자의 경우 100%, HIV 감염자의 경우 200%까지로 확대함.

-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방빈곤기준은 가족 수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할 때 연방빈곤기준은 연소득 22,350달러, 연방빈곤기준의 300%는 67,050달러로 상당히 넓은 범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 보험료에 대한 보조금 지급은 연방빈곤기준 150% 이하 성인의 경우 전액을, 그 이상인 경우는 연방빈곤기준 300%까지 보험료의 일부를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함.

〈표 1〉 미국 연방 빈곤 기준

(단위: 달러)

연방빈곤기준 / 가구 인원	기준 대비 100%	기준 대비 300%
1	10,890	32,670
2	14,710	44,130
3	18,530	55,590
4	22,350	67,050

자료: Raymond(2011).

■ (재원 마련) 건강보험 의무가입 정책을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기본적으로 기존의 사회복지재원을 전용하거나 미가입자에 부과되는 벌금을 활용함.

○ 사회복지 사업자에 대한 연방정부 지원금, 저소득층 의료비용 지원 재원 등 제도 실시

이전 건강보험 미가입자에 대해 지원하였던 재원을 활용함.

○ 건강보험 가입 미이행 주민 및 고용주에 대한 벌금과 담배에 대한 소비세(한 갑에 1달러)도 정책 수행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함.

- 한 갑에 1달러씩 부과된 담배세에 대한 매사추세츠의 여론은 유의할 만한 증세라고 판단하지는 않고 있음.

다. 롬니케어 평가

■ 건강보험 가입률 측면에서 롬니케어는 도입 4년 만에 미가입률을 2.0% 수준으로 낮추면서 사실상 정책 목표인 완전 가입에 근접하게 됨.

○ 롬니케어가 도입된 2006년 이후 2010년까지 4년간 미국 전체의 건강보험 미가입률은 15.2%에서 16.3%로 상승한 반면, 매사추세츠주의 가입률은 6.4%에서 1.9%로 하락하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임.

○ Courtemanche and Zapata(2012)는 매사추세츠주의 건강보험 개혁 이후 주민들이 스스로의 건강에 대해서 느끼는 만족도 변화를 연구했으며, 그 결과 보조금 지원을 받은 여성, 소수민족, 장년층을 중심으로 만족도가 향상되었다고 함.

〈그림 1〉 미국 연방 및 매사추세츠주 전체연령 건강보험미가입률 추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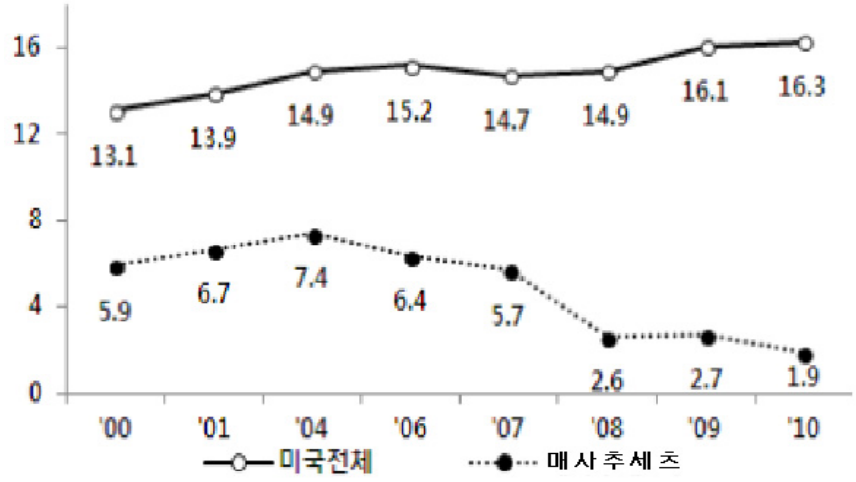

자료: Raymond(2011).

■ 〈표 2〉는 롬니케어 도입에 따라 나타난 관련 비용 증감과 주정부 부담 변화 추이를 나타내고 있음.

○ 취약계층의 건강보험 가입 지원을 위한 보조금과 보조금으로도 가입이 여의치 않은 계층에 대한 사회복지 확대 등에 비용 증가가 집중적으로 나타남.

○ 반면, 기존 건강보험 미가입자와 이들을 지원하는 의료기관에 지급되던 복지재원의 경우 건강보험 가입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남.

○ 본 장에서는 매사추세츠 납세자 재단(Massachusetts Taxpayers Foundation)의 분석을 활용하여 부문별 비용 증감을 종합함으로써 롬니케어의 비용 효율성을 평가하고자 함.

〈표 2〉 롬니케어 관련 비용 증가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2006	2007	2009	2011	2006~ 2011	
					비용 증가	주정부 부담
Commonwealth Care 의료보험 가입 지원	0	133	805	835	835	442
MassHealth 확대 적용[1)]	0	224	569	391	391	196
Health Safety Net Trust Fund	656	665	417	420	-236	-118
복지의료기관 보조[2)]	385	287	287	301	-84	-68
전 체	1,041	1,309	2,078	1,947	906	453

주: 1) MassHealth는 매사추세츠주에서 저소득층에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Medicaid와 어린이를 위한 의료 지원을 하는 프로그램을 통합한 성격을 갖은 것으로서 매사추세츠의 대표적인 의료사회복지 프로그램임.
2) 무보험자들을 지원하던 복지의료기관들의 기능은 제도 시행에 따른 무보험자 감소로 변경이 불가피했으며 따라서 관련 비용 증감을 복지의료기관 보조라는 항목으로 종합하여 소개하였음.

자료: Massachusetts Taxpayers Foundation (2012)을 재구성함.

■ (비용 증가) 주로 취약계층 의료보험 가입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과 MassHealth 확대 등에 비용 증가가 나타남.

○ 롬니케어는 2011년 보조금을 통해 건강보험 가입률을 상승시키는데 약 8억 3,500만 달러를 지출했으며, 이 중 약 4억 4,200만 달러는 주정부 부담으로 나머지는 연방정부 지원으로 조달하였음.

- 보조금 지원은 Commonwealth Care[5)]를 통해 연방빈곤기준 150~300% 가구에 대해

5) Commonwealth Care는 주정부 재정으로 설립된 프로그램으로서 매사추세츠주 취약계층의 건강보험 가입을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서 이루어졌음.

○ 롬니케어는 의료취약자에 대한 Masshealth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2011년에 3억 9,100만 달러를 지출하였고 이 중 절반가량은 주정부가 부담하였음.

- Masshealth 확대는 HIV 보균자, 장애어린이, 장기실업자 등에 대한 적용 범위 확대와 Masshealth 적용 의료행위에 대한 수가인상에 의해 주로 발생함.

■ (비용 감소) 주로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비를 지원하거나 이들에 대한 의료공급을 하던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금이 축소되면서 비용 감소가 나타남.

○ Health Safety Net Trust Fund의 전신은 취약계층 의료비를 지원하던 Uncompensated Care Pool로서 의료보험 가입자가 증가함에 따라 2011년 약 2억 3,600만 달러의 비용이 감소하였으며 이에 따라 주정부 부담도 약 1억 1,800만 달러 감소함.

○ 무보험자들에게 전문적으로 의료서비스를 공급하던 2개 의료기관[6]에 대한 보조금은 무보험자 감소에 따라 축소되었음.

- 전체적으로는 약 8,400만 달러 감소하였으며 이는 주로 주정부 부담 경감으로 나타남.

■ 전체적으로 볼 때 제도 도입에 따라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보험 가입 지원에 소요된 재원 중 상당 부분이 과거 무보험자에 대한 지원 규모 감소로 상쇄되면서 비용 효율성 측면에서 매우 성공적 이었다고 평가됨.

○ 2006년 제도 도입 이후 2009년까지는 전체 비용 부담이 약 두 배 가량으로 급증하면서 여론도 정책 성공 여부에 부정적이었으나 이후 비용 증가세가 안정되면서 최근에는 비용 측면에서도 성공적이었다는 의견이 주류임.

○ 2011년 총 비용 증가액은 약 19억 4,700만 달러로서 2006년 제도 도입 때와 비교하여 9억 600만 달러 비용이 증가했으며, 이 중 주정부 부담은 대략 절반인 4억 5,300만 달러로 나타나고 있음.

- 제도 도입에 따른 비용 부담 증가 규모는 매사추세츠주의 복지 예산 약 320억 달러의 1.4%에 불과하고 2009년 이후에는 증가세도 안정되어 비용 통제에 성공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7]

---

6) 2개 의료기관은 Boston Medical Center와 Cambridge Health Alliance임.

■ 비용 통제 측면에서 롬니케어가 성공할 수 있는 이유는 제도 도입 이전에 전용 가능한 복지재원과 연방정부 지원이 있었다는 것 이외에 고용주에 의한 건강보험 가입이 크게 늘었다는 점을 동시에 지적할 필요가 있음.

○ 본 장의 서두에 언급한 바와 같이 매사추세츠는 의료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자체 및 연방정부 지원 재원이 있었으며 이를 전용함으로써 제도 도입에 따른 비용을 크게 상쇄할 수 있었음.

○ 신규 건강보험 가입자의 약 1/4이 재정이 소요되지 않는 고용주 부담의 직장보험 형태여서 재정 절감에 크게 기여함.

- 물론 신규 건강보험 가입자의 대부분은 Commonwealth Care에 의한 보조금 지급과 MassHealth 적용 대상 확대에 의한 것임.

〈그림 2〉 롬니케어 신규 건강보험 가입자 구성

(단위: 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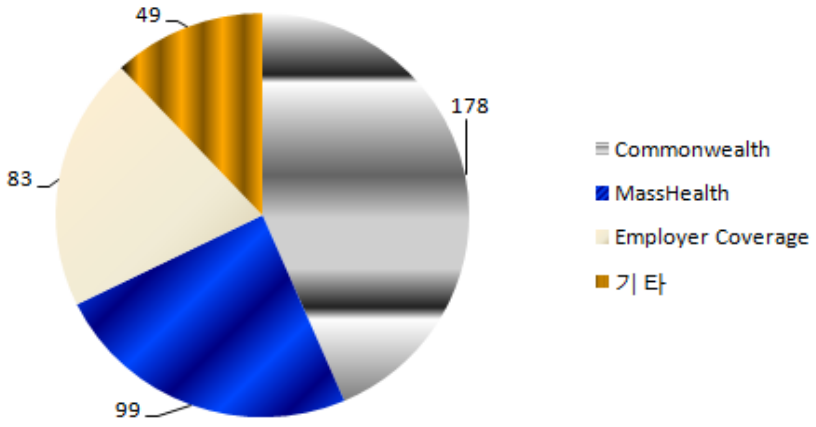

자료: Doonan and Tull(2012).

7) 대표적인 정책 감시단체인 매사추세츠 납세자 재단(Massachusetts Taxpayer Foundation)의 경우 2009년에는 재정부담 급증을 우려했으나 2011년 보고서에서는 매우 긍정적인 입장으로 전환하였음.

3. 오바마 행정부 의료보험 개혁과의 비교

오바마케어와 롬니케어를 비교할 때 보조금과 사회보장 확대라는 정책 방법론은 유사하지만 재원 확보 측면에서 볼 때는 오바마케어가 상대적으로 훨씬 불리할 것으로 판단됨.

가. 오바마케어 개요

■ 오바마 대통령이 2009년 취임과 함께 추진한 건강보험 개혁은 많은 논란과 대립을 겪으면서 매사추세츠주의 롬니케어와 유사한 형태로 변형되었음.

○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한 건강보험 개혁의 핵심은 공공건강보험을 만들어 민영건강보험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상호 경쟁을 통해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것이었음.

○ 그러나 건강보험개혁 법안인 '환자보호 및 감내 가능한 의료법'이 법제화되는 과정에서 공공건강보험 설립을 포기함으로써 매사추세츠주의 롬니케어와 유사한 형태로 바뀌게 됨.

- 공공보험 반대론자들은 공공보험 개입이 오히려 민간부문의 시장경쟁을 저해하거나 부실을 감추고 불공정 경쟁을 함으로써 민간부문을 구축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였음.

■ 건강보험개혁법안에 대한 헌법소원까지 제기되었으나 2012년 대법원 합헌 판결과 오바마 대통령 재선에 따라 오바마케어 추진이 본격화되고 있음.

○ 미가입자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는 핵심 법안 내용에 대한 반대파들의 헌법소원으로 법안 존립 자체가 위기를 맞았으나 2012년 6월 합헌 결정이 나고 오바마 대통령이 같은 해 재선됨에 따라 미국의 건강보험 개혁은 예정대로 추진되고 있음.

- 건강보험 미가입자에 대해서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일어나지 않은 경제 행위에 대해서 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연방정부의 월권이라는 논리로 헌법소원이 제기됨.
- 매사추세츠주의 경우도 사실상 동일한 논리가 적용될 수 있었으나 초당적으로 개혁안이 채택됨에 따라 이러한 갈등이 없었음.

○ 2012년 대선에서는 매사추세츠 건강보험개혁 추진의 주체인 롬니 전 주지사가 공화당 후보가 됨에 따라 건강보험 개혁 논의는 제도의 근간보다는 추진의 주체를 연방정부(오바마)로 할 것인가, 주정부(롬니)로 할 것인가로 맞추어졌음.

- 롬니가 대선후보가 되자 민주당 측에서는 오바마케어가 사실상 롬니케어를 국가전체에 확대 적용하는 것으로서 공화당이 반대할 명분이 없다는 논리를 적극 홍보함.

나. 롬니케어와 오바마케어의 비교

■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롬니케어와 오바마케어의 내용을 비교하면 기술적인 부분을 제외하고는 유사한 점이 많으나 공공복지 확대의 범위나 재원 충당에서 있어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 기존 건강보험 시장에 대한 개선에 있어서도 표준상품의 종류를 몇 단계로 하느냐와 같은 부차적인 사안에 차이가 있을 뿐 사실상 동일하다고 할 수 있음.

○ 건강보험 가입 의무화의 경우에도 대상 범위가 서로 차이가 날 뿐 기본적으로 유사하다고 평가할 수 있음.

○ Medicaid 확대와 보조금 지급의 경우 롬니케어가 더 많은 취약계층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바마케어와는 차이가 있음.

○ 재원 충당 측면에서는 많은 차이가 나고 있는데 롬니케어는 연방정부 지원을 포함한 기존 복지 재원 전용을 주 재원으로 하는 반면, 오바마케어는 연방정부가 부과하는 조세가 주 재원이 되는 상황임.

■ 오바마케어는 롬니케어와 비교할 때 제도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판단됨.

○ 가입률 제고 측면에서 볼 때, 미국 국가 전체는 매사추세츠주에 비해 건강보험 미가입률이 높아 완전 가입률을 달성하기가 훨씬 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보조금을 지원해도 건강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빈곤층의 경우 Medicaid와 같은 공공보험 적용이 필요한데 오바마케어는 롬니케어에 비해 공공보험 확대 폭이 작아 상당수 빈곤층이 보조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미가입자가 될 수도 있을 것임.

○ 재원 조달의 경우 롬니케어는 풍부한 재정 여건에 기반하여 기존의 복지 재원을 활용할 수 있었으나 오바마케어는 이를 증세를 통해 조달해야 하는 만큼 조세 저항 등 정책의 원만한 수행에 난관이 많을 것으로 판단됨.

○ 전체적으로 볼 때, 재정여력이 좋은 하나의 주가 실시한 건강보험 개혁을 미국 전체에 적용하는 형태인 오바마케어는 가입률 제고 및 재원 조달에 있어서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또한 롬니케어의 가입률 제고가 재정지원을 필요치 않는 고용주 가입 보험에 의해 많은 부분이 기여되었다는 점은 오바마케어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음.

〈표 3〉 롬니케어와 오바마케어 비교

대 항목	세부 항목	롬니케어	오바마케어
기존 건강보험 개선	기왕증에 대한 인수 거부	금지	금지
	연령과 흡연여부만 감안한 커뮤니티 요율	적용	적용
	건강보험 최저 기준	기초급부 자기부담금	기초급부 자기부담금
	별도의 건강보험 판매망 설치	설치	주별 설치
	보장범위 단계별 단순화	3단계	4단계
건강보험 가입 강제화	미가입시 과징금	최저보험료의 50%	과세대상소득의 2.5%, 695 달러 중 큰 금액
	고용주 가입 의무	정규직 10인 이상	근로자 50인 이상
Medicaid 확대 및 보조금	Medicaid 확대	유자녀 가구 FPL 300% 장기실업 FPL 100% HIV 감염자 FPL 200%	Federal Poverty Level (FPL) 133%
	보조금 지급	FPL 150~300%	세제혜택 up to FPL 400%
재원 조달	조세 확대	담배세 갑당 1 달러 (특별한 증세 없음)	보험회사, 제약회사, 의료기기회사에 증세, 고가 건강보험상품에 소비세 과세 등
	복지 재원의 전용	건강보험 미가입자 및 저소득층 지원 재원 전용	Medicare 축소

자료: Courtemanche(2012)을 재구성함.

4. 우리나라 건강보험정책에 주는 시사점

우리나라는 롬니케어가 복지정책의 수혜 대상자를 세분화하고 차등 지원함으로써 비용의 효율성을 달성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복지 확대를 추진함에 있어서 선택적이고 보수적인 정책 운영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와 미국은 근본적으로 건강보험 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시사점 도출에 한계가 있지만 재정 효율성을 유지하면서 국민 복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관점에서 시사점을 파악해보고자 함.

○ 미국은 빈곤층과 노년층을 공공복지로 보장하고 나머지 국민들은 스스로 민영건강보험을 가입하는 체제를 가지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전 국민이 의료보험에 강제가입되어 있고 부족한 부분은 국민 스스로 민영건강보험을 통해 보충하는 방식임.

○ 미국의 경우 공공복지의 수혜대상이 아닌 계층에서 미가입자가 증가하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한 것인 반면, 우리나라는 최근 저소득층과 중대질병에 걸린 국민들의 의료비 경감을 위해 공공건강보험 혜택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본인부담상한제의 기준소득을 세분화하여 저소득층 의료비를 경감해주고, 산정특례제를 통해 중증질환에 대해서는 비급여의료비까지 혜택을 확대하여 국민 의료비 부담을 덜어 주고자 하고 있음.

○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양국 모두 정부가 국민 의료 분야에 대한 복지확대를 위해 개입을 확대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기 때문에 정책의 기본적인 방법론과 재원 마련에 있어 미국의 경험은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음.

■ 롬니케어는 재정을 투입함에 있어서 수혜 대상을 세분화하여 차등 지원함으로써 재정 효율성을 도모하였음.

○ 롬니케어는 건강보험 미가입자를 전면지원, 부분지원, 무지원의 3개 그룹으로 나누고 전면 지원 대상인 빈곤층에 대해서 Medicaid 역할을 하는 MassHealth를 적용하고, 부분지원 대상인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소득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원함.

○ 지원을 할 필요가 없는 계층에 대해서는 고용주가 건강보험을 제공하도록 유도하였

으며, 그 결과 정부의 보조 없이 고용주에 의해 가입한 경우가 전체 신규가입자의 1/4 수준인 약 8만 3,000명에 이름.

- 매사추세츠주의 경우 10인 이상의 정규직을 고용한 고용주가 종업원들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부과하고 있음.

○ 재정을 투입해서 복지를 확대함에 있어서 계층을 세분화해서 차별적으로 지원한 미국의 건강보험 개혁 경험은 건강보험 관련 복지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재정 효율성 측면에서 참고할 필요가 있음.

- 최근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복지확대 대상에 지원이 필요하지 않은 계층이 포함되어 불필요하게 재정 투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전형적인 선별적 복지 확대를 추진한 롬니케어의 경우에도 복지 재원의 증가 압력이 컸으며, 이는 복지 확대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재정 효율성을 고려한 보수적인 자세가 필요함을 의미함.

○ 롬니케어가 '증세없는 복지 확대'에 성공한 것은 선별적이고 효율적인 정책 집행뿐 아니라 전용 가능한 복지 재원과 연방정부로부터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임.

- 〈표 2〉를 보면 롬니케어를 위해 Commonwealth Care를 통한 보조금 지급과MassHealth 적용 확대 등에 총 12억 2,600만 달러의 재정 소요가 발생했음.

- 그러나 유사 복지 재원에서 약 3억 3,000만 달러를 전용하고 연방정부로부터 5억 8,800만 달러의 지원을 받으면서 주정부 부담은 4억 5,300만 달러로 축소됨.

○ 롬니케어가 재정 효율성을 위해 지원 대상을 세분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용 가능한 복지 재원과 연방정부로부터의 지원이 없었다면 주정부 부담 증가는 실제보다 약 3배가량 커지게 됨을 의미함.

○ 우리나라의 경우 롬니케어와 같이 유사 성격의 전용 가능한 복지재원이 풍부하지도 않고 재정 지원을 해 줄 다른 주체도 없는 만큼 복지를 위한 재원 부담은 모두 국채나 증세를 통해 감당할 수밖에 없을 것임.

○ 따라서 복지 확대에 따른 예산 소요가 불확실할 때는 꼭 필요한 지원 대상을 정하고 재정 소요를 보아가면서 단계적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보수적인 정책 운영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참 고 문 헌〉

Courtemanche, Charles J., Zapata Daniela(2012. 3), "Does Universal Coverage Improve Health? The Massachusetts Experience", NBER Working Paper Series, 17893.

Doonan, Michael T. and Tull, Catharine R.(2010. 3), "Health Care Reform in Massachusetts: Implementation of Coverage Expansions and a Health Insurance Mandate", The Milbank Quarterly, 88(1).

Massachusetts Taxpayers Foundation(2009. 5), "Massachusetts Health Reform : The Myths of Uncontrolled Costs".

_____(2012. 4), "Massachusetts Health Reform Spending, 2006-2011: An Update on the "Budget Buster" Myth".

Raymond, Alan G.(2011. 11), "Massachusetts Health Reform: A Five-year Progress Report", Foundation Massachusetts.

Symonds, William C.(2006. 4), "In Massachusetts, Health Care for All?". Bloomberg BusinessWeek.

Tuerck, David G., Bachman, Paul and Head, Michael(2011. 6), "The High Price of Massachusetts Health Care Reform", BHI Policy Study.

Ⅱ. 글로벌 이슈와 뉴스

1. 제도

◘ EU 주요국의 연금개혁 방향

오병국 연구원

2012년 EU 위원회는 고령화의 영향으로 연금지출이 크게 확대될 수 있어 국가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연금개혁 기본방향을 제시한 바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 향후 예상되는 GDP 대비 연금지출 비중의 지속적인 상승을 예방하기 위한 연금개혁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인구고령화에 대비한 EU의 연금개혁 내용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모색해보고자 함.

가. 검토배경

■ 2012년 EU 위원회는 고령화 진전으로 연금지출이 크게 확대될 수 있어 국가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한 연금개혁의 기본방향[1]을 제시한 바 있음.

○ 연금수혜층이 늘어남에 따라 연금지출이 크게 증가할 수 있음.

- 2010년 EU 27개 국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17.4%로 나타나 대부분의 국가가 고령사회에 접어들었음.
- EU 27개 국가의 남성 기대수명은 2010년 76.7세에서 2060년 84.8세, 여성 기대수명도 2010년 82.5세에서 2060년 89.1세로 각각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고령화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존재함.

○ 이에 EU 위원회는 2012년에 공적연금 모수개혁,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

1) EU 위원회(2012), Annual Growth Surveys.

등을 연금개혁의 기본 방향으로 제시하였음.

■ 한편, 우리나라 경우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고 향후 GDP 대비 연금지출 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 전체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0년 11.0%에서 2050년 38.2%로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여 연금지출 비중이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 본고에서는 EU 주요국의 고령화로 인한 연금지출 수준의 변화와 이에 대응한 연금개혁 방안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연금개혁과 보험산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나. EU 주요국의 연금지출 전망(2010~2060) 및 연금개혁 방향

1) EU 주요국의 연금지출 전망(2010~2060)[2)]

■ EU 27개국의 GDP 대비 공적연금지출 비중은 2010년 11.3%에서 2060년 12.9%로 1.6%p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그림 1〉 EU주요국의 GDP 대비 공적연금지출 비중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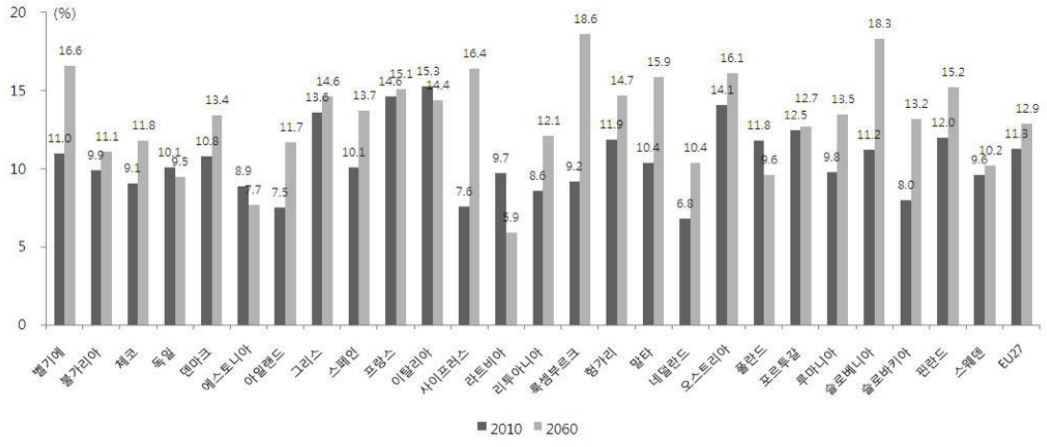

자료: EC(2012).

2) 본 절에서 등장하는 노년부양비, 보상비, 고용률, 연금수혜율에 관한 정의는 〈부록〉을 참조하기 바람.

○ 국가별로는 사이프러스(8.8%p), 벨기에(5.6%p), 스페인(3.6%p) 등의 연금지출 비중이 크게 상승하는 반면, 이탈리아(-0.9%p), 덴마크(-0.6%p), 폴란드(-2.2%p), 라트비아(-3.8%p) 등은 낮아질 것으로 보임.

■ 이는 노년부양비가 크게 늘어나는 등 인구고령화의 영향이 연금지출 증가의 주된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임.

○ 고령화로 인해 노년부양비가 2010년 28.4%에서 2060년 57.7%로 29.3%p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그림 2〉 EU-27의 노년부양비와 GDP 대비 공적연금지출 비중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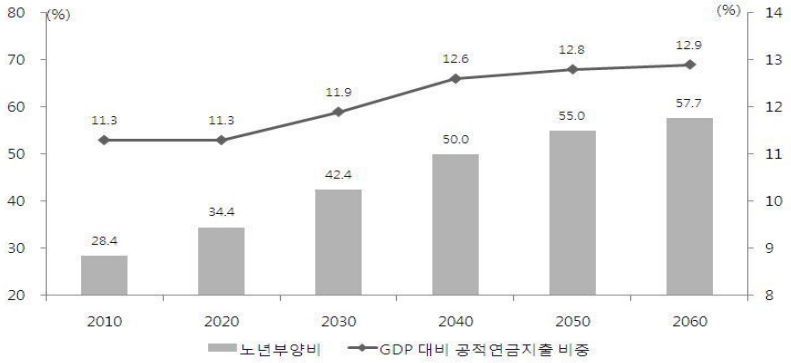

자료: EC(2012).

〈그림 3〉 2010~2060년 GDP 대비 공적연금지출비중(EU-27) 상승요인의 변화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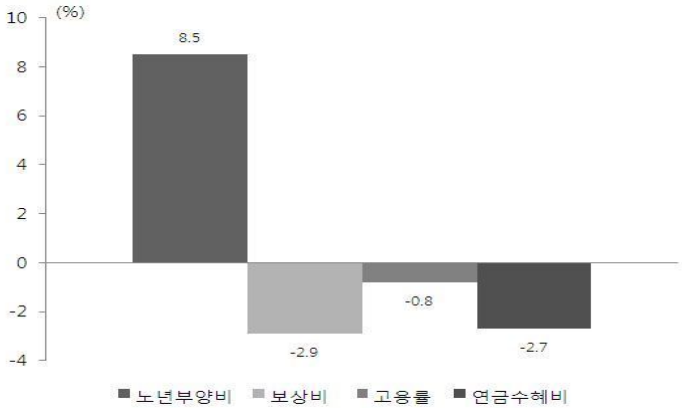

주: 연금지출비중의 상승률은 노년부양비, 보상비, 1/고용률, 연금수혜비율 등의 변화율을 합한 것에 근사함.
자료: EC(2012).

2) EU 위원회의 연금개혁 방향

■ 인구고령화로 인한 연금지출 증가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EU 정책당국의 우려가 커지면서 연금제도 개혁의 중요성이 부각되었음.

■ EU 위원회는 연간성장조사(Annual Growth survey 2012)를 통해 연금개혁의 기본 방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한 바 있음.

○ 연금개혁의 기본 방향은 공적연금 재정안정화를 위한 모수 및 시스템 개혁과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 등으로 크게 요약될 수 있음.

- 모수 및 시스템 개혁 측면에서는 은퇴연령의 상향조정, 연금납입기간의 연장, 조기은퇴에 대한 페널티 강화, 연금수령 가능연령에서 남녀 차별 시정, 연금재정의 자동안정화 장치 도입, 연금지급방식의 확정급여형에서 확정기여형으로 전환 등임.
- 국가재정 부담 가중 혹은 경제위기 발생 등의 경제환경 변화가 공적연금 기능을 약화시킬 경우, 사적연금이 완충 혹은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표 1〉 EU 연금개혁방향의 주요 내용과 추진 현황

구분		내용	추진현황 및 계획
공적연금 재정 안정화 도모	모수 (parameter) 개혁	은퇴 연령 연장	체코,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공적연금의 기여율 인상	독일, 프랑스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 인하	독일, 프랑스 등 국가들이 2060년까지 단계적 하향조정 예정
		남녀간 연금수령의 연령 불일치 시정	2020년까지 남여 수급연령 일치 계획
	시스템 (system) 개혁	연금재정의 자동안정화 장치 도입	독일, 스페인 등은 지속성지수를 도입
		연금지급방식을 확정급여형에서 확정기여형으로 전환	이탈리아는 95년 연금지급구조를 확정급여형에서 확정기여형으로 전환하였고, 다른 EU국가들도 검토중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		퇴직 · 개인연금에 대한 세제상 우대조치 강화	-
		개인연금 납부액 중 일부에 대한 현금 지원	독일[3] 등이 현재 시행중

자료: EC(2012); 한국은행(2013).

3) 독일의 경우 일정 소득수준 이하의 사람들에게 개인연금 가입 시 정부보조금을 지원해주는 리스 터 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음(류건식 · 이상우 2012).

다. 우리나라 연금개혁 등에 대한 시사점

■ 인구고령화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GDP 대비 공적 연금지출 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2010~2050년 GDP 대비 연금지출 비중의 경우 한국조세연구원은 2010년 2.7%에서 2050년 10.8%로, 국회예산정책처는 같은 기간 2.2%에서 7.7%로 각각 상승할 것으로 예측함.

〈표 2〉 국내외 주요 기관의 GDP대비 공적연금 지출 비중 전망

(단위: %)

구분	2010	2020	2030	2040	2050	2060
한국조세연구원	2.7	3.9	6.2	8.6	10.8	-
국회예산정책처	2.2	2.9	4.3	5.8	7.7	8.9

자료: 한국조세연구원(2010); 국회예산정책처(2012).

■ 게다가 우리나라의 경우 EU 주요국보다 연금지출 비중의 상승속도가 빠른 편이어서 인구 고령화가 연금지출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임.

○ 한국조세연구원은 2010~2050년 우리나라의 연금지출 비중은 8.1%p 상승할 것으로 추정하였는데, EU 27개국보다 연금지출 증가속도가 매우 빠를 것으로 예상됨.

〈그림 4〉 우리나라와 EU의 고령화관련 공적 연금지출 비중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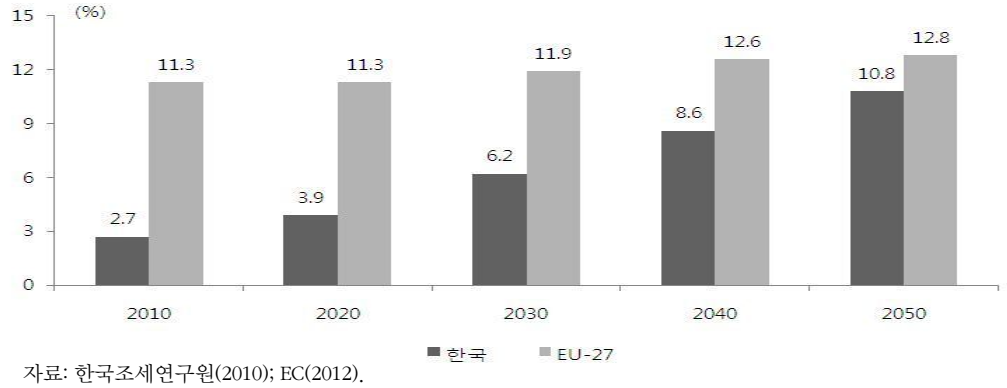

자료: 한국조세연구원(2010); EC(2012).

○ 고령화로 인해 노인인구가 늘어나고 생산인구가 상대적으로 축소되면서 GDP 대비 연금지출 비중이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국가재정 및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협

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함.

- 한국조세연구원(2010)은 고령화관련 재정지출(공적연금 포함)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2010년 33.5%에서 2050년 138.0%로 4.1배 이상 높아질 것으로 추정하였음.
-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의 제3차 장기재정추계(2013) 결과, 인구고령화의 영향으로 인해 국민연금 적립기금이 2060년에 고갈될 것으로 예측됨.

■ 따라서 향후 지속가능한 연금제도를 위한 연금개혁안을 마련할 때 우리나라보다 인구고령화를 빨리 경험하였고 연금개혁을 진행중인 EU 사례를 적극 참조할 필요가 있음.

○ (공적연금 개혁) EU의 연금제도 개혁안 중 모수개혁은 우리나라도 이미 시행된 적이 있으나 향후 연금재정의 자동안정화장치 도입, 확정급여형에서 확정기여형으로의 전환 등 시스템 개혁이 논의될 수 있음.

- 은퇴연령 연장, 기여율 인상 및 소득대체율 인하 등의 모수개혁은 2007년까지 여러 차례 이뤄졌음.

○ (사적연금 개혁)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에 대한 세제우대 조치는 지속되고 있어 사적연금을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서 개인연금 납부액에 대한 일부 현금지원을 검토해 볼만함.

- 2011년 개인연금과 DC형 퇴직연금 납부액의 합산분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상향조정하였고, 2012년 연금소득의 원천분리과세 한도를 6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올리는 등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혜택이 강화되었음.

■ 아울러 우리나라에서도 사적연금 활성화를 도모하는 연금 개혁이 이뤄질 경우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을 판매하고 있는 금융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보험산업 역할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4]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4)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진익·오병국·이성은(2013)을 참조.

〈참 고 문 헌〉

국민연금연구원(2013),「국민연금 제3차 장기 재정전망 결과」.

국회예산정책처(2012),「2012~2060년 장기재정전망 및 분석」.

류건식 · 이상우(2011), 「저소득층을 위한 개인연금 보조금 지원 정책 방향」, KiRi Weekly, 보험연구원.

전병목(2010),「2012~2060년 장기재정전망 및 분석」, 조세 · 재정 brief, 한국조세연구원.

진익 · 오병국 · 이성은(2013. 3), 「사회안전망 체제 개편과 보험산업 역할」, 보험연구원 정책보고서 2013-4.

한국은행(2013. 2. 26),「EU에서의 고령화 파급영향과 노동 · 연금개혁 방향」, 국제경제정보, 2013-4.

European Commission(2012), "The 2012 Ageing Report".

_____(2012), "Annual Growth Survey 2012".

<부 록>

1. EU 연금지출 전망 체계의 소개

가.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한 공공지출 전망 체계

■ 2001년 스웨덴 스톡홀름 유럽의회에서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재정의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 이에 따라서 2006년 유럽 경제정책위원회(Economic Policy Committee; EPC)는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공공지출 전망체계를 설계하고 이를 공표함.

○ 동 작업은 EPC 내 인구고령화작업반(AWG), 노르웨이, 유럽재무장관위원회에 의해서 주로 수행되었으며, 유럽재무장관위원회가 분석과 계산을 담당하였음.

○ 아울러 유럽중앙은행(ECB), OECD, IMF도 동 작업에 참여하였으며, 유로통계청(Eurostat)이 인구구조 변화를 전망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음(EUROPOP2008).

■ 실업수당,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교육, 연금 등을 포함한 공공지출은 인구구조 변화에 영향을 받게 됨.

○ 공공지출전망체계는 인구구조변화에 따라 지출구조가 변화하도록 설계됨.

〈부록 그림 1〉 고령화의 영향을 반영한 공공지출 전망 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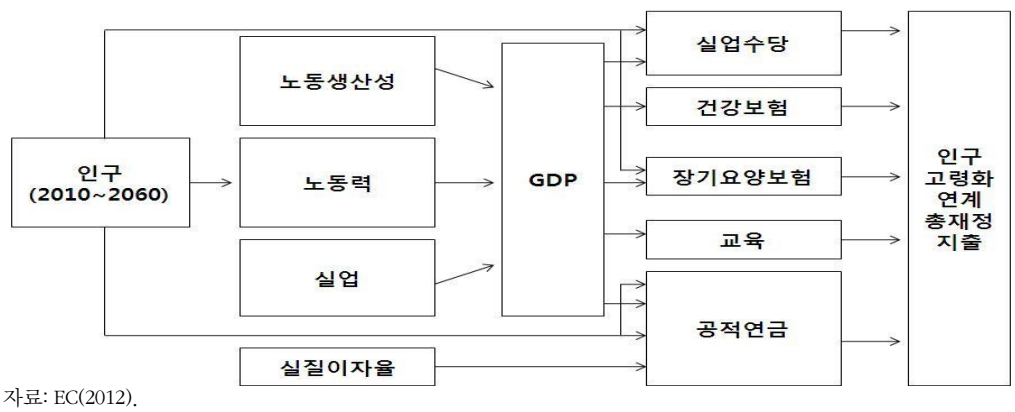

자료: EC(2012).

나. 고령화를 반영한 연금지출 추계 방식

■ EU집행위(2012)는 인구고령화가 노년부양비, 연금보상비, 연금수혜비율에 미치는 효과를 중심으로 연금추계식을 설정하였음.

○ 연금지출 추계식을 구성하는 변수로서 노년부양비, 연금보상비, 고용률, 연금수혜비율 등이 포함됨.

- 노년부양비는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가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변수이며, 이 밖에 연금보상비, 고용률, 연금수혜비율 등이 구성변수화됨.

〈부록 표 1〉 노년부양비, 연금보상비, 고용률, 연금수혜비율의 정의

구분	정의
노년부양비	$\frac{65\text{세 이상 인구}}{20\sim64\text{세 인구}}$
연금보상비	$\frac{\text{연금 수급자수}}{65\text{세 이상 인구}}$
고용률	$\frac{20\sim64\text{세 근로인구}}{20\sim64\text{세 인구}}$
연금수혜비율	$\frac{\text{연금 평균액}}{(\frac{GDP}{20\sim74\text{세 근로시간}})}$

자료: EC(2012).

- 노년부양비, 연금보상비, 연금수혜비율 등이 늘어날수록 GDP 대비 연금지출예상액 비중이 상승하도록 설계됨.

〈연금지출 추계식〉

$$\frac{\text{연금지출예상액}}{GDP}=\frac{65\text{세 이상 인구}}{20\sim64\text{세 인구}}\times\frac{\text{연금수급자수}}{65\text{세 이상 인구}}\times\frac{20\sim64\text{세 인구}}{20\sim64\text{세 근로인구}}\times\frac{\text{연금평균액}}{(\frac{GDP}{20\sim74\text{세 근로시간}})}\times residual$$

$$=\text{노년부양비}\times\text{연금보상비}\times(1/\text{고용률})\times\text{연금수혜비율}\times residual$$

2. EU 연금지출 전망 결과

가. 인구고령화 관련 GDP 대비 공적연금 지출 비중 전망

〈부록 표 2〉 EU 주요국의 GDP 대비 공적연금지출 비중 전망

(단위: %, %p)

국가	2010	2020	2030	2040	2050	2060	2010~2060
벨기에	11.0	13.1	15.5	16.5	16.7	16.6	5.6
불가리아	9.9	9.2	9.6	10.1	11.1	11.1	1.2
체코	9.1	8.7	8.9	9.7	11.0	11.8	2.7
덴마크	10.1	10.8	10.7	10.3	9.6	9.5	-0.6
독일	10.8	10.9	12.0	12.7	13.0	13.4	2.6
에스토니아	8.9	7.7	8.2	8.1	8.0	7.7	-1.2
아일랜드	7.5	9.0	9.0	10.0	11.4	11.7	4.2
그리스	13.6	13.7	14.1	14.9	15.4	14.6	1.0
스페인	10.1	10.6	10.6	12.3	14.0	13.7	3.6
프랑스	14.6	14.4	14.9	15.2	15.1	15.1	0.5
이탈리아	15.3	14.5	14.5	15.6	15.7	14.4	-0.9
사이프러스	7.6	9.5	11.1	12.1	14.4	16.4	8.8
라트비아	9.7	7.3	6.5	5.3	6.4	5.9	-3.8
리투아니아	8.6	7.6	8.4	9.6	10.8	12.1	3.5
룩셈부르크	9.2	10.8	14.0	16.5	18.1	18.6	9.4
헝가리	11.9	11.5	11.1	12.1	13.5	14.7	2.8
말타	10.4	10.6	10.4	11.4	13.4	15.9	5.5
네덜란드	6.8	7.4	9.1	10.4	10.4	10.4	3.6
오스트리아	14.1	15.1	16.7	16.5	16.4	16.1	2.0
폴란드	11.8	10.9	10.9	10.3	10.0	9.6	-2.2
포르투갈	12.5	13.5	13.2	13.1	13.1	12.7	0.2
루마니아	9.8	9.2	10.3	11.6	12.8	13.5	3.7
슬로베니아	11.2	12.2	13.3	15.8	17.9	18.3	7.1
슬로바키아	8.0	8.6	9.5	10.6	12.2	13.2	5.2
핀란드	12.0	14.0	15.6	15.2	14.9	15.2	3.2
스웨덴	9.6	9.6	10.1	10.2	9.9	10.2	0.6
영국	7.7	7.0	7.7	8.2	8.2	9.2	1.5
EU27	11.3	11.3	11.9	12.6	12.8	12.9	1.6

자료: EC(2012).

나. 노년부양비, 연금보상비, 고용률, 연금수혜비율 변화율 전망

〈부록 표 3〉 EU 주요국의 노년부양비 변화율 전망

(단위: %)

국가	2010~2020	2020~2030	2030~2040	2040~2050	2050~2060	2010~2060
벨기에	1.8	2.9	1.7	0.6	0.6	7.6
불가리아	2.4	1.8	1.7	2.2	0.8	8.9
체코	3.2	1.2	1.5	2.3	1.1	9.3
독일	2.4	1.8	1.4	-0.1	0.4	5.9
덴마크	1.5	3.4	2.1	0.4	0.4	7.8
에스토니아	1.5	1.5	0.9	1.5	1.2	6.6
아일랜드	2.0	1.4	1.1	1.5	-0.7	5.3
그리스	1.9	2.3	3.6	2.9	-0.2	10.5
스페인	1.7	2.4	3.1	2.6	-0.1	9.7
프랑스	3.9	2.7	1.8	0.4	0.4	9.2
이탈리아	2.0	2.7	3.5	1.3	0.1	9.6
사이프러스	2.3	2.3	0.8	2.4	2.8	10.6
라트비아	1.1	1.8	1.2	1.5	1.5	7.1
리투아니아	0.8	2.5	1.4	1.2	2.2	8.1
룩셈부르크	1.3	3.3	3.2	2.1	1.4	11.3
헝가리	2.7	1.2	2.1	3.0	2.0	11.0
말타	4.3	2.3	0.3	1.8	2.7	11.4
네덜란드	2.2	2.2	1.5	-0.2	0.2	5.9
오스트리아	1.9	4.6	3.2	0.6	0.8	11.1
폴란드	4.3	3.2	1.3	3.1	2.1	14.0
포르투갈	2.2	2.6	2.9	2.3	0.3	10.3
루마니아	1.9	1.5	3.5	3.6	2.5	13.0
슬로베니아	3.2	3.4	2.3	3.0	0.9	12.8
슬로바키아	2.8	2.8	1.9	3.5	2.4	13.4
핀란드	4.5	2.6	0.2	0.4	0.9	8.6
스웨덴	1.7	1.2	0.8	0.2	1.1	5.0
영국	1.2	1.0	0.6	0.1	0.5	3.4
EU27	2.2	2.9	2.5	1.1	0.2	8.9

자료: EC(2012).

〈부록 표 4〉 EU 주요국의 연금보상비 변화율 전망

(단위: %)

국가	2010~2020	2020~2030	2030~2040	2040~2050	2050~2060	2010~2060
벨기에	0.0	-0.5	-0.3	0.1	-0.1	-0.8
불가리아	-1.3	-1.0	-0.9	-0.6	-0.2	-4.0
체코	-2.2	-0.6	-0.7	-0.8	-0.3	-4.6
독일	-0.8	-1.5	-1.0	-0.3	-0.6	-4.2
덴마크	-0.3	-0.8	-0.5	-0.1	-0.1	-1.8
에스토니아	-1.0	-0.8	-0.3	-0.4	-0.2	-2.7
아일랜드	-0.7	-0.8	-0.4	-0.4	0.3	-2.0
그리스	-1.2	-0.9	-0.8	-0.5	0.0	-3.4
스페인	-0.5	-0.3	-0.2	-0.1	0.3	-0.8
프랑스	-2.0	-0.8	-0.7	0.0	-0.1	-3.6
이탈리아	-2.6	-1.2	-0.9	-0.3	-0.6	-5.6
사이프러스	-0.2	0.3	1.3	1.0	0.3	2.7
라트비아	-0.8	-0.4	-0.2	-0.1	-0.4	-1.9
리투아니아	-0.4	-1.0	-0.5	-0.2	-0.7	-2.8
룩셈부르크	0.4	-0.1	-0.3	0.2	0.2	0.4
헝가리	-2.0	-0.3	-0.4	-1.0	-0.6	-4.3
말타	-1.6	-1.0	0.2	-0.3	0.1	-2.6
네덜란드	-0.5	-0.3	-0.1	0.0	-0.1	-1.0
오스트리아	-0.1	-1.6	-1.5	0.5	-0.3	-3.0
폴란드	-2.8	-1.1	0.2	-0.6	-0.7	-5.0
포르투갈	-0.8	-0.6	-0.5	-0.6	0.0	-2.5
루마니아	-0.8	-0.3	-1.3	-1.5	-0.8	-4.7
슬로베니아	-0.4	-1.3	-0.2	-0.7	-0.4	-3.0
슬로바키아	-1.4	-0.6	-0.1	-1.0	-0.8	-3.9
핀란드	-1.8	-0.7	-0.2	-0.2	-0.2	-3.1
스웨덴	-0.6	0.3	-0.1	-0.1	-0.3	-0.8
영국	-1.0	0.0	-0.1	-0.4	0.0	-1.5
EU27	-1.0	-0.8	-0.5	-0.1	-0.1	-2.5

자료: EC(2012).

〈부록 표 5〉 EU 주요국의 고용률 변화율 전망

(단위: %)

국가	2010~2020	2020~2030	2030~2040	2040~2050	2050~2060	2010~2060
벨기에	-0.3	0.0	0.0	0.0	-0.1	-0.4
불가리아	-0.4	-0.1	0.1	-0.1	-0.2	-0.7
체코	-0.3	0.0	0.1	-0.2	-0.1	-0.5
독일	-0.3	0.0	0.0	0.0	0.0	-0.3
덴마크	-0.3	-0.1	-0.1	0.1	0.0	-0.4
에스토니아	-0.5	-0.6	0.0	0.0	-0.1	-1.2
아일랜드	-0.1	-0.4	0.0	0.0	0.0	-0.5
그리스	-0.9	-0.3	-0.2	-0.4	0.0	-1.8
스페인	-0.8	-1.1	-0.2	-0.1	0.0	-2.2
프랑스	-0.8	-0.4	-0.1	0.0	0.0	-1.3
이탈리아	-0.9	-0.1	-0.1	-0.1	0.0	-1.2
사이프러스	-0.4	-0.2	0.1	0.1	-0.1	-0.5
라트비아	-0.3	-0.7	0.0	0.1	-0.2	-1.1
리투아니아	-0.2	-0.7	-0.1	0.0	-0.1	-1.1
룩셈부르크	0.0	0.0	0.0	0.0	0.0	0.0
헝가리	-0.8	-0.5	0.2	0.0	-0.1	-1.2
말타	-0.8	-0.7	0.0	0.0	-0.1	-1.6
네덜란드	-0.2	0.0	-0.1	0.1	0.0	-0.2
오스트리아	-0.1	-0.1	-0.4	0.1	0.0	-0.5
폴란드	-0.5	-0.2	0.4	0.0	-0.2	-0.5
포르투갈	-0.3	-0.7	-0.1	-0.1	0.0	-1.2
루마니아	-0.1	0.3	0.3	0.1	-0.2	0.4
슬로베니아	-0.3	-0.5	0.1	-0.2	-0.2	-1.1
슬로바키아	-0.2	-0.4	0.4	0.0	-0.3	-0.5
핀란드	-0.5	0.0	0.0	0.0	0.0	-0.5
스웨덴	-0.4	0.0	0.0	0.0	-0.1	-0.5
영국	-0.1	-0.1	-0.1	0.0	0.0	-0.3
EU27	-0.5	-0.3	-0.1	0.0	0.0	-0.9

자료: EC(2012).

〈부록 표 6〉 EU 주요국의 연금수혜비율 변화율 전망

(단위: %)

국가	2010~2020	2020~2030	2030~2040	2040~2050	2050~2060	2010~2060
벨기에	0.6	0.0	-0.3	-0.4	-0.4	-0.5
불가리아	-0.9	-0.3	-0.2	-0.2	-0.5	-2.1
체코	-0.6	-0.3	0.2	0.3	0.1	-0.3
독일	-0.5	-0.1	-0.5	-0.3	0.1	-1.3
덴마크	-0.6	-0.9	-0.9	0.0	0.1	-2.3
에스토니아	-1.1	0.4	-0.6	-1.0	-1.0	-3.3
아일랜드	-0.3	0.1	0.1	0.0	0.1	0.0
그리스	0.4	-0.5	-1.4	-1.4	-0.7	-3.6
스페인	0.2	-0.6	-0.7	-0.6	-0.5	-2.2
프랑스	-0.9	-0.8	-0.6	-0.5	-0.3	-3.1
이탈리아	-0.2	-1.1	-0.5	-0.5	-0.5	-2.8
사이프러스	0.4	-0.7	-1.1	-1.0	-0.9	-3.3
라트비아	-2.2	-1.2	-1.0	-1.2	-1.1	-6.7
리투아니아	-1.2	1.3	0.3	0.2	0.1	0.7
룩셈부르크	-0.1	0.0	-0.3	-0.7	-1.0	-2.1
헝가리	0.0	-0.7	-0.6	-0.4	-0.1	-1.8
말타	-1.2	-0.7	0.5	0.5	-0.2	-1.1
네덜란드	-0.7	-0.1	0.0	0.1	0.0	-0.7
오스트리아	-0.6	-0.8	-1.3	-1.2	-0.7	-4.6
폴란드	-1.2	-1.5	-2.3	-2.2	-1.5	-8.7
포르투갈	0.0	-1.3	-2.0	-1.4	-0.8	-5.5
루마니아	-1.5	-0.4	-0.6	-0.7	-0.6	-3.8
슬로베니아	-1.2	-0.2	0.4	0.1	0.0	-0.9
슬로바키아	-0.3	-0.6	-0.9	-0.7	-0.3	-2.8
핀란드	0.3	-0.1	-0.5	-0.4	-0.3	-1.0
스웨덴	-0.6	-0.8	-0.6	-0.5	-0.3	-2.8
영국	-0.4	0.0	0.2	0.4	0.5	0.7
EU27	-0.3	-0.7	-0.8	-0.6	-0.3	-2.7

자료: EC(2012).

◘ EU 보험모집지침 개정 움직임과 영국 보험업계에 대한 영향

이정환 선임연구원

최근 공표된 「EU 보험모집지침 개정(안)」은 모집인 보수 명시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EU는 이를 통해 소비자 보호 강화와 보험업계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기대하고 있음. 반면 소비자에게 편향된 정보를 제공할 우려도 제기되고 있으며 구속성 금융상품 계약 체결 금지는 보험회사들에게 비용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가. 「EU 보험모집지침 개정(안)」 배경

■ 금융위기 이후 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EU 보험모집지침」[1](Insurance Mediation Directive)(2002/92/ EC)이 재검토되기 시작함.

○ 2010년 11월 G20은 OECD, 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 기타 국제기구들에게 금융서비스 분야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일반 원칙 제정을 요청함.[2]

■ Solvency II 논의 과정에서도 「EU 보험모집지침」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되어 2012년 7월 생·손보 전체 모집인(mediation)과 재보험 모집인을 대상으로 「EU 보험모집지침 개정(안)」(Insurance Mediation Directive Ⅱ)이 공표되었음.[3]

○ 동 개정안은 공청회, 유럽의회, 각료 이사회를 거쳐 2013년 중 채택되어 2015년부터 실시될 예정이나 예정보다 늦어질 가능성도 있음.

---

1) 2002년 채택되고 2005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EU보험모집 지침은 역내 금융서비스의 단일시장 완성과 보험분야 소비자 보호를 위해 보험 모집인의 전문성 요건과 등록의무에 대한 가맹국간 표준화를 규정하고 있음. 규정 내용은 다음과 같음. 첫째, 「적절한 지식과 능력, 바람직한 평판, 전문직업인 배상책임 보험 혹은 동등한 배상 능력 확보, 재무적인 여유」를 보험 모집인의 요건으로 규정하여 가맹국 공통의 최저 기준을 마련. 둘째, 엄격한 요건에 근거한 역내 감독기관의 심사 후 보험모집인 등록 의무화 및 위반시 벌칙 마련. 셋째, 소비자 정보공시 관련 최소 의무 규정. European Commission(2002) 참조.

2) OECD(2011.10).

3) 금융위기 과정에서 투자요소가 포함된 생명보험상품의 불안전 판매로 인해 EU에서 최대 1조 1,000억 유로의 잠재적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이러한 투자요소를 포함한 상품 규제 강화 방안과 EU 보험모집 지침개정이 요구되었음. European Commission(2012) 참조.

■ 「EU 보험모집지침 개정안」 가운데 특히 적용범위 확대와 모집인 보수 명시 의무화가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4)]

나. 「EU 보험모집지침 개정(안)」의 주요 내용

1) 적용범위 확대

■ 개정(안)은 규제 대상을 확대하여 모든 보험구입 채널에 대해 동일 수준의 소비자 보호를 지향하고 있음.[5)]

○ 현행 지침에서는 대리점, 브로커, 방카슈랑스를 보험모집인으로 예시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다이렉트 판매 보험회사, 가격비교 사이트(aggregator), 보험 판매 여행대리점, 렌터카회사뿐만 아니라 손해사정 및 클레임 관련 회사 등 보험금 지급 업무 관련 사업자도 추가함.

■ 영국보험브로커협회(British Insurance Brokers' Association)는 가격비교 사이트(aggregator)와 여행 대리점을 포함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였으나, 손해사정 및 클레임 관련 회사를 포함하는 것에는 반대함.[6)]

○ 이들 사업자는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지급 서비스를 위탁 받은 것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규제보다는 보험회사를 통한 간접규제가 적합하다고 지적함.

2) 모집인의 보수 명시 의무화

■ 보수[7)]와 관련된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보험 모집인과 보험회사에 대해 보수 명시를 의

4) 이외에도 법안 개정을 통해 다음의 목표 달성을 지향하고 있음. 첫째, 적용범위를 모든 판매채널로 확대, 둘째, 주요 조항 위반에 대한 EU 회원국들의 벌칙 제고, 셋째, 자문의 적합성과 객관성 촉진, 넷째, 복잡한 상품개발에 부합하는 판매자의 전문성 확보, 다섯째, 모집인에 대한 회원국 간 등록절차 단순화로 역내시장 통합 등임.

5) 개정안에서는 보험 모집행위를 보험계약시의 조언, 제안, 기타 계약체결 준비를 위한 업무수행, 보험계약 체결행위, 그리고 보험금 지급관련 보험계약 관리로 정의함.

6) Biba(2012. 1. 3)와 포스트온라인 뉴스 참조.

무화함.

○ 모집인이 받는 보수가 소비자가 직접 지불하는 계약자 수수료(fee)인지, 보험회사가 지불하는 사업자 수수료(commission)인지 그리고 계약자 수수료와 사업자 수수료의 구성 및 보수의 총액도 명시하도록 함.

■ EU 집행위원회의 2011년 소비자 설문조사에 따르면 역내 보험 모집인들이 보수를 명시한 건수가 기타 금융상품에 비해 적었음.[8)]

○ 1997~2011년간 금융상품 보수 명시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투자신탁 상품의 45%는 보수가 명시되었으나, 생·손보 상품은 각각 21%, 11%만 명시되었음.

3) 결합판매 명시와 구속성 금융상품 계약체결 금지

■ 소비자 선택 폭을 늘리는 것과 동시에 자동 부대 특약에 따른 부적절한 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결합판매를 명시하였고 구속성 금융상품 계약체결을 금지함.

○ 보험상품을 기타 금융 서비스와 결합하여 패키지 상품으로 판매하는 경우 보험 모집인은 보험상품에 대한 개별 보험료를 제시하여야 함.

○ 1개의 보험상품에 결합된 서비스를 분리할 수 없는 상품은 판매가 금지됨.

- 예를 들어 화재보험은 낙뢰, 풍재, 수재, 도난이라는 화재 이외의 손해도 보상하는 종합 보상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향후 모집인은 소비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결합 서비스를 분리하여 판매하여야 함.
- 은행의 현금카드나 신용카드에 해외여행보험이나 상해보험을 자동적으로 부가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을 제한하는 판매를 막기 위함임.

---

7) 모집인의 보수는 사업자 수수료(commission)와 계약자 수수료(fee)로 구분할 수 있음. 사업자 수수료는 보험회사로부터 받으며 보험료에 비례하고, 계약자 수수료는 소비자로부터 받으며 일반적으로 보험료에 관계없이 결정됨.

8) European Commission(2012. 4).

다. 모집인의 보수 명시 의무화가 영국 보험업계에 미치는 영향

■ 영국 보험업계는 '무조건적인 보수 명시 제시' 규정을 '소비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보수 명시 제시'로 EU에 제의하기로 함.

1) 공급자에게 미치는 영향

■ 기업보험 판매의 경우 모집인 보수 명시 규정이 이미 도입되어 있으나, 개인 보험 판매의 경우 보수 명시에 대한 규제가 없음.[9)]

○ 기업보험 판매의 경우 모집인은 계약자 수수료의 범위를 자유롭게 설정하는 것이 가능함.

- 보험료가 상승할 경우 사업자 수수료도 보험료에 비례하여 상승하기 때문에 기업들은 계약자 수수료를 선호하였고, 이에 따라 계약자 수수료 보수 체계가 확립됨.

○ 개인보험의 경우 보험회사가 상품별로 사업자 수수료 비율을 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준에 따라 모집인의 보수가 결정됨.

- 보험회사가 패키지 상품 개발과 약관 작성 등을 위탁할 경우 사업자 수수료가 높아지며, 이익률이 높은 보험상품의 경우에도 사업자 수수료가 높아짐.
- 모집인은 소비자 이익을 위해 중립적 입장에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소비자는 자문에 대한 계약자 수수료 지불을 꺼리는 경향이 있어 계약자 수수료 보수 체계 확립에 어려움이 있었음.

○ 중소기업 대상 보험 판매의 경우 사업자 수수료와 계약자 수수료가 혼재함.

■ 기업보험 판매의 경우 자발적으로 계약자 수수료를 명시하는 모집인도 존재하여 보수 명시 의무화로 인한 혼란은 적을 것으로 보이나, 개인보험 판매의 경우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임.

○ 영국보험브로커협회는 사업자 수수료를 받는 모집인들이 스스로 금액을 설정할 수

9) FSA.

있는 계약자 수수료 보수체계로 이행하여 장래에는 계약자 수수료 보수가 주류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함.

○ CLYDE & CO[10]는 모집인 보수와 순보험료 노출은 모집인뿐만 아니라 보험회사들 간의 경쟁도 부추길 것으로 예상함.[11]

- 보험 소비자들이 낮은 보수의 모집인을 선호할 경우 시장원리에 따라 모집인보수는 특정한 수준으로 수렴하게 되며 보험료 역시 같은 방향으로 수렴하게 될 것임.

■ '결합판매 명시와 구속성 금융상품 계약체결 금지' 내용이 보험업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12]

○ 구속성 금융상품 계약체결이 금지될 경우 패키지 상품들은 독립 상품으로 개발되어야 하는데, 이는 보험회사의 비용을 상승시킬 것으로 우려함.

- 복수의 상품을 엮어 함께 판매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편리성이나 편익을 증대시키기도 하기 때문에 상세한 조사와 적절한 평가가 필요함.

2) 수요자에게 미치는 영향

■ 보수 명시 의무화는 소비자에게 혼란을 일으킬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임.

■ CLYDE & CO는 개인보험 판매의 경우 많은 소비자들이 모집인 보수 체계에 대해 모르고 있기 때문에 보수 명시가 오히려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고 분석함.

○ 보험상품의 설계부터 판매까지의 과정과 그에 따른 보수체계를 설명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정보는 아님.

○ 소비자들은 보험 상품 구입시 보험상품의 보상 내용이나 보험료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음.

-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0%는 보험상품 구입 시 사업자

10) 보험, 해상, 항공, 에너지, 무역 등의 분야에 특화 영국의 글로벌 로펌.

11) 2013년 1월에 실시한 CLYDE & CO회사의 인터뷰에 의함.

12) ABI(2012. 11)와 2013년 1월에 실시한 ABI의 인터뷰 참조.

수수료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함.

○ 소비자가 보수만을 기준으로 상품을 선택할 경우, 자신에게 적절하지 않은 보험을 구입할 가능성이 있음.

- 보수에 대한 정보가 주어져도 보험 상품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소비자의 편익은 향상되지 못할 것임.

■ 보험업계는 보수 명시 의무만 다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식의 접근은 무책임하고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함.

○ 내부 컨트롤과 모니터링 확립을 통해 보험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주장함.

〈참 고 문 헌〉

ABI(2012. 11), "ABI summary: Insurance Mediation Directive(IMDII)".

Biba(2012. 1. 3), "Biba slams European timetable for commission disclosure".

European Commission(2002), "Directive 2002/92/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9 December 2002 on Insurance Mediation".

_____(2012), "Proposal for a Directive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Insurance Mediation".

_____(2012. 4), "Special Eurobarometer 373 RETAIL FINANCIAL SERVICES REPORT".

FSA, "Insurance: Conduct of Business sourcebook, (ICOBS) 4.4.1".

OECD(2011. 10), "G20 High-level Principles on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Postonline(http://www.postonline.co.uk/post/news/2188982/biba-slams-european-timetable-commission-disclosure).

2. 경영전략

◘ 미국 보험회사의 변액연금 판매 축소 이유

이경아 연구원

MetLife, Hartford, Cigna 등 주요 보험회사들이 변액연금 판매를 축소하면서 미국 변액연금 판매규모가 감소하였음. 보험회사들의 변액연금 판매 축소는 자본효율성 제고를 위한 자본배분의 결과이며, 향후 보험회사들의 변액연금 위험관리는 더욱 강화될 것임.

■ 저금리 지속과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미국 주요 보험회사들이 변액연금 판매 축소 전략을 취하면서 미국 시장에서 변액연금 판매 규모가 감소하였음.[13)]

○ 미국 변액연금 신규보험료 판매액은 2012년 4/4분기 기준으로 전년 동기대비 7.9% 하락한 350억 달러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2011년 2/4분기 이후 최저 수준임.

○ 변액연금 부문의 손실규모 확대로 MetLife, Hartford, Cigna 등 미국 주요 보험회사들은 2012년에 사업부 축소·매각 계획 등을 발표하며 변액연금 신규 공급을 축소하였음.

〈그림 1〉 미국 변액연금 분기 신규보험료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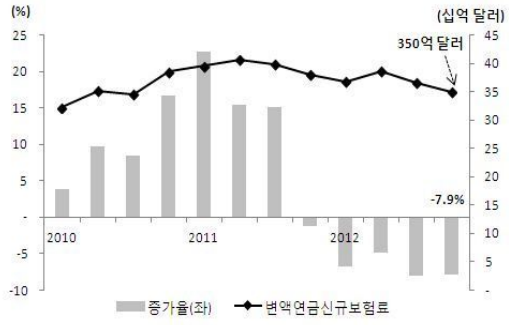

〈그림 2〉 미국 변액연금 연간 신규보험료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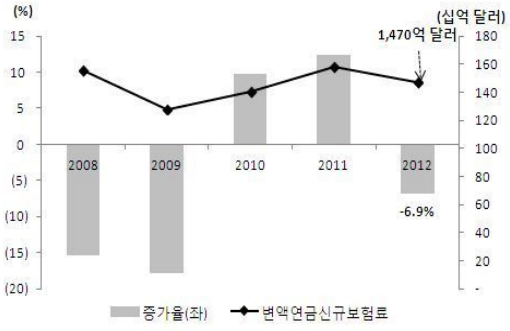

주: 분기증가율은 전년 동기대비.
자료: LIMRA.

13) 경기회복, 주가상승, 투자심리 개선 등 변액연금 판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요측 요인은 전년대비 크게 악화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미국 최대 보험사인 Metlife는 2012년 5월 주식시장에 대한 위험노출을 줄이고 관련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변액연금의 판매비중 축소 계획을 발표함.

○ Metlife는 발표 이후 변액연금 상품의 보증수수료 인상, 기존 고객의 추가납입 제한 등을 통해 변액연금 관련 시장위험을 축소해왔음.

- 또한 2012년 3/4분기에 변액연금과 관련하여 16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했으며 4/4분기 변액연금 판매 역시 감소세를 지속하며 전년 동기대비 -46% 성장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하였음.

○ Metlife는 이를 통해 확보할 가용자본과 비용절감분을 헬스케어와 신흥시장 투자에 전용함으로써 자본이익률 제고를 기대한다고 밝힘.

■ 금융위기 당시 약 34억 달러의 정부지원을 받은 바 있는 Hartford는 2012년 3월 개인연금[14] 신규판매 중지를 선언한 데 이어, 11월에는 종신소득 지급형 변액연금 가입자에 대해 일정 프리미엄을 제시하며 상품해약을 권유하는 '변액연금 환매요청(annuity buyback)'을 발표함.

○ Hartford는 2000년 초 종신형 소득지급보증(GLWB)[15]부 변액연금에 대해 공격적인 판매 전략을 취하며 시장점유율을 높였으나, 금융위기 이후 동 부문의 손실이 급증하자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하고 본업인 손해보험 사업에 집중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해왔음.

- 2012년 3월 생명보험, 연금, 은퇴연금 및 중개사업 매각 발표 이후 7월에는 중개사업부를 AIG로, 9월에는 퇴직연금 사업부를 MassMutual로 매각함.

○ 변액연금 가입자는 환매요청을 수락할 경우 별도의 해약수수료 없이 해약할 수 있으며 적립금 가치의 20%에 상당하는 해약환급금(surrender bonus)을 추가적으로 지급받게 됨.

○ 주주들은 그 동안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해 과도하게 제공된 보증이 기업가치를 심하게 훼손한다고 주장해 왔으며, 이번 매각을 통해 Hartford는 향후 본업인 손해보험업에 집중하겠다고 밝힘.

---

14) 2012년 신규보험료 기준으로 전체 개인연금 중 변액연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67%임.

15) 최저종신인출금보증(GLWB, guaranteed lifetime withdrawal benefit): 연금수급 개시 이후 적립금 수준에 상관없이 가입자 사망 시 까지 일정한 연금지급(lifetime income stream)을 보증하는 옵션.

■ Cigna 역시 2013년 2월 변액연금 사업을 중단하였으며, 캐나다 생보사인 SunLife도 2012년 12월 미국 내 연금사업 매각을 발표함.

○ Cigna는 2000년 이후 이미 변액연금 사업부문을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왔으며 이번 매각을 통해 자본확충 가능성과 이익변동성 감소를 기대한다고 밝혔음.

- 동 사는 재보험방식으로 최대 40억 달러에 상당하는 변액연금 관련 미래보험금지급청구를 Berkshire Hathaway에 이전함.

○ Sun Life도 미국 내 연금사업 부문 매각을 통해 확보된 자금을 아시아 시장에 대한 신규 투자자금으로 활용할 것임을 밝혔음.

- 동 사는 미국 내 연금사업부를 Delaware Life Holdings에 매각함.

■ 보험회사들이 변액연금 부문을 축소하는 이유는 재정적 부담 완화임.

○ 첫째, 시장 여건 악화로 변액연금 적립금 가치가 하락하면서 이미 연금 수급중인 가입자에 대한 약정보증액 지급이 어려워졌음.

- Hartford 가입자의 경우 금융위기 전 최소 5%[16]의 이율로 가입하였으나 시장 상황 악화 이후 투자자산으로부터 약정수익률 이상의 투자수익을 획득하는 것이 어려워졌음.

○ 둘째, 추정 보증채무 증가로 준비금 적립규모가 증가하며 보험회사의 손실 규모가 확대되었음.

○ 셋째, 변액연금 등 투자 상품의 비중 증가로 주가 하락 시 손실 규모가 확대되었음.

- 주가 하락 시 적립금 가치에 비례하여 부과되는 수수료 수입이 감소할 뿐만 아니라 미상각신계약비 등 이연항목 상각이 가속화되며 손실 규모가 증가하였음.[17]

○ 넷째, 정상적인 상황에서 비교적 저렴하게 책정되었던 보증수수료가 위기 시 헤지비용 충당에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보증수수료 인상에 대한 필요성 확대되었음.

- 금융위기 당시 헤지실패 비용 등 보증관련 손실이 급격히 증가하자 보증수수료 수

16) thetrustadvisor.com(2012. 11. 11).

17) 미국 회계기준에서는 이연신계약비(DAC, deferred acquisition cost)를 미래수입의 현재가치인 미래추정총이익(estimated gross profit)을 기준으로 상각 처리함. 따라서 미래추정총이익 예측에 반영되는 실효, 해약, 헤지비용, 투자수익 등의 변동에 따라 미래추정총이익의 재조정이 이루어지고 관련 항목의 상각이 가속화되어 손실 규모가 크게 증가될 수 있음.

준이 너무 낮게 책정되어 위험관리에 적절치 못하다는 문제점이 제시되었음.

○ 다섯째, 변액연금 관련 손실로 인해 기업가치가 훼손되었다는 주주들의 비판

■ 보험회사들의 변액연금 위험관리는 더욱 강화될 것임.

○ 변액연금 사업부 매각을 통해 해당 보험회사는 사업포트폴리오 내에서 위험자산 비중을 조절할 수 있게 되었음.

○ 아울러 변액연금상품에 대한 위험관리 강화로 상품기반 위험관리(product based risk management)[18]와 같은 사전적 위험관리가 확대될 것임.

- 금융위기 당시 미국의 많은 보험회사들이 헤지 프로그램을 구축하고서도 상당 규모의 헤지실패를 경험하였으며, 이로 인해 위기 시 효과적인 사전적 위험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였음.
- 헤지 프로그램 구축이 사후적 위험관리 수단인 반면 상품설계 시 위험완화 요소를 포함하는 것은 사전적 위험관리에 해당함.

○ 투자집합 다변화, 투자자행동 제한, 상품자율장치 등을 상품설계에 활용함으로써 사전적으로 위험을 완화할 수 있음.[19]

- 보험회사는 가입자가 보다 잘 분산된 투자집합(investment portfolio)을 선택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전체 포트폴리오의 수익률 변동성을 낮출 수 있으며, 불리한 시장 상황에서 투자자 행동을 제한함으로써 위기 시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 위험 부담을 줄일 수 있음.
- 또한 상품설계 시 약정이율을 국채수익률에 연동하거나 위험자산 비중을 적립금 가치에 따라 자동적으로 조절하도록 상품별 자율규제 장치(self-governing mechanism)를 포함시킴으로써 시장위험에 보다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음.

18) 시장변화에 따른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상품특성을 상품설계 과정에 포함하는 것으로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서 변액연금 사업자에게 점점 더 중요한 위험관리 수단이 되고 있음.

19) Prudential Financial(2011).

〈참 고 문 헌〉

A.M.Best(2013. 2), "Cigna Exiting Run-Off Variable Annuity Business With Help From Berkshire Hathaway".

Caroline Van Hasselt(2012. 12), "Sun Life Unloads U.S. Annuity Business to Guggenheim". *The Wall Street Journal.*

Hartford(2011), "Annual Report on Form 10-K".

Leslie Scism(2012. 11), "Hartford to Buy Out Annuities", *The Wall Street Journal.*

Prudential Financial(2011), "The Importance of Financial Risk Management in Today's Variable Annuity Market".

Scott martin(2012. 11), "Why Is Hartford Buying Back $5 billion of Annuity Contacts They Worked so Hard to Sell", *The Trustadvisor.*

3. 규제/감독

◘ 일본 보험산업의 ICP평가 결과와 시사점

전용식 연구위원

IMF는 금융부문평가프로그램의 일환으로 2011년 10월 일본의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 보험핵심원칙 준수에 대해 평가하였고 그 결과를 2012년 9월에 발표하였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감독·규제의 국제적 기준 정립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일본의 평가결과는 보험회사 지배구조, 보험부채 시가평가, 전사적 위험관리, 자본적정성 등의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보험감독 방향과 보험회사 경영전략에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보임.

가. 개요

■ 국제적으로 공통적인 감독기준을 통해 2008년 금융위기 재발을 방지하려는 노력이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Supervisors, IAIS)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음.

○ 특히 IAIS는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보험그룹(International Active Insurance Group, 이하 IAIG)"에 대한 국제적으로 공통적인 그룹단위 감독체계(ComFrame)를 마련하고 있음.

■ IAIS는 보험핵심원칙(Insurance Core Principles, ICP), 감독기준(Standards), 지침서(Guidance Paper), 이슈페이퍼(Issue Paper)를 선정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보험 규제·감독 기준을 마련하고 있음.[1)]

○ ICP는 보험부문 감독에 있어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원칙(Frame)을 제시하고 있음.

○ 감독기준은 ICP 항목과 연계되어 있고 ICP 준수에 필수적임.

○ 지침서들은 ICP와 감독기준 수행방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음.

■ IMF의 금융부문평가프로그램(Financial Sector Assessment Program, FSAP) 중 보험부문의 경우 주요국의 보험핵심원칙 준수(Observance)가 평가 대상임.[2)]

1) IAIS는 ICP를 최상위 계층, 감독기준을 차상위 계층, 지침서를 하위계층으로 분류하고 있음.

○ FSAP는 1999년부터 전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글로벌 금융시스템 측면에서 중요한 25개 회원국 및 FSB 회원국은 매 5년마다 의무적으로 평가를 받고, 여타 IMF 회원국은 필요시 자발적으로 평가를 받음.[3)]

○ 개발도상국과 신흥국가들은 세계은행(World Bank)과 IMF가 공동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 세계은행은 금융발전 정도를, 그리고 IMF는 금융안정성을 평가함.[4)]

■ 일본에 대한 ICP 평가 결과를 지배구조, 리스크 관리 및 내부통제, 보험부채 평가, 자본적정성, 거시건전성 감독 및 그룹감독 측면에서 살펴보고, 국내 보험감독 방향 그리고 보험회사 경영전략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나. 일본에 대한 ICP 평가 결과

■ 일본 보험산업에 대한 FSAP 평가는 평가시점의 법률, 규제, 감독과 관행에 근거하여 이루어졌음.

○ 일본(2012), 말레이시아(2013) 등이 2011년 ICP 기준으로 FSAP 평가를 받았음.

■ 일본은 평가 결과 12개 항목에서 준수, 10개 항목에서 대체로 준수, 4개 항목에서 부분적 준수 평가를 받았음.

○ ICP2: 보험감독자, ICP14: 부채평가, ICP24: 거시건전성 감독과 보험감독, ICP26: 위기관리에 대한 국가 간 협력 및 조율 항목에서 부분적 준수 평가를 받았음.

---

2) ICP 항목별 준수수준(level of observance)은 다음의 다섯 가지로 평가됨. 준수(Observed): 감독기준 가운데 적용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제외한 모든 감독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경우; 대체로 준수(Largely Observed): 감독당국의 감독기준 준수 능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지 않는 미미한 결함(shortfall)이 존재하는 경우; 부분적 준수(Partly Observed): 감독당국의 감독기준 준수 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될 수 있는 결함이 존재하는 경우; 미준수(Not Observed): 감독기준 준수를 위한 중요한 진전(progress)이 없는 경우; 적용불가(Not Applicable): 감독기준들이 적용될 수 없다고 생각되는 경우임.

3) 우리나라도 올해 2003년에 이어 두 번째로 IMF와 세계은행으로부터 FSAP 평가를 받고 있음. 2013년 평가 대상국은 한국, 홍콩, 싱가포르, 캐나다, 이태리, 스위스 등 16개국임. FSAP 평가는 4월 금융부문 국제기준 이행, 6월 금융안정성, 9월 최종평가로 이뤄지며 평가 결과는 10~11월 중 IMF와 세계은행 이사회에 보고될 예정임.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13. 4. 3).

4) Factsheet: Financial Sector Assessment Program, http://www.imf.org/external/np/exr/facts/fsap.htm

○ 이외에도 IMF는 지배구조와 임원 적격성 그리고 부채평가와 지급여력과 관련한 전사적 위험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음.

■ 그룹감독 측면에서 일본은 2012년 3월까지 보험그룹 재무건전성 규제를 제정하였다는 점에서 그룹감독의 기초여건을 확립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음.

○ 그러나 IMF는 일본보험그룹 감독에 대한 국제적 협력방안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였음.

1) 임원 적격성과 지배구조[5]

■ 일본의 임원 적격성 규정(Suitability Requirements)은 불완전하다고 평가를 받았고 IMF는 이를 법률로서 규정하는 것을 제언하였음.

○ 보험회사의 지배구조[6]와 사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원 적격성 규정이 공식적(formally)으로 적용되어야 하고, 이 경우 보험회사 임원 적격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평가하였음.

○ 적격성 심사규제가 모든 집행임원과 감사에게 확대되도록, 그리고 금융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보험회사의 지배구조나 사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자격을 제한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제언을 받았음.

■ 일본 보험회사 기업지배구조는 상당히 개선되었으나 이사회 독립성은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평가됨.

---

5) ICP5: 임원적격성(Suitability of Person), ICP7: 기업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 ICP 내용과 자세한 평가결과는 [별첨: 일본에 대한 FSAP평가 결과] 참조.

6) 일반적으로 지배구조는 주주나 이해관계자 이익에 부합하도록 경영자가 기업의 자원을 사용하는지를 감시하는 시스템을 말함. 감독기준 7.0.1, 7.0.3에서는 지배구조는 기업이 관리되고 운영되는 구조, 정책 그리고 과정을 아우르는 시스템을 말하며 기업과 이해관계자의 이익에 가장 부합하는 적절한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음.

○ 이사회와 경영진을 명확히 분리하고 있는 보험회사는 소수에 불과하고 다수의 보험회사들은 감사역회(Advisory Board)가 경영진을 감독하는 구조임.[7]

○ 그러나 감사역회는 이사(directors) 해임이나 주주총회 소집권한이 없어 경영진 감독에 한계가 있음.

○ 또한 위원회(Monitoring Board)를 운영하는 보험회사의 경우에도 사외이사의 정의가 엄격하지 않고 소수인 경우가 많아 이사회의 독립성을 보장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평가임.

■ IMF는 지배구조 관련 중요 사항들을 보험업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였음.

○ 기업지배구조 관련 중요 사항들이 감독시행규칙(Supervisory Guideline)에 명시되어 있는데, 효과적인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상위법에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하고 있음.

2) 리스크 관리와 내부통제[8]

■ 내부통제 시스템[9]이 상장회사에 대해 규정되어있는 점과 일부 보험회사들의 선진적 리스크관리 시스템 보유를 긍정적으로 평가함.[10]

○ 상장회사들은 경영진이 내부통제 평가와 공시 그리고 내부통제 평가에 대한 감사인의 의견을 규정하고 있음(J-SOX).[11]

---

7) 일본의 회사법과 보험업법은 보험회사들이 감사역회 구조(Advisory Board Structure) 그리고 위원회 구조(Monitoring Board Structure)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허용하고 있음. 위원회 구조를 선택한 회사는 이사회가 경영진을 감독하는 영미형 지배구조를 의미함. 감사역회 구조를 선택한 회사는 감사역회가 이사회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는 권한을 갖고 있으나 경영진 감독 기능은 취약한 것으로 평가됨.

8) ICP8: 리스크관리 및 내부통제(Risk Management and Internal Control). 자세한 내용은 [별첨] 참조.

9) 내부통제란 "사업의 유효성과 효율성, 재무보고의 신뢰성, 적용되는 법률 및 규칙의 준수라는 세 가지 목적의 달성을 합리적으로 보증하기 위하여 회사의 이사회, 경영진 및 다른 구성원에 의해 수행되는 프로세스"로 정의됨. The Committee of Sponsoring Organizations of the Treadway Commission, Internal Control Integrated Framework, 1992.

10) 보험회사의 위험관리시스템을 구성하는 요소는 전략·정책, 시행 그리고 통제인데, 내부통제란 보험회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통제의 총합을 일반적으로 지칭함. 또한 리스크관리, 준법감시, 계리 및 내부감사와 관련된 특정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당하게 인가받은 기능을 두도록 하는데 이러한 인가받은 기능들을 통제기능이라 함. ICP8, IAIS.

○ 일부 보험회사들의 경우 전사적 위험관리(Enterprise Risk Management Systems, ERM)[12] 시스템을 도입・운영하고 있으며 초기 개발단계에 있는 보험회사들도 있음.

■ IMF는 보험회사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J-SOX를 모든 보험회사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음.

3) 부채평가[13]

■ 일본의 현행 보험부채 평가방법은 보험계약기간 동안 발생하는 미래의 현금흐름을 고려한 경제적 가치평가[14]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어 보험부채가 충분히 인식되지 못하는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평가되었음.

○ 보험부채가 충분히 인식되지 못할 경우 보험회사의 지급여력평가가 잘못될 수 있음.

○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을 충분히 고려하는 방식으로 부채평가 방식이 개선해야 한다고 IMF는 제언하였음.

4) 재무건전성 목적의 전사적 위험관리[15]

■ 포괄적 위험관리를 위해 감독시행규칙(Supervisory Guideline)이 2011년 개정되었으며, 일본 감독당국은 일부 보험회사들의 전사적 위험관리 체계를 점검하였음.

■ 전사적 위험관리 지침 강화와 내부위험평가제도(Own Risk and Solvency Assessment)[16]

---

11) J-SOX란 Japanese Sarbane-Oxley Act를 의미하는데, 일본의 금융상품거래법(Financial Instruments Exchange Law, FIEL) 중 내부통제관련 부분을 지칭함.

12) 보험회사에 이루어지는 리스크의 인식, 평가, 측정, 모니터링, 통제 및 경감하는 활동들을 통칭하여 전사적 리스크관리로 표현, ICP Standard 16.0.2.

13) ICP8: 부채평가(Valuation). 자세한 내용은 [별첨] 참조.

14) 경제적 평가(Economic Valuation)란 감독기준 14.4.1에서 규정되고 있는데 "보험회사의 재무적 상황에 대한 평가가 숨겨진 보수성이나 낙관주의 때문에 애매해지지 않는 평가를 의미한다...그리고 경제적 평가는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한다".

15) ICP16: 재무건전성 목적의 전사적 리스크관리(Enterprise Risk Management for Solvency Purpose). 자세한 내용은 [별첨] 참조.

16) 내부위험평가제도(Own Risk and Solvency Assessment, 이하 ORSA)는 감독기준 16.11에 "감독체제에

에 대한 명확한 지침 부여 등을 감독당국에 권고하였음.

○ 보험회사들이 리스크 허용한도(Risk Tolerance Limits)[17], 규제자본, 경제적 자본[18] 그리고 리스크 모니터링 절차 및 방법들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함.

○ 전사적 위험관리 측면에서 보험회사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감독하여 보험회사들의 역량이 적정한 속도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함.

5) 자본적정성[19]

■ 일본의 생명·손해보험산업 모두 자본적정성을 준수하고 있다고 평가되었음.

○ 위험계수 조정과 추가적인 위험인식으로 인해 약 20~30% 지급여력비율이 감소할 수 있으나 현재 수준으로도 충분할 것으로 판단하였음.

○ 손해보험에서는 일부 회사들이 지급여력비율이 200% 수준이지만 자본적정성은 양호한 것으로 판단하였음.

■ IMF는 보험회사들이 충분한 재무건전성을 유지해야 하지만 한편으로는 재무건전성 규제가 보험회사 경영에 부담이 되지 않아야 하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

○ 두 가지 목적이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보험회사들이 내부모형으로 자사의 위험을 측정·검토하고 비교 가능한 다른 나라의 보험회사들과 비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였음.[20]

○ 지급여력(Solvency Margin)이 효과적인 자본규제 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시장참여자들이 보험회사가 재무적으로 건전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지급여력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

따라 리스크관리의 적정성과 현재, 그리고 장래에 발생할 재무건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보험회사는 정기적으로 자체 리스크 및 재무건전성 평가(ORSA)를 수행해야 함"이라고 명시되어 있음.

17) 리스크 허용한도는 보험회사가 감내할 준비가 되어 있고 업무에서 노출될 수 있는 리스크 수준으로 경영활동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주는 허용한도임. 감독기준 16.8.2.

18) ICP16에서 경제적 자본(Economic Capital)이란 보험회사의 리스크 허용수준을 충족하고 사업계획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자본을 말함. 감독기준 16.4.1.

19) ICP17: 자본적정성(Capital Adequacy). 자세한 내용은 [별첨] 참조.

20) 내부모형을 사용하여 지급여력을 계산하는 보험사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나, 전사적 위험관리 시스템 구축 및 활용이 확대되어 관련된 모형 사용에 따른 유용성이 확산됨에 따라 내부모형사용에 대한 요구가 커질 것으로 보고 있음.

■ IMF는 리스크마진과 보험회사별 특수한 리스크를 반영하고 리스크 시나리오 모형을 통해 지급여력 규제 개선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하였음.

6) 감독 측면

① 감독자의 독립성

■ IMF는 "현재로서는 보험회사 감독에서 정치적 간섭이 없는 것으로 보이나, 일본 금융청(FSA)의 법체계에는 감독자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요인들이 있음"으로 평가

○ 금융청은 일본 내각(Diet)의 대외부처이며 금융청 예산은 재무성의 승인 후, 행정부를 관장하는 내각(Diet)이 최종적으로 승인하는 구조임.

○ 내각은 금융청이 요청한 예산규모보다 적은 규모의 예산을 최종 승인하기도 한다고 IMF는 지적하며, 독립적으로 재원을 조달하는 방식이 금융청의 독립성을 제고하는 데 유용할 것이라고 제안하였음.

② 거시건전성감독과 보험감독, 그룹감독

■ 그룹감독과 거시건전성 관리 역량 개선을 권고 받았음.

○ 일본은 보험지주회사 감독, 외국 감독기관과 협력 그리고 시장분석 역량 등과 같은 그룹감독과 거시건전성 이슈를 다룰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왔음.

○ IMF는 "일본 금융청은 거시건전성 분석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컨틴전시 플랜을 개발하며, 외국 감독기구와 선제적 협력을 통해서 위기상황을 예측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라고 권고하고 있음.

■ 그룹감독 측면에서는 보험지주회사에 대한 그룹단위 재무건전성 규제를 확립하였음.

○ 2012년 3월부터 적용될 예정임.

③ 위기관리에 대한 국가 간 협력 및 조율

■ 일본 보험회사의 위기관리(Crisis Management)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 간 협력과 조정 역량은 초기 단계라는 평가

○ IMF는 일본 금융청이 위기상황에서 보험회사들에 대한 포괄적인 정책을 개발해야 하고, 그 계획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확보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음.

다. 시사점

■ 일본 보험산업에 대한 FSAP 평가는 국내 보험산업 감독측면과 보험회사 경영전략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음.

1) 감독측면

■ 국내 보험산업과 해외 보험산업의 통합 가속화에 대비할 필요

○ 국내 보험회사의 해외진출과 더불어 외국 보험회사의 국내진출로 보험산업의 국제화가 가속화되며 국내 보험감독기준이 국제 표준에 수렴하고 있음.

○ 국제보험감독자협회가 추진하고 있는 ICP 제정과 그룹감독공통체계는 국내외 감독자들 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보험감독의 국제화를 모색해야 함.

- 감독기관의 독립성, 국제적 감독기준 및 역량 확보가 필요

■ 거시건전성 등 금융안정을 위한 금융업권간 감독 협력이 중요해짐.

○ 보험산업에서의 국내 · 외 통합과 더불어 금융업권간 감독 공조 · 협력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경영전략 측면

■ 임원 적격성과 지배구조 개선

○ 보험회사의 이사진, 경영진, 주요 업무책임자 및 지배주주의 적정한 역할 수행을 핵심원칙으로 규정하고 있고, IMF가 일부 국가의 사례를 일본에 제시했다는 점은 임원 적

격성이 강화될 여지를 보여주고 있음.

○ 보험핵심원칙에서 명시하고 있듯이 "…보험회사가 보험사업의 건전하고 정확한 관리와 운영을 위한 기업지배구조 체계를 확립하고 이행하여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보호" 하도록 해야 함.

○ 국내에서도 법인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관련된 법령의 제 · 개정이 논의된 바 있고, 신정부 출범당시 경제민주화의 핵심 법안 중 하나로 추진되고 있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에서도 검토되고 있음.

■ 내부통제 및 리스크관리 강화를 위한 내부모형과 전사적 위험관리 활용

○ 국내에서도 2004년 자율규제를 실시하며 보험회사의 책임경영 기반을 조성하고 회사 내부의 준법감시 및 감사기능 강화를 추진하였고, 이후 리스크평가제도(RAAS)를 도입하여 내부통제 및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였음.

○ 그러나 위험관리 내부모형, 전사적 위험관리(ERM) 등을 도입하여 경영전략 수립에 적용하고 있는 경우는 보고된 바가 없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보험회사의 경영에 부담이 되지 않지만 충분한 자본적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 확립

○ IMF의 FSAP 평가와 의견에 따르면 보험회사들이 충분한 자본적정성을 유지해야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본적정성 규제가 보험회사 경영에 부담이 되지 않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음.

○ 두 가지 목적이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보험회사들의 내부모형 활용과 비교 가능한 다른 나라 보험회사들과의 비교를 제언하고 있음.

○ 보험회사의 사업과 리스크관리, 자본적정성 규제 흐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내부모형 활용이 고려될 필요가 있음.

[별첨] 일본의 FSAP평가 결과[21)]

ICP1: 감독당국의 목적, 권한 및 책임
(Objective, Powers and Responsibilities of the Supervisors)
보험감독을 담당하는 감독당국과 보험감독의 목적은 명확하게 정의되어야 한다.

■ 평가결과: 준수(Observed)

■ IMF 의견

○ 다수의 공제기관들이 FSA의 감독을 받지 않고 해당 부처의 감독을 받는 것에 대해 감독의 일관성(Supervisory Consistency)과 위기 상황 발생 시 대처 가능한 자원의 효율적 이용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명하였음.

○ 보험감독의 목표가 일관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FSA와 공제를 감독하는 각 부처들은 보험감독과 공제감독을 일관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정보교환 채널을 확립해야 함.

○ 이와는 반대로, 정보는 보험감독을 FSA와 더불어 집중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음.

ICP2: 보험감독자 (Supervisor)
보험감독자는 그 기능과 권한을 수행함에 있어
- 기능적으로 독립적이고, 책임감을 가지며, 투명해야 한다.
- 비밀정보를 보호한다.
- 적절한 법적 보호장치를 가진다.
- 충분한 자원을 가진다.
- 높은 직업기준을 충족한다.

■ 평가결과: 부분적 준수(Partly Observed)

■ IMF 의견

○ FSA의 구조가 보험산업 감독에 있어서 정치적 간섭에서 독립적이지 않을 수 있음.

ICP3: 정보교환 및 보안요건 (Information Exchange and Confidentiality Requirements)
감독당국은 관련 감독기관 및 당국과의 정보 교환 시, 보완, 목적 및 활용 요건을 준수한다.

---

21) Japan: Insurance Core Principles-Detailed Assessment of Observance, IMF Country Report No.12/228, August 2012에서 일부 발췌 및 번역하였으며, 각 ICP항목은 「IAIS 보험핵심원칙」에서 인용하였음.

■ 평가결과: 준수(Observed)

■ IMF 의견

○ 해외 감독당국과의 정보교환 등 협력이 강화되고 있으나 정보 교환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ICP4: 사업허가 (Licensing)

보험사업을 영위하려는 법인은 영업 이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의 요건과 절차는 명확하고 객관적이며 공개적이어야 하고,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한다.

■ 평가결과: 준수(Observed)

■ IMF 의견

○ FSA가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 허가(License)를 내주지만, FSA가 보험사업자에게 승인해주는 보험의 구체적인 종류(specific classes)는 공시되지 않고 있음.

○ 보험의 구체적인 종류가 공시된다면 소비자나 판매회사(intermediaries) 등에게 유용할 수 있음.

ICP5: 임원적격성 (Suitability of Persons)

감독당국은 보험사의 이사진, 경영진, 주요 업무책임자 및 지배주주가 적정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 평가결과: 대체로 준수(Largely Observed)

■ IMF 의견

○ 적합한 인사(Suitability Requirements) 원칙이 중요하지만 현재 이 원칙의 범위(Scope)에서 약간의 괴리가 있음.

○ 몇몇 국가에서는 금융범죄에 관한 판결을 받은 사람이 보험회사의 영업과 지배구조에서 중요한 역할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기도 하고 있음.

○ 이것은 감독자들이 그런 사람들이 적합하지 않다고 선언하는 능력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함.

ICP6: 지배권의 변경 및 계약이전 (Changes in Control and Portfolio Transfer)
개인 또는 법인이 직간접적인 방식에 의해 단독 혹은 공동으로 보험회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로 상당한 소유권 또는 지분을 획득할 경우에는 감독당국의 승인이 요구된다.

■ 평가결과: 준수(Observed)

■ IMF 의견

○ 없음.

ICP7: 기업지배구조 (Corporate Governance)
감독자는 보험회사가 보험사업의 건전하고 정확한 관리와 운영을 위한 기업지배구조 체계를 확립하고 이행하여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해야 한다.

■ 평가결과: 대체로 준수 (Largely Observed)

■ IMF 의견

○ 일본의 기업지배구조는 상당히 개선되었으나 독립성은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보임.

○ 일부 보험회사들이 이사회와 경영진을 명확히 분리하는 지배구조를 갖고 있으나, 다수의 보험회사들은 감사위원회가 경영을 감독하는 지배구조를 갖고 있음.

○ 그러나 감사위원회도 제한적인 측면을 갖고 있음.

- 예를 들면, 이사(directors)를 해임하거나 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
- 게다가 경영진을 감독하는 이사회를 갖고 있는 보험사들의 경우에도 소수의 사외이사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음.
- 더욱이 집행임원의 부인이 사외이사에 포함되기도 할 정도로 사외이사에 대한 정의가 엄격하지 않음.

○ 기업지배구조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들이 보험업법에서 정의되기 보다는 감독시행규정(Supervisory guideline)에서 규정되고 있음.

ICP8: 리스크관리 및 내부통제 (Risk Management and Internal Controls)
감독당국은 보험회사가 회사 전체의 지배구조 체계의 일환으로 리스크관리, 준법감시, 계리적 문제 및 내부 감사 기능을 포함하는 효율적인 리스크관리 및 내부통제시스템을 갖추도록 요구한다.

■ 평가결과: 준수(Observed)

■ IMF 의견

○ 최근 금융청은 위험관리와 내부통제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해왔으며, 일부 보험회사들은 세부적인 시스템(sophisticated system)을 구축하기도 했음.

○ 상장회사들은 내부통제시스템의 적합성에 대한 보증(under J-SOX)을 제공하도록 규제되고 있음.

ICP9: 감독 검사 및 보고 (Supervisory Review and Reporting)

감독당국은 각 보험회사의 사업을 검토하고 회사의 상태, 이사회 및 경영진의 능력, 법률 및 감독규정 준수여부 등을 평가하기 위해 상시감시 및 현장검사를 함께 활용하는 통합적인 리스크 중심 감독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감독당국은 보험회사들을 효과적으로 감독하고 보험시장을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한다.

■ 평가결과: 준수(Observed)

■ IMF 의견

○ 일본 금융청은 보험회사에 대한 위험평가(risk rating insurers) 방법 개발을 완료해야 하고 위험평가(risk assessment)에 대한 내부검토(internal review)를 위한 체계화된 시스템(structured system)을 규정해야 함.

○ 해외지점 제출 재무정보에 대한 감사규정이 없음.

○ 금융청은 이를 해외지점 설립승인을 지원하는 보험회사들에게 개별적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투명하게 적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금융청의 보험회사 감사는 매우 포괄적이고 감사결과가 산업에 유용하다고 평가되고 있으나, 감사 소요 시간이 길다는 평가도 있음.

ICP10: 예방 및 시정조치 (Preventive and Corrective Measures)

감독당국은 보험감독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필요하고도 적절하며, 시의성 있는 예방 및 시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 평가결과: 준수(Observed)

■ IMF 의견

○ 위험평가 체계(risk rating system)의 도입과 솔벤시 마진 컨트롤 수준의 개정은 감독당

국의 선제적 예방 · 시정조치 능력을 제고할 것임.

○ 금융청은 중요하지 않은(minor) 규정 위반 사항은 대화나 설득을 통해 시정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보험회사나 판매회사에 대한 벌금부과와 같은 예방 및 시정조치 수단을 활용해야 함.

ICP11: 강제조치 (Enforcement)
감독당국은 시정조치를 취하며, 필요한 경우 공시되어 있는 명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기초하여 제재조치를 취한다.

■ 평가결과: 준수(Observed)

■ IMF 의견

○ 금융청은 행정 목적의 벌금부과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으며, 적절할 경우 그에 따른 법률개정이 이루어져야 함.

ICP12: 청산 및 시장퇴출 (Winding-Up and Exit from the Market)
보험회사의 시장퇴출을 위한 다양한 선택사항이 법률에 정해진다. 법률은 보험회사의 지급불능을 다룰 수 있는 기준 및 절차를 정하고 지급불능을 규정한다. 보험회사에 대한 청산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법률은 계약자보호에 최우선을 두게 되며, 계약자보상이 지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평가결과: 준수(Observed)

■ IMF 의견

○ 보험회사의 사업유지가 어려울 것 같은 상황에서 보험계약 조건에 대한 수정 가능성은 파산 보험회사에 대한 조치에서 매우 유용한 수단인 것으로 보임.

ICP13: 재보험 및 다른 형태의 위험전가 (Reinsurance and Other Forms of Risk Transfer)
감독당국은 보험회사들이 리스크 전가 프로그램을 적절히 통제하고 투명하게 보고할 수 있도록, 재보험 및 다른 형태의 리스크 전가에 관한 기준을 정한다. 관할구역 내 재보험사를 감독할 때는 재보험업무의 본질을 감안해야 한다.

■ 평가결과: 대체로 준수(Largely Observed)

■ IMF 의견

○ 일본은 자연재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강력한 재보험 커버리지를 만드는 것은 일본 경제와 보험시장에 매우 중요하다.

○ 금융청은 재보험전략과 보험회사들의 상품을 검토하고 있으나, 재보험 규제와 감독은 한층 더 강화될 수 있음.

ICP14: 부채평가 (Valuation)

감독당국은 건전성 측정 목적으로 자산과 부채의 평가를 위한 요건을 설정하여야 한다.

■ 평가결과: 부분적 준수(Partly Observed)

■ IMF 의견

○ 지급여력 평가(Solvency Assessment)는 자산과 부채의 투명한 경제적 가치에 근거해야 하는데, 부채 평가는 보험계약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미래 현금흐름을 고려해야 함.

○ 현재의 보험부채 평가 방법은 이러한 기준(Standard 14.8과 14.9)[22]을 충족하지 못하고, 보험부채들이 완전하게 인식되지 못하는 문제를 발생시킴.

○ 보수적인 가정을 사용한 상각원가법 평가(Amortized-Cost Valuation), 현금흐름의 검사에 기초한 추가적인 준비금(additional provisions), 그리고 부수적인 준비금(supplemental reserves) 등은 이해하기가 어려움.

○ 계약기간동안에 발생하는 미래의 현금흐름이 초기의 보험부채 가치에 고려되지만, 계속적인 충분성을 검증하는 경우에는 꼭 필요하지는 않음.

- 왜냐하면 다음 10년 동안 현금흐름만이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임.

· 역마진과 옵션 · 보증 가치가 부재한 상황에서 현금흐름 방식은 보험부채가 저평가되는 가능성을 초래할 수 있음.

○ 금융청은 현행 가치평가 방식을 예상되어지는 미래의 사건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방식으로 수정해야 함.

---

22) Standard 14.8.현행 추정치는 보험계약상 의무를 이행함에 본질적인 모든 현금흐름을 반영해야 함. 이때 중립적인 현행 가정을 사용함. Standard 14.9. 책임준비금의 경제적 가치가 책임준비금 추정치를 초과하는 금액(Margin over the current estimate)은 전체 보험기간에 걸쳐 보험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때 발생하는 모든 관련 현금흐름의 본질적인 불확실성을 반영함.

ICP15: 투자 (Investment)
감독당국은 보험회사가 직면하는 리스크를 감독하기 위하여 투자행위에 대한 지급여력 규제목적의 요구사항을 설정하여야 한다.

■ 평가결과: 준수(Observed)

■ IMF 의견

○ 보험회사들이 유연한 투자전략을 활용할 수 있도록 투자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있음.

ICP16: 재무건전성 목적의 전사적 리스크 관리 (Enterprise Risk Management for Solvency Purposes)
감독체제는 재무건전성 유지를 목적으로 보험회사와 관련된 모든 주요한 리스크를 관리하도록 요구하는 전사적 리스크 관리 요건을 규정한다.

■ 평가결과: 대체로 준수(Largely Observed)

■ IMF 의견

○ 전사적 리스크관리(Enterprised Risk Management)는 일본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점차 진화하는 분야임.

○ 일부 일본 보험회사들은 선진적인(sophisticated) ERM 시스템을 갖고 있으나, 반면 다른 보험회사들은 ERM 개발의 초기단계에 있음.

○ 감독시행규칙(Supervisory Guideline)은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위험관리를 다루도록 개정되었으며, 검사 매뉴얼(Inspection Manual)은 2011년에 보완되어 위험관리 분야를 명시적으로 다루고 있음.

○ 보험회사 인터뷰 결과, 금융청은 전사적 위험관리와 관련된 주제 검토(thematic review)를 일부 보험사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바 있음.

ICP17: 자본적정성 (Capital Adequacy)
감독당국은 보험회사들이 예측하지 못한 중요 손실을 흡수하고, 감독자의 개입수준을 규정하는 재무건전성 목적의 자본적정성 요건을 설정하여야 한다.

■ 평가결과: 대체로 준수(Largely Observed)

■ IMF 의견

○ 자본건전성 규정이 보험회사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으면서 자본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함.

○ 이러한 균형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조치들이 취해질 수 있음.

- 예를 들면, 보험회사 내부적으로 위험을 모델링하고 그 결과를 검토하도록, 그리고 이러한 규정들을 보험시장이 유사한 국가와 비교하는 조치들을 들 수 있음.
- 최근에는 금융청이 위험계수를 과거 자료에 근거해서 다시 계산하였음.
  · 지난 10년간 자본규제 수준이 200% 이하인 보험회사는 나타나지 않았음. 최근 위험가중치를 높였지만, 대부분의 보험회사들은 임계수준 이상의 자본규제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매우 소수의 보험회사들이 솔벤시 마진을 계산하기 위해서 내부모형을 사용하고 있으나, 내부모형 사용 규정은 가까운 장래에 늘어날 것으로 보임.

ICP18: 모집종사자 (Intermediaries)
감독당국은 모집종사자가 전문적이고 투명한 방법으로 영업하도록 규정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평가결과: 대체로 준수(Largely Observed)

■ IMF 의견

○ 보험회사나 모집중개인에 대한 감독에서 현장 점검(onsite inspection)이 매우 중요함.

ICP19: 모집행위 (Conduct of Business)
감독당국은 보험계약 체결 이전부터 만료될 때까지 보험소비자가 공평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영업행위 요건을 정하여야 한다.

■ 평가결과: 준수(Observed)

■ IMF 의견

○ 외국의 보험감독자들의 경우 소비자 보호를 우선적으로 책임지는 기구를 만들기도 하였는데, 이 기구들이 존재한다는 점은 소비자 보호가 시의적이고 적절하게 다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것임.

ICP20: 공시 (Public Disclosure)

감독기관은 보험계약자 및 시장참여자들이 보험회사의 사업활동, 성과, 재무현황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들로 하여금 적시에 적절하고, 포괄적이며, 충분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한다. 이를 통해 시장규율과 보험회사의 보유 위험 및 위험관리 방법에 대한 이해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 평가결과: 대체로 준수(Largely Observed)

■ IMF 의견

○ 현재 일부 보험회사들이 내부모형을 사용하여 자연재해 위험에 대한 솔벤시 요구자본을 계산하고 있으나 내부모형에 대한 정보 공개는 규정되어 있지 않음.

○ 보험회사들은 상당한 양의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데, 그중 일부 정보들은 법률적으로 요구되는 공시 수준을 넘어서고 있는 반면, 정보공개가 강화되어야 하는 영역도 존재함.

○ 보험회사들은 재보험 출재정도를 공개하고 있음.

○ 이것은 매우 유용한 정보이나 재보험 집중도의 가능한 영향을 평가하는데 사용되지는 못함.

ICP21: 보험사기 예방 및 근절 (Countering Fraud in Insurance)

감독당국은 보험회사 및 보험모집종사자들이 보험사기 예방, 인지, 보고, 적발하기 위해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한다.

■ 평가결과: 준수(Observed)

■ IMF 의견

○ 보험사기 방지는 일본에서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임.

○ 매우 적은 보험사기 사례가 보고되었으나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회사나 소비자들의 비용부담 규모에 대한 통계는 존재하지 않음.

○ 외국의 경우, 보험회사들은 보험사기를 적발하기 위해 정보공유를 하기도 함.

ICP22: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지원 방지
(Anti-Money Laundering and Combating the Financing of Terrorism)
감독당국은 보험사 및 보험중개기관이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지원을 효과적으로 예방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게다가 감독당국 또한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지원을 예방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 평가결과: 준수(Observed)

■ IMF 의견

○ 보험회사들과 모집회사들의 자금세탁금지와 테러자금방지에 대한 감독이 정기적으로 수행되어야 함.

ICP23: 그룹단위 감독(Group-wide Supervision)
감독자는 개별회사 및 그룹단위기준으로 보험회사를 감독한다.

■ 평가결과: 준수(Observed)

■ IMF 의견

○ 그룹단위 솔벤시 규정이 채택되었는데, 보험지주회사들은 2012년 3월까지 그 조건을 충족해야 함.

ICP24: 거시건전성 감시 및 보험 감독
(Macroprudential Surveillance and Insurance Supervision)
감독자는 시장과 금융의 발전 그리고 보험회사와 보험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타 주변 요소를 찾아내고, 주시하고 분석하여 생성된 정보를 바탕으로 보험회사에 대한 감독 활동을 수행한다. 이 같은 감독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여타 국가 당국으로부터 얻은 정보나 혜안이 적절히 이용되어야 한다.

■ 평가결과: 부분적 준수(Partly Observed)

■ IMF 의견

○ 일본 보험산업의 규모와 집중도를 고려해보면 G-SII를 감독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는 일본에 매우 중요함.

○ 일본에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보험회사에 대한 이슈를 다루어야 함.

○ 보험산업 측면에서 중요한 거시건전성 이슈 식별, 이와 관련된 다양한 시나리오 분석과 분석결과를 은행, 증권 등 다른 금융부문 감독자들과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개발해야 함.

ICP25: 감독 협력과 조정(Supervisory Cooperation and Coordination)
감독자는 다른 감독기관 및 감독자들과 보안요구사항에 따라 함께 협력하고 조정한다.

■ 평가결과: 대체로 준수(Largely Observed)

■ IMF 의견

○ 금융청은 일본 보험그룹의 그룹감독자로서 역할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외국 국가들과 의사소통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

ICP26: 위기관리에 대한 초국가 간 협력 및 조율
(Cross-border Cooperation and Coordination on Crisis Management)
특정 보험회사와 관련된 국제적인 위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감독자는 해외의 관련 감독자와 협력하고 조율한다.

■ 평가결과: 부분적 준수(Partly Observed)

■ IMF 의견

○ 일본 보험회사들의 위기관리와 관련된 국가 간 협력 · 조정 능력은 미미한 수준임.

〈참 고 문 헌〉

금융감독원 · 생명보험협회 · 손해보험협회(2012),「IAIS 보험핵심원칙」.

IMF(2012), "Japan: Insurance Core Principles - Detailed Assessment of Observance", IMF Country Report No. 12/228.

http://www.iaisweb.org/ICP-on-line-tool-689

4. 글로벌 뉴스

◘ HSBC 그룹의 PingAn 보험그룹 지분 매각 이유

이소양 연구원

2013년 2월, HSBC 그룹은 수익성 제고, 유동성 확보, 은행규제 강화에 대한 대응 등을 이유로 PinAn 보험그룹의 지분을 전량 매각하였음. HSBC 그룹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시장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중국시장에서 보험업을 축소하고 은행업을 강화하는 전략을 선택한 것으로 보임.

가. 검토배경

■ 2013년 2월 글로벌 금융회사인 HSBC 그룹은 보유 중이던 PingAn 보험그룹 지분을 전량 매각하였음.

○ HSBC 그룹은 수익성 제고, 유동성 확보 및 은행규제 강화에 대한 대응을 위한 사업부문 개편의 일환으로 PingAn 보험그룹 지분 매각을 결정했다고 발표함.

- 2011년 이후 HSBC 그룹은 홍콩, 싱가포르, 아르헨티나, 멕시코의 일반보험 사업부문 등 비핵심 사업부문 40여 개를 매각하였음.

○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HSBC 그룹이 중국보험시장의 성장성을 부정적으로 판단하여 중국시장에서 보험 사업을 철수하는 조치라고 평가하기도 하였음.

■ 이하에서는 HSBC 그룹의 중국시장 진출 현황 및 PingAn 보험그룹 지분 매각 이유를 살펴보았음.

나. HSBC 그룹의 중국사업 현황

■ HSBC 그룹은 중국시장에서 은행업과 보험업을 겸영하고 있음.

○ HSBC 은행(중국)을 설립하였고, 교통은행[1]을 비롯한 중국 현지 은행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

○ 보험부문에서는 HSBC 그룹이 PingAn 보험그룹 지분을 2002년 매입하였고, National Trust와 각각 50%씩 출자하여 HSBC 보험(중국)[2]을 설립하였음.

- HSBC 그룹은 PingAn 보험그룹 지분을 2002년 10% 매입한 후, 2005년 19.91%까지 확대하였으나 2011년 PingAn 보험그룹의 증자로 15.57%로 감소하였음.
- HSBC 보험(중국)의 등록 자본은 2009년 5억 위안에서 2013년 8억 위안까지 증가하였음.

○ 한편, HSBC 그룹은 계열사를 통해 2005년에 ShanXi Trust와 각각 49%와 51%씩 출자하여 합자펀드회사를, 2012년에 Guangzhou Securities 증권사와 각각 33%와 67%씩 출자하여 합자컨설팅회사를 설립하였음.

〈그림 1〉 HSBC 그룹의 중국시장 진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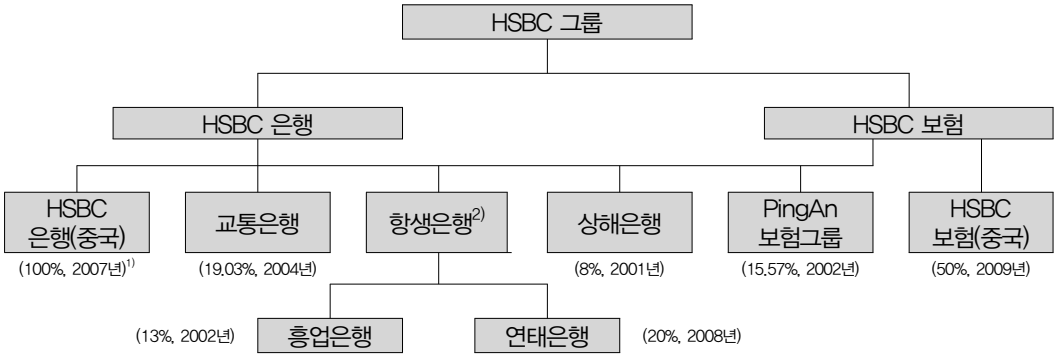

주: 1) 괄호 안은 지분율과 지분투자 연도를 나타냄.
2) 항생은행은 1933년에 홍콩에서 설립되었으며 1965년에 HSBC 그룹에 인수되었음.
자료: HSBC Holdings plc(2011).

1) HSBC 그룹은 2004년에 교통은행 지분의 19.9%를 매입하였고, 2007년 교통은행의 기업공개로 HSBC 그룹이 보유한 지분이 18.6%까지 소폭 감소되었지만 추가 매입으로 다시 19%까지 늘어남(채원영 · 이소양 2013).

2) 『중화인민공화국외자보험공사관리조례』(中華人民共和國外資保險公司管理條例)에 따르면 외국계보험회사가 중국에서 독자생명보험회사를 설립하지 못하고 외국계보험회사의 합자생명보험사에 대한 출자비율도 상한이 50%로 제한됨.

다. HSBC 그룹의 PingAn 보험그룹 지분 매각

1) PingAn 보험그룹 지분 매각 과정

■ 2012년 12월 6일 HSBC 그룹은 PingAn 보험그룹 지분 전량을 태국 챠런 폭판드그룹(CPG)[3]에 매각하기로 하였다고 발표함.

○ 2012년 말 PingAn 보험그룹은 시장가치[4] 기준으로 중국 2위 보험회사이며, HSBC 그룹은 PingAn 보험그룹 지분의 15.57%(12억 3,000만 주)를 보유하고 있음.

○ HSBC 그룹은 보유 중인 PingAn 보험그룹 지분을 주당 59.6홍콩달러(약 8,234원)에 매각하였으며 매각 대금은 약 93억 8,500만 달러(약 10조 1,690억 원[5])임.

■ 2013년 2월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CIRC)는 HSBC 그룹의 PingAn 보험그룹 지분 매각을 승인하였음.[6]

2) PingAn 보험그룹 지분 매각 이유

〈경영실적 악화 대응〉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HSBC 그룹의 경영실적은 지속적으로 개선된 추세로 보였으나 최근에 들어 다시 악화된 모습으로 나타남.

○ HSBC 그룹의 영업수익, 세전수익 및 당기순이익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1년까지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2년 소폭 감소하였음.

○ 또한 핵심자기자본비율(core tier 1 capital ratio)과 자기자본비율(total capital ratio)은

3) 챠런 폭판드그룹(CPG)은 1921년 태국에서 설립되었으며 1979년부터 중국시장에 진출하여 농업식품 산업에서 금융산업이 포함된 종합그룹으로 성장하고 있음.

4) 2012년 말 기준 중국보험시장 상위 4사의 시장가치는 각각 중국인수보험그룹 4,994억 위안, PingAn 보험그룹 3,396억 위안, 중국태평양보험그룹 1,829억 위안 및 신화생명보험회사 786억 위안임.

5) 2012년 12월 4일 기준 환율 1,083.5원/달러 적용.

6) 중국 『보험공사지분관리방법』(保險公司股份管理方法)은 보험회사 지분 5% 이상을 매입하는 경우 인수자는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CIRC)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각각 2009년 9.4%, 10.8%에서 2010년 10.5%, 12.1%로 상승하였으나 2011년에 들어 10.1%, 11.5%까지 하락하였음.

〈표 1〉 HSBC 그룹 경영실적

(단위: 억 달러, %)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영업수익	886	786	800	835	825
세전수익	93	70	190	219	206
당기순이익	65	67	142	179	153
핵심자기자본비율	7.0	9.4	10.5	10.1	12.3
자기자본비율	8.3	10.8	12.1	11.5	13.4

주: 2008년과 2009년의 실적저하에는 북미 지역에서 부동산 · 자동차 담보대출 및 개인신용대출, 신용카드, 중저가 보험 등 소비자 금융을 취급하는 HSBC Finance Corporation에서의 대규모 순손실 발생이 영향을 미쳤음(정문영 · 윤희경 2013).

자료: HSBC Holdings plc(2009, 2010, 2011, 2012, 2013).

■ HSBC 그룹이 PingAn 보험그룹 지분을 매각한 이유는 자사의 사업부문 개편을 통한 수익성 제고, 유동성 확보 및 은행규제 강화에 대한 대응 등인 것으로 분석됨.

○ 첫째, HSBC 그룹은 PingAn 보험그룹 지분 매각으로 약 30억 달러의 자본이득을 취득하였음.

○ 둘째, 2012년 유럽 및 북미의 신용스프레드(credit spread) 축소로 인한 22억 달러 투자손실, 영국에서의 고객배상준비금 23억 4,000만 달러 부과 및 미국에서 돈세탁 혐의로 인한 합의금 19억 2,000만 달러 총 42억 6,000만 달러 지출 등 유동성 확보가 필요한 상황임.

○ 셋째,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바젤Ⅲ[7]에 대응하여 핵심자기자본비율을 제고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계열회사 지분 매각 필요성이 높아짐.

〈중국사업 전략 전환〉

■ HSBC 그룹은 PingAn 보험그룹에 대한 투자수익이 감소하고 PingAn 보험그룹과의 시너지 추진 실적도 미흡한 것으로 판단

○ 2012년 HSBC 그룹의 교통은행 및 흥업은행에 대한 투자수익은 23.4억 달러로 전년대

7) 2013년 1월 1일부터 바젤Ⅲ가 시행되는 국가는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중국, 홍콩, 인도, 일본, 멕시코,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남아프리카, 스위스임(채원영 · 이소양 2013).

비 27.2% 증가하였으나 PingAn 보험그룹에 대한 투자수익은 7.6억 달러로 전년대비 19.3% 감소하였음.

- 2012년 교통은행의 대출 및 신용카드사업, 그리고 흥업은행의 대출 증가로 경영성과가 크게 개선되었음.
- 2012년 PingAn 보험그룹의 자회사인 PingAn 은행[8]에 대한 투자수익은 69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33.4% 증가하였으나, 산하 생명보험회사 및 손해보험회사의 당기순이익은 각각 65억 위안과 47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35.2%와 6.6% 감소하였음.
  · 2012년 자본시장 불황으로 PingAn 보험그룹의 투자수익률이 전년대비 0.6%p 하락한 3.2%에 그쳤으며 유가증권 투자손실 금액은 159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338% 급증하였음.

〈표 2〉 HSBC 그룹 중국시장 투자수익

(단위: 억 달러)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교통은행	7.4	7.5	9.9	13.7	16.7
흥업은행	2.2	2.2	3.3	4.7	6.7
PingAn 보험그룹	3.2	5.5	8.5	9.5	7.6

자료: HSBC Holdings plc(2009, 2010, 2011, 2012, 2013).

○ 또한 은행업을 강화하며 종합금융회사로 성장하고 있는 PingAn 보험그룹은 중국시장에서 HSBC 그룹의 강력한 경쟁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짐.

- PingAn 보험그룹은 2012년에 심전발전은행(SDB)을 PingAn 은행(PAB)[9]으로 개편하며 은행업을 확대, HSBC 그룹과 경쟁관계를 형성하였음.

8) PingAn 보험그룹은 2010년 5월 심전발전은행의 지분 16.76%를 매입하였으며 2010년 9월에는 52.38%까지 규모를 확대하였음.

9) 2012년 말 기준 PingAn 은행의 총자산 및 총여신 규모는 각각 1조 6,065억 위안(약 290조 7,765억 원)과 7,208억 위안(약 130조 4,648억 원)임.

〈그림 2〉 PingAn 보험그룹 계열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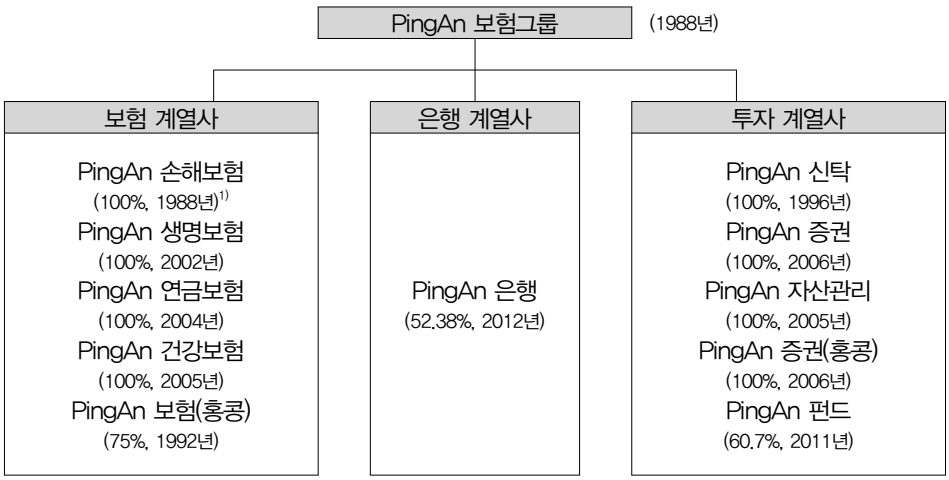

주: 1) 괄호 안은 지분율과 지분투자 연도를 나타냄.
자료: PingAn 보험그룹 홈페이지.

○ PingAn 보험그룹 지분 매각은 HSBC 그룹이 중국시장에서 은행 사업을 강화하려는 전략이라는 평가도 있음.

- HSBC 그룹은 PingAn 보험그룹 지분을 매각하였으나 중국이 여전히 핵심시장이라고 평가하며 중국 교통은행 지분을 계속 보유할 것으로 알려짐.
- 2013년 4월 HSBC 그룹은 교통은행과 인민폐(RMB)업무 합작 합의서(MOU)를 체결하였으며, 교통은행은 HSBC 그룹의 인민폐업무 전문가를 자사의 임원으로 임명하였음.

〈중국 보험시장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평가〉

■ HSBC 그룹은 중국시장에서 PingAn 보험그룹 지분을 매각하였으나 HSBC 보험(중국)을 통해 중국에서 보험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중국 보험시장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임.

■ 중국 보험산업 성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HSBC 그룹의 PingAn 보험그룹 지분 매각 결정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워 보임.

○ 중국 보험산업 수입보험료 증가세는 2008년 이후 둔화되고 있으나 총자산 증가율은 두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음.

- 중국 보험산업 수입보험료는 2011년[10] 1조 4,339억 위안으로 전년동기 1.3% 감소하였으나 2012년[11] 1조 5,488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8.0% 증가하였음.
- 2012년 말 기준 중국 보험산업 총자산은 7조 3,546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22.3% 증가하였음.

〈그림 3〉 중국 보험산업 수입보험료 및 총자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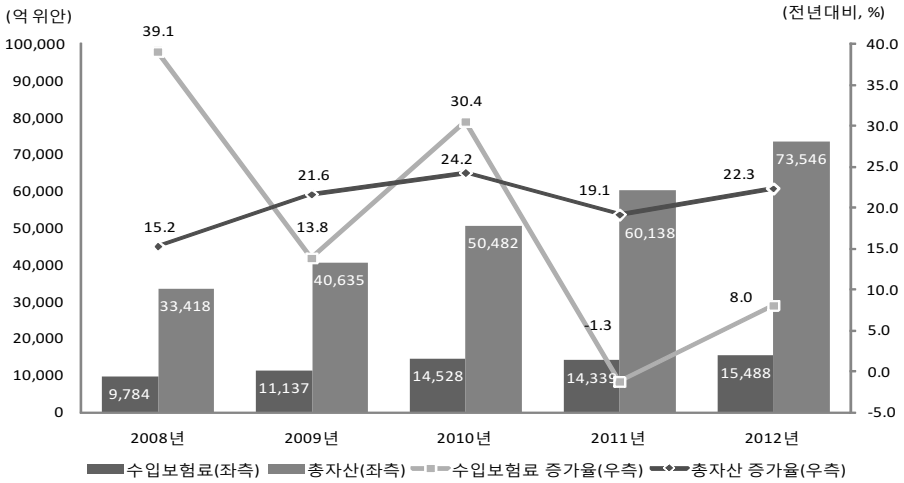

자료: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홈페이지.

○ 또한 2011년 기준 중국의 보험침투도 및 보험밀도는 각각 3.0%와 163달러로 우리나라의 11.2%, 2,529달러에 비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 향후 중국 보험산업의 성장성은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10) 2011년 중국 보험산업 수입보험료는 회계기준 개정, 방카슈랑스 판매채널 규제 강화 및 은행의 고금리 재테크 상품의 출시로 생명보험 수입보험료가 급락하면서 전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이소양 2013).

11) 2012년 손해보험 둔화에도 불구하고 생명보험의 호조, 건강보험과 상해보험의 고성장으로 중국 보험산업 수입보험료는 전년에 비해 회복한 것으로 나타남(이소양 2013).

〈그림 4〉 중국 보험침투도 및 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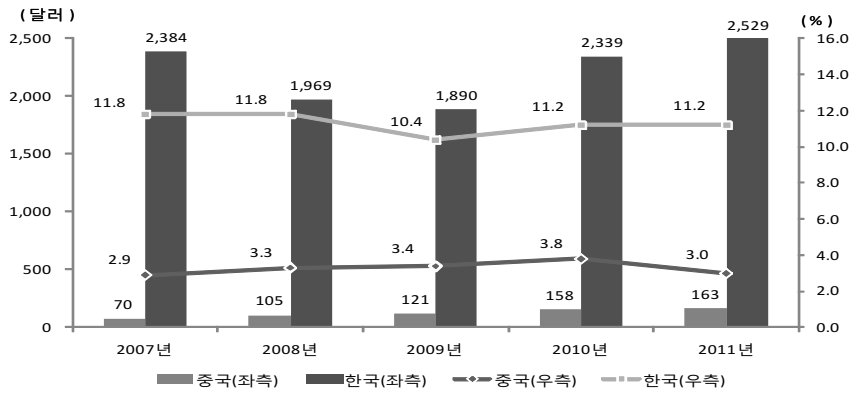

자료: SwissRe Sigma(2008, 2009, 2010, 2011, 2012).

■ 2001년 중국의 WTO 가입 후 외국계 보험회사들이 중국보험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으며, 최근 주요 외국계 보험회사들이 자본을 확대하면서 중국 사업을 강화하고 있음.

○ 2012년 3/4분까지 중국에 진출한 외국계 보험회사는 55개(2001년 대비 120% 증가), 외국계 보험회사들의 수입보험료 및 총자산은 각각 390억 위안(2011년 대비 1,200% 증가)과 3,275억 위안(2001년 3,650% 증가)임.

○ 2012년부터 2013년 3월 말까지 주요 외국계 보험회사들이 산하 합자보험회사들에 대해 약 20억 위안을 증자하였음.[12)]

- 중국보험시장에 대한 증자는 외국계 보험회사들이 중국에서 시장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해 지급여력을 확보하는 조치라고 분석됨.

○ 한편, 2012년 12월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가 발표한 '2012년 중국 외국계 보험회사 실태조사'[13)]에 따르면 중국 보험시장에 진출한 주요 외국계 보험회사들은 향후 3년 내에 고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함.

12) AIA, Liberty Insurance, Standard Life, Metlife, Samsung Life, ING, Skandia, HSBC insurance는 각각 산하 합자보험회사에 6.3억 위안, 4.7억 위안, 3.5억 위안, 1.7억 위안, 1.5억 위안, 1억 위안, 1억 위안 및 0.7억 위안을 증자하였음.

13) 동 조사는 PwC가 중국 보험시장에 진출한 18개 외국계 생명보험회사와 13개 외국계 손해보험회사를 대상으로 실시됨(이소양 2012).

〈참 고 문 헌〉

이소양(2012),「주요 외자계 보험회사, 향후 3년간 고성장 전망」,『Kiri Weekly』, 보험연구원.

_____(2013),「중국 보험산업 최신 동향」,『Kiri Weekly』, 보험연구원.

정문영 · 윤희경(2013),「계속되는 위기 하에서의 미국 · 유럽 대형은행 현황 분석(IV)」, Issue Report, 한국기업평가.

채원영 · 이소양(2013),「글로벌 금융회사들의 전략 수정: HSBC의 핑안그룹 지분매각 추진」,『Kiri Weekly』, 보험연구원.

HSBC Holdings plc(2009), "Annual Report and Accounts 2008".

_____(2010), "Annual Report and Accounts 2009".

_____(2011), "Annual Report and Accounts 2010".

_____(2012), "Annual Report and Accounts 2011".

_____(2013), "Annual Report and Accounts 2012".

SwissRe Sigma(2008), "World Insurance in 2007".

_____(2009), "World Insurance in 2008".

_____(2010), "World Insurance in 2009".

_____(2011), "World Insurance in 2010".

_____(2012), "World Insurance in 2011".

◘ 일본 보험그룹 경영규제 개선 관련 주요 내용[14)]

장동식 수석연구원

일본 금융청은 「보험모집 재위탁 허용」과 「보험계약 포괄이전 폐지」 등 2012년 3월 개정된 보험업법 내용을 반영하여 2013년 3월에 보험업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보험그룹 경영규제를 완화하였음. 한편 일본 금융청은 이 보다 앞서 2012년 7월 개정 보험업법 시행령에 「자회사 업무범위 적용 유예」와 「보험계약 이전 시 신계약 금지 폐지」를 반영한 바 있음. 이러한 규제 완화는 보험그룹의 경영효율성 제고, 국제경쟁력 강화, 수익창출 기회 확대, 보험계약자 편의 제고 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일본 금융청은 「보험모집 재위탁 허용」과 「보험계약 포괄이전 폐지」 등 2012년 3월에 개정된 보험업법 내용을 반영하여 2013년 3월에 보험업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보험그룹 경영 규제를 완화하였음.

○ 일본 금융청은 2011년부터 자회사 업무범위, 보험모집 재위탁, 보험계약 포괄이전[15)]·보험계약 이전 시 신계약 금지[16)] 등과 관련된 규제 완화를 검토해 왔음.

○ 보험그룹 경영규제 완화 방안은 2012년 3월 개정 보험업법과 2012년 7월과 2013년 3월 개정 보험업법 시행령에 반영됨.

- 자회사 업무범위와 보험계약 이전 시 신계약 금지 규제 완화는 개정 보험업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보험업법 시행령에 반영하도록 규정함.
- 보험모집 재위탁과 보험계약 포괄이전에 대한 규제 완화는 개정 보험업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보험업법 시행령에 반영하도록 규정함.

■ 첫째, 자회사 업무범위 완화 방안은 국제 경쟁력 강화 및 수익창출 기회 확대를 지향

14) 일본 금융청의 금융심의회 회의자료, 개정 보험업법 등을 참조하여 정리함.

15) 보험계약 포괄이전은 보험회사가 다른 보험회사에게 보험계약을 이전하는 경우 책임준비금의 산출기초가 동일한 보험계약의 전부를 포괄하여 이전하는 것을 말함. 우리나라도 보험업법 제140조 제1항에서 보험계약의 포괄이전을 규정하고 있음.

16) 보험계약 이전 시 신계약 금지는 보험계약을 이전하고자 하는 보험회사는 주주총회 등의 결의 시점부터 보험계약을 이전할 수 있고, 보유할 경우에는 이전하고자 하는 보험계약과 동종의 보험계약을 하지 못하는 것을 말함. 우리나라도 보험업법 제142조에서 계약 이전 시 신계약 금지를 규정하고 있음.

○ 국제 경쟁력 및 수익창출 기회 확대를 위해서는 일본 보험회사에게 인수된 외국보험회사의 자회사 업무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17]하에, 자회사 업무 규제 적용을 일정 기간 유예하기로 함.

○ 피인수된 외국보험회사의 자회사 매각 또는 청산은 피인수된 외국보험회사의 현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음.[18]

■ 둘째, 보험모집 재위탁 허용 방안은 보험그룹의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해 검토되었음.

○ 보험그룹의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보험그룹 내 보험회사에게는 보험모집 재위탁을 허용하기로 함.

○ 이처럼 보험모집 규제가 완화된 것은 보험회사가 승합대리점[19]에게 직접 보험모집을 위탁하는 방식은 보험그룹 경영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일본 보험회사의 의견을 수용하였기 때문임.

- 개정 전 보험업법에서는 보험그룹 내 보험회사 모두가 승합대리점에 보험모집을 직접 위탁하여야 했는데, 이 경우 보험그룹의 보험모집 정책 및 관리 등에서 경영효율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 보험그룹 내 보험회사는 동일 보험그룹 내 다른 보험회사에게 보험모집을 위탁하고, 위탁받은 보험회사는 자사에게 보험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를 대신하여 승합대리점에 보험모집을 재위탁할 수 있어야 함.

■ 셋째, 보험계약 포괄이전과 이전 시 신계약 금지 폐지 방안은 보험그룹의 경영효율성 제고와 보험계약자 편익 증진에 중점을 두고 검토되었음.

○ 보험계약 포괄이전 규제는 보험계약자 속성과 판매채널을 고려한 보험계약 이전과

17) 일본 보험회사에 인수된 외국보험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여러 가지 업무규제 완화 방안이 검토되었음. 예를 들어 해당 업무가 보험회사의 고유 업무와 유사한지, 해당 업무 위험이 보험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위험과 일치하는지, 해당 업무의 위험이 보험회사 본체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등이 고려됨.

18) 일본 보험회사는 현지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호텔 등의 부동산업과 자동차수리공장에 대해서는 계속 자회사로 보유하여야 한다는 입장임. 자동차수리공장은 자동차보험판매와 시너지 효과가 있으며, 호텔 등의 부동산업은 생명보험회사의 자산운용 수단임.

19) 승합대리점은 두 개 이상의 보험회사와 대리점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각각의 회사를 위해서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대리점을 말하며, 복수대리점이라고도 함.

그룹 재편을 어렵게 하는 것으로 평가되었음.

- 예를 들어, 보험계약 포괄이전 규제는 보험그룹이 자동차보험계약을 통신판매용과 대리점판매용으로 구분하여 그룹 내 다른 회사로 이전하는 그룹 재편전략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함.
- 개정 전 보험업법에서는 책임준비금 산출기초가 동일한 보험계약을 포괄하여 다른 보험회사에게 이전하여야 했었음.

○ 외국보험회사의 일본지점이 현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한해 보험계약 이전 시 신계약 금지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음.

- 개정 전 보험업법은 보험계약 이전 시 신계약 금지 규정에 따라 보험회사는 주주총회 등의 결의가 있을 때부터 보험계약을 이전하게 될 때까지 그 이전하고자 하는 보험계약과 동종의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없었음.[20]
- 그런데 사업의 계속을 전제하고 있는 외국보험회사의 일본지점이 현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보험계약 이전 시 신계약 금지가 보험계약자 편의를 훼손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앞서 살펴본 보험그룹 경영에 대한 일본의 규제 완화는 우리나라 역시 보험그룹화 및 글로벌화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주고 있다고 판단됨.

○ 감독당국은 국내 보험회사가 인수한 외국보험회사에 적용되는 자회사의 업무범위에 대해서는 인수 경쟁과 해당 외국보험회사의 현지 경쟁력을 감안하여 업무 규제를 보다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음.

○ 감독당국은 보험모집 재위탁, 보험계약 포괄이전 및 계약 이전 시 신계약 금지 등에 대해서 그룹의 경영효율화와 보험계약자 편의를 제고하는 측면에서 개선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20) 보험계약 이전 시 신계약 금지는 보험계약 포괄이전 취지와 보험계약자 보호 취지에서 행해짐. 즉, 이전하고자 하는 보험계약과 동종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보험계약의 포괄이전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이전하고자 하는 보험계약의 범위를 확정한 후에 체결되는 보험계약의 계약자는 보험계약자의 보호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참 고 문 헌〉

金融審議会金融分科会(2012a),「金融審議会金融分科会報告（案): 保険会社のグループ経営に関する規制の見直しについて」, 金融審議会総会 第26回 · 金融分科会 第14回 合同会合.

_____(2012b),「保険会社のグループ経営に関する規制の見直しについての概要」, 金融審議会総会 第26回 · 金融分科会 第14回 合同会合.

金融庁(2012a), “保険業法施行令等の一部を改正する政令（案）等に対するパブリックコメントの結果等について”.

_____(2012b),「保険業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案)」, 第180回国会における金融庁関連法律案:.

_____(2013), “保険業法施行規則等の一部を改正する内閣府令（案）等の公表について”.

金融庁総務企画局企画課保険企画室(2011a),「諮問事項」, 保険会社のグループ経営に関する規制の在り方ワーキング · グループ 第１回.

_____(2011b), 「外国保険会社の買収等に係る子会社の業務範囲規制」, 保険会社のグループ経営に関する規制の在り方ワーキング · グループ 第2回, 説明資料.

_____(2011c),「これまでの議論の整理」, 保険会社のグループ経営に関する規制の在り方ワーキング · グループ 第6回.

_____(2011d),「保険契約の移転に係る規制の在り方」, 保険会社のグループ経営に関する規制の在り方ワーキング · グループ 第7回.

_____(2011e),「保険募集の委託の在り方」, 保険会社のグループ経営に関する規制の在り方ワーキング · グループ 第7回.

保険会社のグループ経営に関する規制の在り方ワーキング · グループ(2011), 「保険会社のグループ経営に関する規制の見直しについて（案)」, 保険会社のグループ経営に関する規制の在り方ワーキング · グループ 第9回.

外国損害保険協会(2011a),「当協会の課題」, 保険会社のグループ経営に関する規制の在り方ワーキング · グループ 第１回.

_____(2011b),「復代理に関するFNLIA の考え方」, 保険会社のグループ経営に関する規制の在り方ワーキング・グループ 第4回.

_____(2011c),「包括移転における引受停止期間」, 保険会社のグループ経営に関する規制の在り方ワーキング・グループ 第5回.

日本損害保険協会(2011a),「保険会社のグループ経営に関する規制のあり方について」, 保険会社のグループ経営に関する規制の在り方ワーキング・グループ 第１回.

_____(2011b),「保険会社のグループ経営に関する規制のあり方について: 保険会社の外国保険会社の買収等に係る子会社の業務範囲規制の見直し」, 保険会社のグループ経営に関する規制の在り方ワーキング・グループ 第2回.

_____(2011c),「保険会社のグループ経営に関する規制のあり方について: 保険契約の包括移転に係る規制の見直し」, 保険会社のグループ経営に関する規制の在り方ワーキング・グループ 第2回.

_____(2011d),「保険契約の包括移転に係る規制の見直しについて: 包括移転により期待される効果等」, 保険会社のグループ経営に関する規制の在り方ワーキング・グループ 第4回.

_____(2011e),「保険契約の包括移転に係る規制の見直しについて: 責任準備金の公平な分担に関する論点」, 保険会社のグループ経営に関する規制の在り方ワーキング・グループ 第4回.

全国消費生活相談員協会(2011),「保険契約の移転単位規制の在り方に関して」, 保険会社のグループ経営に関する規制の在り方ワーキング・グループ 第5回.

Ⅲ. 해외보험시장 동향

1.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국의 주가지수는 2013년 들어 경제지표 개선과 경기부양책 시행 등으로 상승한 반면, 장기국채 금리는 지난해 말에 비해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음. 미국의 경기회복 기대감으로 달러화가 강세를 보였고 일본의 금융완화정책으로 엔화 약세가 지속되고 있음.

가. 금리

■ 작년 12월 이후 상승세를 보였던 미국 장기국채수익률(10년 만기)은 2월 중순 이후 하락하며 지난해 말 1.75%에서 4월 말 1.67%로 8bp 하락하였음.

○ 미국 장기국채수익률은 연초 연준의 자산매입프로그램 중단 가능성 및 재정감축(fiscal cliff) 협상안 타결, 다우존스 지수 상승 등에 힘입어 2012년 4월 이후 10개월여 만에 2%대에 근접하였음(3/11일 2.05%).

○ 이후 정부예산 자동삭감(sequester) 시행과 이탈리아의 정치적 불확실성 증가로 안전자산 수요가 다시 확대되고 4월 들어 미국 GDP 성장률 하향 조정 등 경제지표 둔화 우려가 부각되며 하락하였음.

〈그림 1〉 장기국채(10년물) 수익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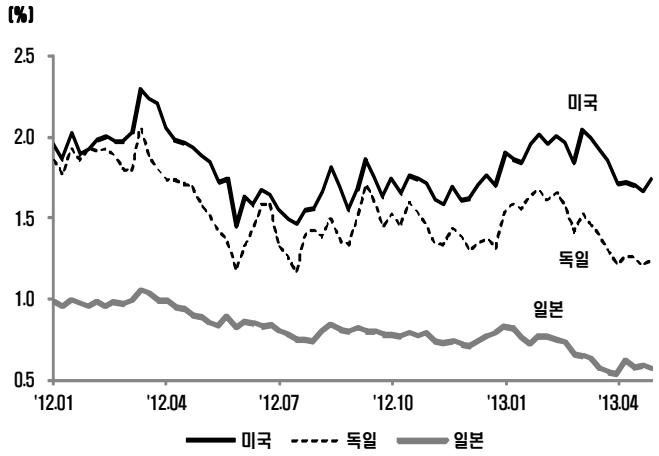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 독일 장기국채수익률(10년 만기)은 1월 중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으나 2월 이후 하락하며 지난해 말 1.32%에서 4월 말 1.22%로 10bp 하락하였음.

○ 독일 장기국채수익률은 연초 경제지표 호조 및 유럽 은행권 유동성 개선으로 큰 폭으로 상승하였으나, 이후 이탈리아의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가 강화되며 하락하였음.

■ 일본 장기국채수익률(10년 만기)은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며 지난해 말 0.79%에서 4월 말 0.61%로 18bp 하락하였음.

○ 일본 장기국채수익률은 아베 정부의 강력한 경기부양 의지표명에 힘입어 2011년 2월 이후 하락세를 유지하였음.

○ 2012년 12월 일본은행의 자산매입시행계획 발표 이후 장기국채 매입을 통한 공격적 양적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며 큰 폭으로 하락하였으며 4월 4일 최저치인 0.45%를 기록하였음.

나. 환율

■ 달러는 유로화에 대해 연초 약세를 보였으나 2월 이후 강세로 전환되며 1유로당 지난해 말 1.319달러에서 4월 말 1.317달러로 소폭 절상되었음.

○ 미 달러화는 유로지역의 경기지표 개선과 금융기관들의 1차 LTRO 일부 조기상환 등에 힘입어 1월 중 유로화 대비 지속적인 약세를 보였음.

○ 이후 ECB 총재의 유로화 강세 우려 표명 및 이탈리아의 정치적 불확실성 증대, 2차 LTRO 상환규모의 시장 예상치 하회 등으로 유로화 대비 강세 전환 후 전년도 말 수준에서 보합세를 유지하였음.

■ 엔화는 일본은행의 자산매입프로그램 규모 확대 기대감이 작용하며 1달러당 지난해 말 86.7엔에서 4월 말 97.5엔으로 12.3% 절하되었음.

○ 달러화는 일본 정부의 긴급경제대책, 일본은행의 금융완화정책 강화, 물가안정목표 상향 등 으로 엔화 대비 강세를 유지하였음.

○ 엔화는 아베노믹스에 우호적인 구로다 일본중앙은행 총재가 내정되면서 양적완화 정책이 보다 신속하게 추진될 것이란 기대감과 장기국채 매입 조치가 이어지면서 달러 대비 추가적인 약세를 보였음.

〈그림 2〉 환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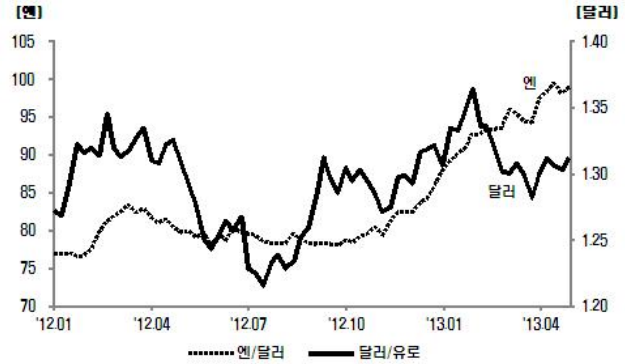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다. 주가

■ 미국 다우존스 지수는 경제지표 개선 등에 힘입어 지난해 말 13,104포인트에서 4월 말 14,839포인트로 13.2% 상승하였음.

○ 미국 주가는 미 연준의 양적완화 확대 발표 및 경기지표 개선에 힘입어 연초 지속적인 상승세를 나타내었음.

○ 이후 일부 경기지표가 혼조세를 보인 가운데 유로 지역 경기지표 부진, 스페인 · 이탈리아 정치적 불안 우려 등의 영향으로 소폭 하락함.

○ 3월 들어 고용지표가 개선되고 은행들의 양호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에 힘입어 다시 상승세를 보이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였음(4/11일 14,865pt).

■ 유럽 Stoxx 지수는 혼조세를 보이며 지난해 말 2,635포인트에서 4월 말 2,712포인트로 2.9% 상승하였음.

○ 유럽 주가는 연초 유로지역 금융시장 여건 완화 · 경기지표 개선 등이 호조로 작용하며 상승하였으나 키프로스 신용등급 하향 조정[1] 등의 영향으로 하락하였음.

○ 이후 ECB 총재의 유로화 강세 우려 및 이탈리아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부진한 모습을 나타내었으나, 스페인의 국채발행 성공과 유로지역의 소매판매가 큰 폭으로 예상치를 상회하며 하락폭을 만회하였음.

○ 4월 들어 영국의 경제성장률 상승과 이탈리아의 정국안정 기대 등이 호조로 작용하며 소폭 상승하였음.

■ 일본 닛케이 지수는 강력한 경기부양정책 시행에 대한 기대감으로 큰 폭으로 상승하며 지난해 말 10,395포인트에서 4월 말 13,860포인트로 33.3% 상승하였음.

○ 일본 주가는 연초 엔화 약세에 따른 수출기업들의 주가상승 등에 힘입어 지속적인 상승세를 나타냄.

○ 이후 엔화 약세가 지속되자 주가 역시 상승세를 이어갔으며, 3월 이후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며 큰 폭의 상승세를 시현하였음.

---

1) 'B3 → Caa3', 2013. 1. 11 Moody's.

〈그림 3〉 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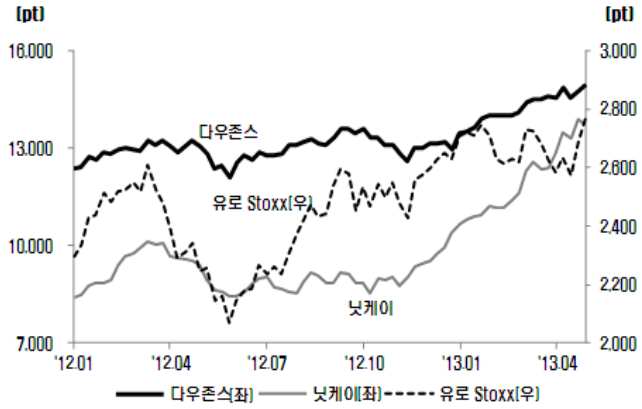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2. 글로벌 보험시장 동향

생명보험의 경우, 2012년 신규계약 기준으로 미국의 보험료 증가율이 6%를 기록한 반면, 영국과 일본은 각각 2.3%, 1.4% 감소하였음. 중국의 경우 수입보험료 기준으로 전년동기 대비 10.6% 증가하였음. 미국의 성장세는 유니버셜보험과 변액유니버셜 보험이 이끌었던 반면 개인연금은 2011년 4/4분기 이후 감소세를 이어갔음. 영국의 경우 퇴직연금 분할납 신규보험료 감소와 일시납 보험료 감소로 성장세가 둔화되었음. 일본에서는 개인연금, 생존 · 생사혼합 등을 중심으로 신규계약이 감소하였음.
손해보험산업에서는 2012년 4/4분기 원수보험료 기준으로 미국 4.3% 증가, 일본의 경우는 FY2012 3/4분기 기준으로 2.2% 증가하였음. 미국 손해보험산업의 총보험영업이익은 2012년 기준으로 전년대비 53.6% 감소한 168억 달러 손실을 기록했으며, 총투자영업이익은 전년대비 3.9% 감소한 539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중국 손해보험 수입보험료는 2012년 4/4분기 기준으로 17.1% 증가한 1,339억 위안으로 전분기에 비해 증가세가 소폭 확대되었음.

◘ 미국 동향[2)]

가. 생명보험

■ 미국 생명보험 시장[3)]은 2012년 4/4분기 유니버셜보험 및 변액유니버셜보험 판매가 큰 폭으로 증가하며 전년동기대비 12% 성장하였고, 2012년 기준으로 전년대비 6% 성장하였음.

○ 유니버셜보험의 연납화 보험료는 전분기에 이어 인덱스형 유니버셜보험(indexed UL) 판매가 큰 폭으로 증가하며 전년동기대비 20%, 2012년 기준으로 8%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함.

- 인덱스형 유니버셜보험 판매는 2012년 4/4분기 전년동기대비 42% 증가하였으며, 2012년 기준으로는 36% 성장하였음.

2) 미국 보험시장의 통계 및 용어에 관한 설명은 첨부된 조사 개요 및 출처를 참고하기 바람.

3) 신계약의 연납화 보험료 기준. 연납화 보험료(Annualized Premium) = 일시납보험료 × 10% + 정기납 보험료

- 장기보장성 유니버셜보험(lifetime secondary guarantee UL) 판매는 전년동기대비 27%, 2012년 기준으로 1% 성장하였음.

○ 변액유니버셜보험료는 4/4분기에 16% 성장하며 3분기 연속 감소세에서 벗어나 증가세를 보였으나, 2012년 기준으로는 전년도와 비슷한 규모를 유지하였음.

○ 종신보험은 전년동기대비 6%, 2012년 기준으로 7% 성장하며 유니버셜보험에 이어 가장 큰 판매 증가율을 보였음.

■ 전체 신계약보험료 중 유니버셜보험과 종신보험의 비중은 2011년 말에 비해 각각 1%p씩 상승한 반면, 변액유니버셜보험과 정기보험의 비중은 1%p씩 하락하였음.

○ 종목별 점유율은 유니버셜보험이 4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종신보험, 정기보험, 변액유니버셜보험이 각각 30%, 19%, 8%를 차지함.

〈표 1〉 미국 생명보험 신계약 연납화 보험료 증가율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구분	CY2011			CY2012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증가율	증가율	비중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비중
유니버셜	-2	3	42	0	6	4	20	8	43
기타변액	0	0	0	0	0	0	0	0	0
변액유니버셜	36	22	9	-1	-6	-4	16	0	8
정기	-4	-6	20	1	-3	-1	4	0	19
종신	5	9	29	10	9	5	6	7	30
계	2	4	100	3	4	3	12	6	100
연납화 보험료	2,691	9,812		2,370	2,483	2,395	3,061	10,309	

주: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기준이며, 비중은 누적치임.
자료: LIMRA(2013.3), *U.S. Individual Life Insurance Sales.*

나. 연금보험

■ 2012년 4/4분기 미국 개인연금 신규보험료는 전분기에 이어 변액연금과 정액연금 모두 크게 감소하면서 전년동기대비 7.6% 줄어든 526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이는 2010년 1/4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임.

○ 변액연금 신규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7.9% 감소한 350억 달러로 2010년 4/4분기 이

후 최저 수준을 기록하였으며, 5분기 연속 감소세를 지속하였음.

○ 정액연금 신규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6.9% 감소한 176억 달러로 2007년 1/4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였으며, 연간 기준으로는 717억 달러로 지난 12년 동안의 최저치를 기록하였음.

〈표 2〉 미국 연금 종목별 신규보험료 추이

(단위: 십억 달러, %)

구분		CY2011			CY2012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변액연금	보험료	39.8	38.0	157.9	36.8	38.6	36.6	35.0	147.0
	증가율	15.0	-1.3	12.4	-6.8	-4.9	-8.0	-7.9	-6.9
	구성비	66.2	66.8	66.2	67.2	67.7	67.4	66.5	67.2
정액연금	보험료	20.3	18.9	80.5	18.0	18.4	17.7	17.6	71.7
	증가율	-5.1	-2.6	-1.7	-10.0	-13.6	-12.8	-6.9	-10.9
	구성비	33.8	33.2	33.8	32.8	32.3	32.6	33.5	32.8
합계	보험료	60.1	56.9	238.4	54.8	57.0	54.3	52.6	218.7
	증가율	7.3	-1.7	7.2	-7.9	-7.9	-9.7	-7.6	-8.3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수치임.
자료: LIMRA(2013.3), *U.S. Individual Annuities.*

■ 2012년 4/4분기 개인연금 판매 채널 비중은 설계사가 23.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독립중개인 23.1%, 독립설계사가 16.5%, 은행, 증권중개인, 직접판매 등이 각각 12.9%, 12.5%, 8.9%로 나타남.

○ 설계사 판매 비중이 전분기에 비해 1.8%p 상승한 반면 독립중개인의 판매 비중은 1.9%p 하락하였음.

〈표 3〉 미국 개인연금 판매채널 비중

(단위: %)

구분	CY2011		CY2012			
	3/4	4/4	1/4	2/4	3/4	4/4
은행	14.9	13.4	13.5	13.7	13.1	12.9
전속설계사	21.7	23.0	23.8	21.8	21.9	23.7
직접판매	7.6	8.2	8.8	9.6	8.3	8.9
독립중개인	21.2	22.1	23.2	23.2	25.0	23.1
독립설계사	17.6	16.2	16.3	15.6	16.4	16.5
증권중개인	14.9	14.8	12.6	14.0	13.4	12.5
기타	2.0	2.3	1.8	2.1	1.8	2.3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LIMRA(2013.3), *U.S. Individual Annuities.*

다. 소득보상보험

■ 2012년 4/4분기 소득보상보험의 신규보험료는 Guaranteed Renewable[4] 감소를 Non-cancellable[5]이 상쇄하면서 전년동기대비 0.6% 증가함.

○ Guaranteed Renewable의 신규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3.5% 감소한 반면 Non-cancellable은 3.2% 증가함.

4) Guaranteed Renewable: 피보험자는 정해진 연령까지 계약을 갱신할 수 있고, 회사는 갱신 시 보험료를 변경할 권리를 갖지만 계약을 취소하거나 일방적인 급부 변경을 할 수 없음.

5) Non-cancellable: 피보험자는 정해진 연령까지 계약을 갱신할 수 있고, 갱신 시 보험회사는 계약을 취소하거나 보험료 또는 급부를 임의대로 변경할 수 없음.

〈표 4〉 미국 소득보상보험 신규보험료 추이

(단위: 천 건, 백만 달러, %)

구분			CY2011			CY2012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계약건수	Guaranteed Renewable	건 수	81.6	83.1	347.9	107.6	67.5	75.0	77.9	327.9
		증가율	-2.5	3.4	1.1	0.4	-11.2	-8.2	-6.3	-5.7
		구성비	66.6	67.1	70.0	75.4	65.9	65.2	64.9	68.3
	Non-Cancellable	건 수	40.9	40.8	149.2	35.1	34.9	40.0	42.8	152.8
		증가율	8.8	4.5	6.2	5.0	2.5	-2.1	4.8	2.5
		구성비	33.4	32.9	30.0	24.6	34.1	34.8	35.6	31.8
	전체	건 수	122.5	123.9	497.1	142.7	102.4	115.0	120.1	480.2
		증가율	1.0	3.8	2.6	1.5	-7.0	-6.1	-3.1	-3.4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신규보험료	Guaranteed Renewable	보험료	51.5	53.1	217.6	64.5	46.7	49.5	51.3	212.0
		증가율	1.3	4.2	3.1	0.6	-4.3	-4.0	-3.5	-2.6
		구성비	38.8	39.9	42.0	47.6	37.6	37.1	38.3	40.2
	Non-Cancellable	보험료	81.2	80.1	300.9	71.1	77.4	83.8	82.7	314.9
		증가율	8.3	5.0	7.2	6.8	5.8	3.3	3.2	4.7
		구성비	61.2	60.1	58.0	52.4	62.4	62.9	61.7	59.8
	전체	보험료	132.7	133.2	518.5	135.6	124.0	133.3	133.9	526.9
		증가율	5.5	4.7	5.4	3.8	1.8	0.5	0.6	1.6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수치임.
자료: LIMRA(2013.3), *U.S. Individual Disability Income Insurance.*

라. 손해보험

■ 미국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2012년 4/4분기 전년동기대비 4.8% 증가한 1,081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2012년 기준으로 4.3% 증가한 4,565억 달러에 달함.

○ 지급보험금은 전년동기대비 13.4% 증가한 912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 합산비율은 전년동기 103.4%에서 110.4%로 악화되었으며, 이는 2002년 4/4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임.

○ 모기지 및 금융보증 관련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손해보험사의 원수보험료와 경과보험료는 각각 4.8%, 3.5% 증가하였으며, 합산비율은 전년동기 101%에서 109.8%로 상승하였음.

■ 총보험영업이익은 전년동기 손실 15억 달러에서 손실 규모가 증가하며 손실 100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나, 2012년 기준으로는 손실 규모가 약 195억 달러 개선되었음.

○ 경과보험료 대비 보험영업손실비율은 8.8%를 기록하였음.

■ 총투자영업이익은 전년동기대비 12.6% 증가한 158억 달러에 달하였으나 2012년 기준으로 3.9% 감소한 539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 투자영업이익은 전년동기대비 0.3% 증가한 126억 달러, 실현자본이익은 전년동기대비 115.3% 증가한 33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 투자영업이익과 실현자본이익을 합한 총투자영업이익은 전년동기대비 18억 달러 증가하였으나, 2012년 기준으로 약 22억 달러 감소하였음.

■ 당기순이익은 전년동기 110억 달러에서 약 46억 달러 감소한 64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자본이익률은 4.4%로 나타남.

○ 세전영업이익은 전년동기대비 89억 달러 감소한 27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이중 보험영업손실은 100억 달러, 투자영업이익은 126억 달러를 보임.

○ 모기지 및 금융보증 관련 회사의 자본이익률은 적자규모가 전년동기 18억 달러에서 4억 달러로 감소하며 -62.4%에서 -14.4%로 개선되었음.

〈표 5〉 미국 손해보험 실적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CY2011	CY2012				
		연간	1/4	2/4	3/4	4/4	연간
원수보험료	금액	437,818	112,382	114,337	121,769	108,109	456,597
	증가율	3.3	3.1	4.2	5.1	4.8	4.3
경과보험료	금액	110,309	107,944	110,997	116,107	114,242	449,290
	증가율	3.6	2.6	3.5	4.2	3.6	3.5
지급보험금	금액	344,543	75,614	85,280	82,982	91,247	335,123
	증가율	10.9	-4.0	-10.6	-7.7	13.4	-2.7
보험영업이익	금액	-34,512	294	-6,526	529	-9,050	-14,753
	증가율	320.1	-107.3	-66.1	-105.0	1,113.7	-57.3
계약자 배당금	금액	1,852	521	285	315	998	2,119
	증가율	-19.4	12.8	-18.1	21.2	27.6	14.4
총 보험영업이익	금액	-36,364	-227	-6,811	214	-10,049	-16,873
	증가율	245.9	-94.9	-65.3	-102.0	557.7	-53.6
투자영업이익	금액	49,095	11,656	12,062	11,410	12,585	47,713
	증가율	3.2	-7.5	-1.3	-2.7	0.3	-2.8
실현자본이익	금액	6,999	685	1,020	1,245	3,251	6,201
	증가율	19.6	-30.7	-61.0	-33.9	115.3	-11.4
총 투자영업이익	금액	56,094	12,341	13,083	12,655	15,836	53,915
	증가율	5.0	-9.2	-11.8	-7.0	12.6	-3.9
세전 영업이익	금액	15,163	11,786	6,577	12,058	2,713	33,134
	증가율	-60.3	36.6	-189.5	451.6	-76.8	118.5
당기순이익	금액	19,234	10,141	6,282	10,433	6,390	33,246
	증가율	-45.4	29.6	-305.0	206.2	-42.3	72.9
자기자본(surplus)	금액	553,794	570,665	567,770	583,489	586,874	586,874
	증가율	-1.6	0.7	1.6	7.6	6.0	6.0
지급준비금	금액	572,604	570,645	574,683	576,442	579,278	579,278
	증가율	2.1	1.2	-0.1	-0.4	1.2	1.2
합산비율		108.1	99.0	105.3	98.5	110.4	103.2

주: 1)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수치임.
2) 세전영업이익 = 총 보험영업이익 + 총 투자영업이익 + 기타이익

자료: III(2013. 4), P/C Insurers' Profits and Profitability in 2012 Results.

조사 개요 및 출처

■ 미국의 보험산업은 크게 생명보험(종신보험, 정기보험 등), 연금보험, 건강보험, 손해보험으로 구분되며, 본고는 이 중 건강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과 소득보상보험에 대한 분기별 통계를 근거로 작성하였음.

○ 미국 민영건강보험 사업자는 비영리 민간보험조합인 Blue Shield, Blue Cross와 지역의료공급조직(HMO: 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이 존재하고 이들이 민영의료보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건강보험이 직장단체보험으로 운영되는 등 우리나라와 많은 차이가 있음.

○ 생명보험에는 유니버셜보험, 변액보험, 정기보험, 종신보험 등이 있으며, 연금보험은 크게 변액연금보험과 정액연금보험으로 구분됨.

- 미국생명보험협회(ACLI: The American Council of Life Insurers)나 생명보험마케팅연구단체(LIMRA: Life Insurance Marketing and Research Association) 등은 생명보험, 연금보험, 소득보상보험, 장기간병보험에 대한 자료만 제공함.
- 원고 작성에 사용되는 LIMRA의 분기별 자료는 신계약에 대한 보험료를 중심으로 발표됨.

○ 손해보험은 다양한 세부 종목이 존재하나, 미국손해보험협회(PCI: Property Casualty Insurers Association of America)와 보험요율단체(ISO: Insurance Services Office Limited), 보험정보원(III: Insurance Information Institute)이 공동으로 발표하는 분기별 지표는 전체적인 영업성과 위주로 제시됨.

■ 구체적으로 미국보험시장 동향 작성을 위해 참고한 문헌은 다음과 같음.

보고서	참여 회사 수	수입보험료 비중	발표 기관
U.S. Individual Life Insurance Sales	77개사	85%	LIMRA
U.S. Individual Annuities	61개사	97%	LIMRA
U.S. Individual Disability Income Insurance	18개사	-	LIMRA
U.S. Individual LTC Insurance	24개사	95%	LIMRA
손해보험 분기별 실적 보도자료	-	-	PCI, ISO, III

◘ 영국 동향[6]

가. 생명보험

〈생명보험 전체〉

■ 2012년 4/4분기 영국 생명보험 시장규모는 전체 보험료[7] 기준으로 140억 8,130만 파운드이며, 전년동기보다 1억 930만 파운드 감소함.

○ 생명보험 전체 보험료는 4/4분기 들어 하계 올림픽 특수 효과가 소진되면서 전년동기 대비 약 0.8% 감소함.

■ 2012년 4/4분기 분할납 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29.4% 증가한 15억 8,890만 파운드를, 일시납 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3.6% 감소한 124억 9,240만 파운드를 기록함.

○ 2012년 4/4분기 분할납 보험료 규모는 4/4분기만을 대상으로 할 때,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전 3년간(2006~2008년) 평균 보험료인 12억 7,870만 파운드를 초과하였음.

○ 2012년 4/4분기 일시납 보험료 규모는 4/4분기만을 대상으로 할 때,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전 3년간(2006~2008년) 평균 보험료 177억 9,420만 파운드를 하회하였음.

■ 2012년 영국 생명보험 시장규모는 전체 보험료 기준으로 506억 5,460만 파운드이며, 전년도보다 11억 9,700만 파운드 감소함.

○ 2012년 분할납 보험료는 전년대비 0.4% 감소한 55억 2,230만 파운드를, 일시납 보험료는 전년대비 2.5% 감소한 451억 3,230만 파운드를 기록함.

○ 분할납 신규보험료 감소는 퇴직연금 판매 부진이 가장 큰 원인이며, 일시납 신규보험료 감소는 전 종목에 걸친 판매 부진이 원인이었음.

---

6) 영국 보험시장의 통계 및 용어에 관한 설명은 첨부의 조사 개요 및 출처를 참고하기 바람.

7) 분할납 신규보험료와 일시납 신규보험료 합계.

〈표 6〉 영국 생명보험 분할납 신규보험료

(단위: 백만 파운드, %)

분할납 신규보험료		2011		2012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투자 및 저축보험	보험료	7.5	35.0	7.4	6.0	6.8	6.6	26.8
	증가율	-24.6	-38.9	-18.6	-33.7	-27.9	-11.1	-23.4
	구성비	0.6	0.6	0.5	0.4	0.6	0.4	0.5
퇴직연금계좌	보험료	781.8	3,470.5	910.6	914.7	801.9	1,152.4	3,779.5
	증가율	7.1	8.8	2.9	-8.9	0.2	47.4	8.9
	구성비	63.6	62.6	67.2	66.8	66.3	72.5	68.4
퇴직연금	보험료	192.8	987.8	160.0	168.5	131.5	153.6	613.6
	증가율	-22.6	8.6	-38.2	-55.8	-14.8	-20.3	-37.9
	구성비	15.7	17.8	11.8	12.3	10.9	9.7	11.1
역외영업	보험료	5.3	31.9	4.4	3.8	5.8	4.1	18.1
	증가율	-51.1	-12.9	-59.7	-56.0	-18.4	-21.9	-43.2
	구성비	0.4	0.6	0.3	0.3	0.5	0.3	0.3
보장성보험	보험료	240.9	1,016.6	271.9	276.7	263.5	272.1	1,084.2
	증가율	-7.7	-4.2	5.6	4.3	4.1	12.9	6.7
	구성비	19.6	18.3	20.1	20.2	21.8	17.1	19.6
합계	보험료	1,228.3	5,541.8	1,354.2	1,369.7	1,209.5	1,588.9	5,522.3
	증가율	-2.6	5.5	-4.7	-17.9	-1.2	29.4	-0.4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표 7〉 영국 생명보험 일시납 신규보험료

(단위: 백만 파운드, %)

일시납 신규보험료		2011		2012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투자 및 저축보험	보험료	2,047.7	8,974.5	1,992.2	2,053.4	1,935.6	2,122.5	8,103.7
	증가율	-19.9	-11.6	-21.0	-12.0	-6.5	3.7	-9.7
	구성비	15.8	19.4	17.6	18.1	19.4	17.0	18.0
퇴직연금계좌	보험료	3,244.0	16,047.2	3,859.8	4,915.4	3,647.7	3,935.6	16,358.6
	증가율	4.0	5.9	-3.1	-2.3	-3.6	21.3	1.9
	구성비	25.0	34.7	34.1	43.3	36.6	31.5	36.2
퇴직연금	보험료	6,403.3	15,146.2	4,283.3	3,217.6	3,153.2	5,082.0	15,736.2
	증가율	42.6	18.0	39.4	-5.4	38.9	-20.6	3.9
	구성비	49.4	32.7	37.8	28.4	31.6	40.7	34.9
역외영업	보험료	1,211.4	5,926.7	1,142.2	1,102.8	1,182.4	1,299.2	4,726.7
	증가율	-25.3	-7.4	-26.5	-26.4	-28.9	7.2	-20.2
	구성비	9.3	12.8	10.1	9.7	11.9	10.4	10.5
보장성보험	보험료	55.9	215.3	53.2	50.5	50.4	53.0	207.1
	증가율	-3.6	-6.2	-1.2	-7.0	-1.7	-5.2	-3.8
	구성비	0.4	0.5	0.5	0.4	0.5	0.4	0.5
합계	보험료	12,962.3	46,309.8	11,330.8	11,339.8	9,969.4	12,492.4	45,132.3
	증가율	9.4	3.4	1.3	- 8.0	1.3	-3.6	-2.5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영국보험협회(ABI).

〈투자 · 저축보험 신규보험료〉

■ 2012년 4/4분기 분할납 기준 투자 · 저축 보험료는 대부분 종목의 판매 부진으로 전년동기대비 11.1% 감소함.

○ 생사혼합저축보험(endowments savings)은 전년동기대비 100만 파운드 감소하여 분할납 기준 투자 · 저축 보험료의 전년동기대비 감소액 90만 파운드를 초과함.

■ 반면, 같은 기간 일시납 기준 보험료는 유배당채권(with profit bonds)과 money market bond의 판매 호조로 전년동기대비 3.7% 증가함.

○ 유배당채권과 money market bond는 전년동기대비 각각 6,600만 파운드, 1억 1,900만 파운드 증가함.

- 판매채널별로는 독립재정자문가(IFA) 판매가 전년동기대비 각각 9,200만, 1억 1,900만 파운드 증가함.

○ 변액연동채권(unit-linked bonds)과 정기적 소득인출이 가능한 투자자산(distribution bonds)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6,700만, 1,700만 파운드 감소함.

〈퇴직연금계좌 신규보험료〉

■ 2012년 4/4분기 퇴직연금계좌 분할납 기준 보험료는 대부분의 종목이 부진하였으나 단체개인연금계좌(group personal pensions)의 호조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47.4% 증가함.

○ 금액으로는 전년동기대비 3억 7,060만 파운드 증가함.

○ 단체개인연금계좌 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4억 300만 파운드 증가하여 전분기에 이어 호조세가 지속됨.

- 계약건수 기준으로 전년동기대비 154,000건 증가하였으며, 독립재정자문가 채널을 통한 단체 판매액이 전년동기대비 3억 7,000만 파운드 증가함.

■ 일시납 기준 퇴직연금계좌 보험료는 단체개인연금계좌(group personal pensions) 및 개인연금계좌(personal pensions)의 호조로 전년동기대비 21.3% 증가한 39억 3,560만 파운드를 기록함.

○ 단체개인연금계좌(group personal pensions) 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4억 9,000만 파운드 증가하였고, 개인연금계좌(personal pensions) 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2억 2,700만 파운드 늘어남.

- 단체개인연금계좌 및 개인연금계좌의 계약건수는 전년동기대비 58,000건 증가하였고, 채널별로는 특히 독립재정자문가 판매 증가(7억 2,900만 파운드)가 주목됨.

〈퇴직연금 신규보험료〉

■ 2012년 4/4분기 분할납 퇴직연금 보험료는 DB형 퇴직연금의 판매 부진으로 전년동기대비 20.3% 감소한 1억 5,360만 파운드를 기록함.

○ DB형 퇴직연금 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3,700만 파운드 감소하였으며, 채널별로는 독립재정자문가 판매 감소액(5,800만 파운드)이 DB형 전체 판매 감소액을 초과함.

○ 반면, DC형 퇴직연금 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400만 파운드 증가하였으며, 채널별로는 독립재정자문가 판매 증가액(800만 파운드)이 DC형 판매 증가액을 초과함.

■ 반면, 2012년 3/4분기에 크게 증가하였던 일시납 퇴직연금 보험료는 4/4분기 영국 경제가 다시 위축되면서 전년동기대비 20.6% 감소함.

○ 일시납 퇴직연금 보험료는 금액기준으로 전년동기대비 1억 3,213만 파운드 감소함.

○ DB형 퇴직연금 관리를 보험회사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Bulk Buyouts 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11억 9,800만 파운드 감소하였고, DC형 퇴직연금은 전년동기대비 5,500만 파운드 줄어듦.

○ 경기불황기에도 수익을 보장해주는 맞춤형퇴직연금(trustee investment plans)은 전년동기대비 4억 7,900만 파운드 증가하여 성장세가 지속됨.

〈역외영업 신규보험료〉

■ 2012년 4/4분기 역외영업 보험료는 분할납 기준으로 전년동기대비 21.9% 감소하여 7분기 연속 축소됨.

○ 전체 분할납 보험에서 1% 미만을 차지하는 역외영업 보험은 모든 종목의 부진으로 전년동기대비 120만 파운드 감소함.

■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에 영향을 받는 일시납 역외영업 판매는 전년동기대비 7.2% 증가함.

○ 금액기준으로 전년동기대비 8,780만 파운드 증가함.

○ 투자채권(investment bonds)과 개인채권(personal bonds) 판매는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이 줄어들면서 전년동기대비 각각 1,900만 파운드, 1,400만 파운드 증가함.

○ 비투자형 역외 일시납 보험료는 전분기에 이어 성장세를 지속함.

〈보장성보험 신규보험료〉

■ 전체 분할납 보험료의 17.1%를 차지하는 보장성보험료는 대부분 종목의 판매 호조로 전년동기대비 12.9% 증가함.

○ 정기보험, 종신보험, CI보험, 단체생명보험(group life)은 전년동기대비 3,000만 파운드 증가함.

- 3/4분기에 감소하였던 정기보험 보험료는 4/4분기 들어 전년동기대비 2,300만 파운드 증가하였으며, 종신보험은 전년동기대비 400만 파운드 늘어남.

■ 전체 일시납 보험료에서 0.4%를 차지하는 일시납 보장성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5.2% 감소함.

○ 일시납 보장성보험료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종합생명보험(collective life)이 전년동기대비 1,000만 파운드 감소함.

나. 모집형태별 신규보험료

■ 2012년 4/4분기 분할납 기준으로 독립재정자문가(IFA)와 전속대리점의 비중은 전년동기대비 증가한 반면, 직접판매의 비중은 감소함(〈그림 4〉 참조).

○ 독립재정자문가의 판매 비중은 퇴직연금계좌, 개인보장성보험, 역외영업에서 늘어나 전년동기대비 0.9%p 상승한 83.9%를 기록함.

○ 전속대리점의 판매 비중은 투자·저축보험, 퇴직연금, 퇴직연금계좌 판매 호조로 전년동기대비 1.0%p 상승한 12.1%를 기록함.

○ 직접판매의 비중은 전년동기대비 1.8%p 하락한 2.7%로 나타남.

〈그림 4〉 판매채널별 분할납 보험료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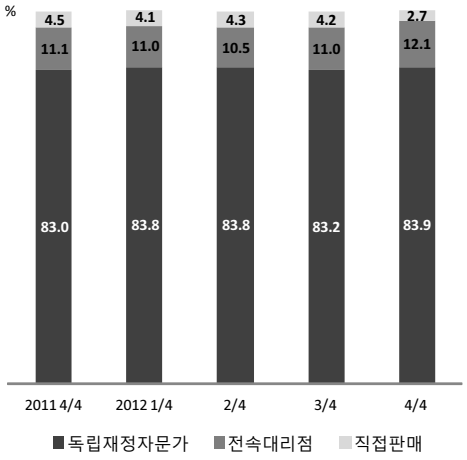

〈그림 5〉 판매채널별 일시납 보험료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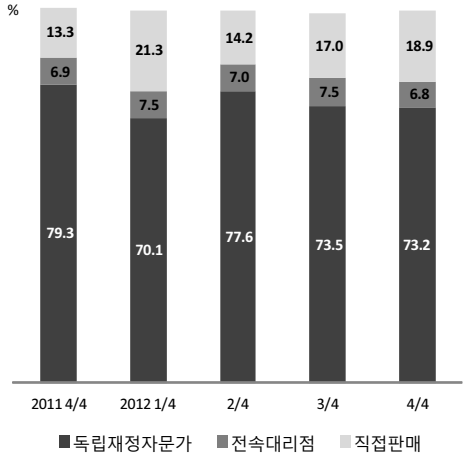

자료: 영국보험협회(ABI).

■ 일시납 기준의 경우 독립재정자문가(IFA)와 전속대리점의 비중은 전년동기대비 하락한 반면, 직접판매의 비중은 상승함(〈그림 5〉 참조).

○ 독립재정자문가의 판매 비중은 퇴직연금에서 낮아져 전년동기대비 6.1%p 하락한 73.2%를 기록함.

○ 전속대리점의 판매 비중은 대부분 종목의 판매 부진으로 전년동기대비 0.1%p 하락한 6.8%를 기록함.

○ 직접판매의 판매 비중은 퇴직연금 판매 호조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5.6%p 상승한 18.9%로 나타남.

■ 반면, 방카슈랑스 채널 분할납 및 일시납 보험료는 2012년 4/4분기에도 부진한 것으로 나타남.

○ 분할납 기준 방카슈랑스 판매는 전 종목에 걸친 판매 부진으로 전년동기대비 4,600만 파운드 감소한 7,000만 파운드를 기록함.

○ 일시납 기준 방카슈랑스 판매는 퇴직연금에서는 전년동기대비 증가하였으나, 투자·저축보험, 역외영업, 퇴직연금계좌의 판매 부진으로 전년동기대비 2억 4,200만 파운드 감소한 7억 7,000만 파운드를 기록함.

다. 손해보험[8)]

■ 2011년 영국 손해보험 시장규모는 전체 원수보험료 기준으로 694억 9,600만 파운드이며, 2010년 690억 7,900만 파운드 보다 4억 1,700만 파운드 증가하였음.

○ 재보험을 제외한 2011년 전체 원수보험료는 524억 800만 파운드로, 2010년 508억 8,800만 파운드 보다 15억 2,000만 파운드 증가하였음.

〈표 8〉 영국 손해보험 종목별 원수보험료

(단위: 백만 파운드)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자동차	12,969	12,840	12,562	13,584	15,686
재물	12,207	12,610	12,633	13,294	12,288
상해 및 질병	5,826	5,411	5,225	5,746	5,285
배상책임	5,681	6,329	6,412	6,283	5,503
해외 원보험	9,002	10,306	11,595	11,981	13,646
소계	45,685	47,496	48,427	50,888	52,408
재보험	15,507	19,136	17,733	18,191	17,088
전체 합계	61,192	66,632	66,160	69,079	69,496

자료: 영국보험협회(ABI).

■ 2011년 현재 전년대비 원수보험료가 증가한 종목은 자동차 및 해외 원보험이며, 재물, 상해 및 질병, 배상책임, 재보험은 전년대비 원수보험료가 감소하였음.

○ 2011년 자동차 원수보험료는 2010년 대비 15.5% 증가한 156억 8,600만 파운드를 기록하였고, 해외 원보험은 2010년 대비 13.9% 증가한 136억 4,600만 파운드이었음.

○ 2011년 재물, 상해 및 질병, 배상책임 원수보험료는 2010년 대비 각각 7.6%, 8.0%, 12.4% 감소함.

■ 2011년 자동차 및 비자동차[9)] 손해보험의 합산비율은 97.0%로 전년대비 7.1%p 낮아짐.

○ 2011년 사업비율은 30.6%로 2010년의 30.2%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2011년 손

8) 영국보험협회는 손해보험 원수보험료에 대해서는 분기별 통계를 발표하지 않음.

9) 해상, 항공, 운송보험(MAT)을 제외.

해율은 66.4%로 전년의 73.9%에 비해 크게 개선됨.

〈표 9〉 영국 손해보험 손해율, 사업비율, 합산비율 추이

(단위: %)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손해율	69.2	66.2	74.0	73.9	66.4
사업비율	31.6	32.2	32.6	30.2	30.6
합산비율	100.8	98.4	106.6	104.1	97.0

자료: 영국보험협회(ABI).

■ 판매채널 측면에서는 10년 전(1992년)과 비교해볼 때 직접판매 비중이 상승하였고, 브로커판매 비중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2011년 손해보험 판매에서 직접판매가 차지하는 비중은 20%로 1992년 10%에 비해 10%p 상승함.

○ 2011년 브로커판매 비중은 55%로 10년 전의 70%에 비해 15%p 하락함.

〈표 10〉 영국 손해보험 판매채널 비중 추이

(단위: %)

구분	브로커	전속대리점	직접판매	기타
1992	70.0	18.0	10.0	2.0
2011	55.0	24.0	20.0	1.0

자료: 영국보험협회(ABI).

조사 개요 및 출처

■ 영국의 보험산업은 영국보험협회(ABI: Association of British Insurers)에서 분기별로 발표하는 생명보험의 신규 보험료 통계를 바탕으로 기술함.

○ 영국의 경우 생명보험의 신규 보험료를 제외하고, 생명보험의 기타 통계 및 손해보험의 통계 입수가 어려운 상황임.

■ 영국보험협회에서 발표하는 분기별 생명보험 신규계약은 6개 종목으로 구분되는데, 보장성보험을 제외하면 신규계약은 개인과 단체로 분리되지 않음.

○ 보장성보험이 전체 신규계약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작기 때문에 개인보장성보험과 단체보장성보험을 보장성보험으로 통합하여 분류함.

■ ABI가 발표한 용어를 편의상 우리식 용어로 의역함.

원문	의역
Investment & Savings	투자・저축성보험
Individual Pensions	퇴직연금계좌
Occupational Pensions	퇴직연금
Offshore Business	역외영업
Individual Protection & Group Protection	보장성보험

3. 일본 동향[10)]

가. 생명보험

〈신규계약 현황〉

■ FY2012 3/4분기 생명보험 신규계약액은 사망보험을 중심으로 한 개인보험 성장에도 불구하고 개인연금 및 단체보험 성장세 둔화로 전년동기대비 -1.4% 감소한 20조 6,659억 엔을 기록함.

〈표 11〉 일본 생명보험 신규계약액

(단위: 억 엔, 전년동기대비 %)

구분			FY2011			FY2012		
			3/4	4/4	연간	1/4	2/4	3/4
개인		금 액	178,917	169,856	677,673	167,733	178,254	182,502
		증가율	3.9	9.3	3.6	8.4	2.4	2.0
		구성비	85.4	85.3	86.1	84.6	89.7	88.3
	사망	금 액	146,156	139,434	556,910	137,851	149,663	153,505
		증가율	3.2	9.9	4.5	9.1	3.2	5.0
		구성비	69.7	70.0	70.7	69.5	75.3	74.3
	생사 혼합	금 액	30,885	28,764	114,136	28,775	27,536	27,837
		증가율	5.8	5.3	-1.3	6.3	0.5	-9.9
		구성비	14.7	14.4	14.5	14.5	13.9	13.5
	생존	금 액	1,876	1,659	6,628	1,107	1,055	1,159
		증가율	29.6	33.4	26.7	-21.9	-37.1	-38.2
		구성비	0.9	0.8	0.8	0.6	0.5	0.6
개인연금		금 액	26,131	18,325	79,558	18,472	17,790	20,128
		증가율	62.0	12.5	14.0	12.0	-4.4	-23.0
		구성비	12.5	9.2	10.1	9.3	8.9	9.7
단체보험		금 액	4,533	11,057	30,214	12,158	2,745	4,029
		증가율	61.5	59.8	21.7	15.1	-32.4	-11.1
		구성비	2.2	5.5	3.8	6.1	1.4	1.9
합계		금 액	209,582	199,238	787,445	198,363	198,789	206,659
		증가율	9.6	11.5	5.2	9.1	1.0	-1.4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일본생명보험협회.

10) 일본 보험시장의 통계 및 용어에 관한 설명은 첨부의 「조사 개요 및 출처」를 참고하기 바람.

○ 개인보험 신규계약액은 생사혼합보험과 생존보험이 각각 9.9%, 38.2% 감소하였으나 사망보험의 증가로 전년동기대비 2.0% 증가한 18조 2,502억 엔을 시현함.

- 정기보험과 종신보험이 각각 전년동기대비 25.5%, 1.7% 증가하여 사망보험, 개인보험의 성장세를 견인하였음.
- 반면, 양로보험(정기양로보험 포함)과 기타 생사혼합보험이 각각 전년동기대비 4.4%, 6.0% 감소하였음.

○ 개인연금보험은 변액연금보험이 8.0% 증가하였으나, 정액연금보험이 24.2% 감소함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23.0% 감소한 2조 128억 엔을 기록함.

- 개인연금보험은 노후준비상품으로 주목받고 있으나 지속적인 장기금리 하락으로 감소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단체보험의 경우 단체정기보험(종합복지단체정기보험 포함)과 단체신용생명보험이 각각 35.1%, 24.9% 감소함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11.1% 줄어든 4,029억 엔을 기록함.

〈자산 현황〉

■ FY2012 3/4분기 말 총자산 규모는 전분기대비 2.0% 증가한 335조 2,535억 엔이며, 80% 수준의 비중을 차지하는 유가증권 규모는 전분기대비 3.3% 증가한 269조 4,451억 엔을 기록하였음.

○ 국채 비중이 소폭 낮아진 가운데 주식 및 외화증권 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있음.

- 국채와 지방채 규모는 전분기대비 각각 0.8%, 1.9% 증가하였으나 총자산 대비 국채 비중은 0.5%p 낮아졌고, 지방채 비중은 그대로 유지되었음.
- 주식 및 외화증권의 규모는 전분기대비 각각 8.0%, 10.4% 증가하였고, 아울러 총자산 내 비중이 각각 0.2%p, 1.2%p 상승하였음.

○ 한편, 유가증권과는 달리 유가증권 외 자산들의 규모는 전분기보다 감소하였음.

- 현금 및 예금, 단기자금, 금전신탁, 대출금의 규모는 전분기대비 각각 2.2%, 27.4%, 5.0%, 1.6% 감소하였음.

〈표 12〉 일본 생명보험회사 주요 자산 현황 및 비중 추이[1)]

(단위: 억 엔, %)

구분	FY2011				FY2012					
	3/4		4/4		1/4		2/4		3/4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현금 및 예금	35,512	-22.8	35,155	-1.0	33,354	-5.1	32,947	-1.2	32,220	-2.2
단기자금	25,595	18.9	25,093	-2.0	24,137	-3.8	22,301	-7.6	16,187	-27.4
매입금전채권	31,189	2.2	28,894	-7.4	28,890	-0.01	28,826	-0.2	30,386	5.4
금전신탁	19,737	1.1	20,144	2.1	19,658	-2.4	20,683	5.2	19,653	-5.0
유가증권	2,500,557	0.7	2,575,603	3.0	2,567,069	-0.3	2,608,694	1.6	2,694,451	3.3
- 국 채	1,393,340	1.4	1,412,757	1.4	1,425,411	0.9	1,450,710	1.8	1,461,980	0.8
- 지방채	129,152	2.4	131,630	1.9	134,369	2.1	137,419	2.3	140,029	1.9
- 사 채	251,689	-0.4	253,429	0.7	253,288	-0.1	253,280	0.0	252,964	-0.1
- 주 식	134,667	-4.0	147,444	9.5	129,284	-12.3	128,889	-0.3	139,223	8.0
- 외화증권	440,819	0.5	469,237	6.4	472,095	0.6	484,124	2.5	534,412	10.4
대출금	425,334	-0.3	421,739	-0.8	412,639	-2.2	411,606	-0.3	404,985	-1.6
부동산	65,570	-1.0	65,139	-0.7	64,597	-0.8	64,307	-0.4	64,538	0.4
운용자산 2)	3,119,521	0.3	3,196,765	2.5	3,176,195	-0.6	3,214,337	1.2	3,286,246	2.2
비운용자산	72,151	-8.9	72,760	0.8	72,894	0.2	73,291	0.5	66,289	-9.6
총자산 3)	3,191,672	0.1	3,269,525	2.4	3,249,089	-0.6	3,287,628	1.2	3,352,535	2.0

주: 1)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 말 잔액이며, 증가율은 전분기대비임. 그리고 연말 수치는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2) 운용자산은 상기 주요자산, 채권대차거래지불보증금 등의 합계임.
3) 총자산은 운용자산과 유형 고정자산, 무형 고정자산 및 기타 자산 등의 합계임.

자료: 일본생명보험협회.

나. 손해보험

〈보험료 현황〉

■ FY2012 3/4분기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상해 및 자동차배상책임을 제외한 모든 종목에서 보험료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2.2% 늘어난 2조 445억 엔을 기록함.

〈표 13〉 일본 손해보험 원수보험료[1)]

(단위: 억 엔, %)

구분		FY2011			FY2012		
		3/4	4/4	연간	1/4	2/4	3/4
화재	보험료[2)]	3,614	3,541	13,773	3,425	3,352	3,795
	증가율[3)]	5.0	9.3	4.7	1.2	3.6	5.0
	구성비	18.1	17.9	17.2	16.2	16.8	18.6
해상	보험료	469	478	1,949	512	472	475
	증가율	-0.8	-3.4	-0.8	-1.7	-1.9	1.3
	구성비	2.3	2.4	2.4	2.4	2.4	2.3
운송	보험료	154	154	622	171	150	155
	증가율	2.3	5.5	2.3	3.0	1.4	0.6
	구성비	0.8	0.8	0.8	0.8	0.8	0.8
자동차	보험료	8,772	8,729	34,761	9,122	8,780	9,039
	증가율	1.5	2.8	1.3	3.5	3.9	3.0
	구성비	43.8	44.1	43.5	43.1	44.0	44.2
자동차 배상책임	보험료	2,217	2,267	8,917	2,410	2,231	2,214
	증가율	16.9	13.6	10.6	8.5	0.9	-0.1
	구성비	11.1	11.4	11.2	11.4	11.2	10.8
상해	보험료	2,626	2,409	10,677	2,882	2,629	2,497
	증가율	5.8	5.1	2.6	-0.4	-4.3	-4.9
	구성비	13.1	12.2	13.4	13.6	13.2	12.2
특종	보험료	2,158	2,237	9,223	2,650	2,361	2,270
	증가율	0.6	6.4	2.9	4.4	3.1	5.2
	구성비	10.8	11.3	11.5	12.5	11.8	11.1
합계	보험료	20,010	19,814	79,923	21,171	19,975	20,445
	증가율	4.0	5.6	3.2	3.1	2.1	2.2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실적임. 그리고 연말 수치는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2) 일본의 원수정미보험료, 신종보험을 각각 원수보험료, 특종보험으로 의역함.
3)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수치이며, 구성비는 손해보험 전체 실적 대비임.
자료: 일본손해보험협회.

○ 화재보험은 일반화재보험과 지진보험이 각각 7.1%, 6.8% 늘어나면서 전년동기대비 5.0% 증가한 3,795억 엔을 기록함.

- 지진보험이 특약으로 포함된 화재보험의 증가세가 지속되었음.

○ 해상보험은 전년동기대비 1.3% 증가한 475억 엔을 기록함.

- 엔저에 따른 수출 증가와 주가상승에 따른 경기회복 기대와 물류증가 등으로 해상보험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함.

○ 자동차보험은 전년동기대비 3.0% 증가한 9,039억 엔을 기록하였으며, 자동차배상책임 원수보험료는 2,214억 엔으로 전년동기대비 0.1% 감소함.

- 최근 상품요율 개정 등으로 자동차보험은 전년동기보다 증가하였지만 증가율이 전분기보다 낮아짐.

○ 상해보험의 원수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4.9% 감소한 2,497억 엔을 기록하였고, 특종보험은 전년동기대비 5.2% 증가한 2,270억 엔을 기록함.

- 특종보험 중 비중이 큰 배상책임보험(49.3%)과 비용・이익보험[11](17.8%) 등이 각각 3.4%, 15.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자산 현황〉

■ FY2012 3/4분기 말 손해보험 총자산은 유가증권 증가로 인한 운용자산 증가(전분기대비 3.4%)로 2.3% 증가한 27조 5,060억 엔을 기록함.

○ 현금 및 예금은 전분기대비 9.5% 감소한 6,909억 엔을 기록하였으며, 단기자금도 전분기대비 29.7% 감소한 3,590억 엔을 기록함.

- 대출금과 부동산 역시 전분기대비 각각 1.9%, 0.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한편, 환매조건부채권은 전분기대비 0.9% 증가한 2,930억 엔을 기록하였고, 매입금전채권도 4.5% 증가한 4,331억 엔을 기록함.

○ 유가증권의 경우 지방채와 회사채는 감소세가 확대된 반면 국채, 주식 및 외화증권은 각각 3.5%, 14.7%, 5.2%의 증가하였음.

11) 산업화 이후 기업활동이 복잡해지고 고도화됨에 따라 다양한 사고가 늘어나면서 기업의 영업이익 상실, 혹은 영업유지를 위한 상실이익이나 그 비용을 담보로 하는 보험임. 우리나라의 기계보험, 기업휴지손해부담특약 또는 이익상실 담보특약 등과 유사함.

- 일본정부의 경기부양정책이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일본 보험산업의 국채보유 성향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임.

〈표 14〉 일본 손해보험회사 주요 자산 현황 및 비중 추이[1)]

(단위: 억 엔, %)

구분		FY2011				FY2012					
		3/4		4/4		1/4		2/4		3/4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현금 및 예금		9,119	28.3	9,146	0.3	7,494	-18.1	7,634	1.9	6,909	-9.5
단기자금		2,691	-56.0	3,801	41.2	3,573	-6.0	5,104	42.8	3,590	-29.7
환매조건부채권		3,730	75.6	4,071	9.1	4,159	2.2	2,904	-30.2	2,930	0.9
매입금전채권		7,430	-6.8	6,741	-9.3	6,221	-7.7	4,143	-33.4	4,331	4.5
금전신탁		658	-17.1	581	-11.7	541	-6.9	586	8.3	555	-5.3
유가증권	국 채	54,786	4.6	57,769	5.4	58,121	0.6	59,765	2.8	61,837	3.5
	지방채	4,457	-5.0	3,924	-12.0	3,852	-1.8	3,773	-2.1	3,634	-3.7
	회사채	29,871	-4.5	29,200	-2.2	28,725	-1.6	27,871	-3.0	26,984	-3.2
	주 식	50,904	-8.5	57,242	12.5	51,275	-10.4	48,049	-6.3	55,109	14.7
	외화증권	44,009	-3.8	43,235	-1.8	45,757	5.8	45,554	-0.4	47,918	5.2
	기타증권	2,886	0.6	2,981	3.3	2,846	-4.5	2,636	-7.4	2,728	3.5
	소 계	186,914	-3.0	194,350	4.0	190,576	-1.9	187,649	-1.5	198,210	5.6
대출금		19,776	-2.5	19,219	-2.8	18,986	-1.2	18,278	-3.7	17,929	-1.9
부동산		10,489	-0.8	10,749	2.5	10,693	-0.5	10,555	-1.3	10,461	-0.9
운용자산		240,807	-2.7	248,658	3.3	242,343	-2.5	236,854	-2.3	244,915	3.4
비운용자산2)		31,011	-0.8	31,300	0.9	31,005	-0.9	31,962	3.1	30,144	-5.7
총자산		271,820	-2.5	279,958	3.0	273,348	-2.4	268,817	-1.7	275,060	2.3

주: 1)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 말 누적 잔액이며, 증가율은 전분기대비임.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2) 비운용자산은 현금, 건설 중인 자산, 유 · 무형고정자산, 대리점비용, 재보험비용, 이연세금자산, 지불승낙담보 등을 말함.

자료: 일본손해보험협회.

조사 개요 및 출처

■ 일본 보험산업은 크게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으로 구분되는데, 각각 일본생명보험협회(http://www.seiho.or.jp)와 일본손해보험협회(http://www.sonpo.or.jp)를 통해 입수한 통계를 바탕으로 기술함.

○ 매월/분기에 공개되는 누적 통계(raw data)를 분기별로 전환해 분석함.

○ 생명보험은 신계약종목별통계표(新契約種類別統計表)의 신규계약액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자산 현황은 생명보험사업개황(生命保険事業概況) 중 주요자산운용현황(主要資産運用状況) 통계를 분석함.

○ 손해보험은 종목별통계표(種目別統計表)의 원수정미보험료(元受正味保険料)와 원수정미보험금(元受正味保険金) 통계를 활용해 보험료 및 지급보험금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자산 현황은 손해보험회사자금운용상황표(損害保険会社総合資金運用状況一覧表)를 이용하여 분석함.

■ 생명보험은 종목 특성을 고려하여 개인성보험과 단체성보험으로 구분하여 분석함.

○ 개인성보험은 개인보험(個人保険)과 개인연금보험(個人年金保険)으로, 단체성보험은 단체보험(団体保険), 단체연금보험(団体年金保険), 재형보험(財形保険), 재형연금보험(財形年金保険), 의료보장보험(医療保障保険), 취업불능보험(就業不能保障保険)으로 분류함.

○ 단체성보험 중 실적이 미미한 재형보험, 재형연금보험, 의료보장보험, 취업불능보험은 기타로 분류함.

■ 일본식 보험용어를 편의상 우리식 용어로 의역함.

원문	의역
원수정미보험료(元受正味保険料)	원수보험료
원수정미보험금(元受正味保険金)	지급보험금
신종보험(新種保険)	특종보험

◘ 중국 동향[12)]

가. 중국 보험산업 총괄

〈수지상황〉

■ 2012년 4/4분기 보험산업 수입보험료는 3,412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10.6% 증가하였음.

○ 손해보험 수입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세가 둔화되었으나 인보험 수입보험료가 전년동기에 비해 증가하면서 보험산업 전체 수입보험료 증가세는 지속된 것으로 나타남.

○ 한편, 2012년 보험산업 전체 수입보험료는 인보험 실적이 회복되면서 1조 5,488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8.0% 증가함.

〈표 15〉 중국 보험산업 수입보험료, 지급보험금, 사업비[1), 2)]

(단위: 억 위안, %)

구분		CY2011		CY2012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수입보험료	금액	3,085	14,339	4,835	3,698	3,544	3,412	15,488
	증가율[3)]	-3.7	-1.3	4.7	7.5	10.9	10.6	8.0
지급보험금	금액	1,056	3,929	1,172	1,091	1,130	1,324	4,716
	증가율[3)]	12.6	22.8	19.5	11.4	23.6	25.4	20.2
사업비	금액	594	1,882	467	505	536	664	2,171
	증가율[3)]	20.6	22.4	21.2	15.6	15.0	11.8	15.4

주: 1) 기간별 실적치 기준.
2) 상기 수치는 각 회사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감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3)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임.
자료: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12) 중국 보험시장의 통계 및 용어에 관한 설명은 첨부된 「조사 개요 및 출처」를 참고하기 바람.

■ 2012년 4/4분기 지급보험금은 전년동기대비 25.4% 증가한 1,324억 위안을 기록함.

○ 2012년 보험산업 지급보험금은 전년동기에 비해 1/4분기 19.5%, 2/4분기 11.4% 증가하였고, 3/4분기 23.6%, 4/4분기 25.4% 증가하는 등 보험금 지급 압력이 다소 상승하였음.

■ 2012년 4/4분기 사업비는 664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11.8% 늘어났으며, 2012년 사업비는 2,171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15.4% 증가하였음.

〈자산운용〉

■ 2012년 4/4분기 총자산은 전분기대비 6.6% 증가한 7조 3,546억 위안을 기록하였음.

○ 이 중 운용자산은 전분기대비 7.5% 증가한 6조 8,543억 위안, 비운용자산은 전분기대비 4.1% 감소한 5,003억 위안을 기록함.

■ 운용자산 중 예치금의 비중은 전분기와 같은 수준에 그쳤으며 투자금의 비중은 소폭 확대되었는데 이는 중국 주식 시장이 4/4분기에 반등하였기 때문임.

○ 예치금은 2조 3,446억 위안으로 전분기대비 6.7% 증가하였으며 총자산대비 비중은 전분기와 같은 수준인 31.9%를 기록하였음.

○ 투자금은 4조 5,097억 위안으로 전분기대비 7.9% 증가하였으며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분기 60.6%에서 61.3%로 상승함.

〈표 16〉 중국 보험산업 자산운용 포트폴리오[1), 2)]

(단위: 억 위안, %)

구분		CY2011		CY2012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운용자산계	금액	55,474	55,474	58,882	61,804	63,784	68,543	68,543
	증가율[3)]	5.4	20.5	6.1	5.0	3.2	7.5	23.6
	구성비	92.2	92.2	92.5	91.2	92.4	93.2	92.2
예치금	금액	17,737	17,737	20,698	22,578	21,979	23,446	23,446
	증가율[3)]	3.2	27.5	16.7	9.1	-2.7	6.7	32.2
	구성비	29.5	29.5	32.5	33.3	31.9	31.9	31.9
투자금	금액	37,737	37,737	38,183	39,226	41,805	45,097	45,097
	증가율[3)]	6.5	17.4	1.2	2.7	6.6	7.9	19.5
	구성비	62.8	62.8	60.0	57.9	60.6	61.3	61.3
비운용자산계	금액	4,664	4,664	4,796	5,956	5,215	5,003	5,003
	증가율[3)]	0.4	5.2	2.8	24.2	-12.4	-4.1	7.3
	구성비	7.8	7.8	7.5	8.8	7.6	6.8	6.8
총자산	금액	60,138	60,138	63,679	67,760	68,999	73,546	73,546
	증가율[3)]	5.0	19.1	5.9	6.4	1.8	6.6	22.3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기말잔액기준.
2) 상기 수치는 각 회사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감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연말 최종 집계 되는 수치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3) 증가율은 전분기대비임.
자료: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나. 인보험

〈수입보험료 현황〉

■ 2012년 4/4분기 인보험 수입보험료는 2,073억 위안[13)]으로 전년동기대비 6.7% 증가하였음.

○ 생명보험 증가세 확대와 건강보험 및 상해보험 성장세 지속이 인보험 수입보험료 증

13) 인보험 수입보험료에는 인보험회사 수입보험료뿐만 아니라 손해보험회사의 단기의료보험과 상해보험, 연금보험회사가 운영하는 인보험 상품의 수입보험료가 포함됨.

가의 원인으로 분석됨.

○ 한편, 2012년 인보험 수입보험료는 생명보험 실적이 회복되면서 1조 157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4.5% 증가함.

■ 생명보험 및 건강보험 수입보험료는 전년동기에 비해 증가세가 모두 크게 개선되었으며, 상해보험 수입보험료는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음.

○ 2011년 4/4분기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급락에 따른 기저효과로 2012년 4/4분기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1,799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5.0% 증가함.

- 자본시장 불황으로 생명보험 주력 종목인 투자연동형보험 판매 실적이 크게 개선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임.

○ 건강보험 수입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21.4% 증가한 193억 위안, 상해보험은 전년동기대비 17.1% 증가한 82억 위안을 기록함.

○ 한편, 2012년 생명보험, 건강보험 및 상해보험 수입보험료는 각각 전년대비 2.4%, 24.7% 및 15.6% 증가한 8,908억 위안, 863억 위안 및 386억 위안을 기록함.

■ 2012년 변액보험 및 변액연금보험의 수익률은 중국 주식시장이 4/4분기에 반등하면서 모두 플러스를 기록함.

○ 상하이선전300지수는 2012년 하반기부터 5개월 연속 하락하였으나 12월에 2,108.85에서 2,522.95로 크게 반등함.

○ 176개 변액보험 투자계정의 평균수익률은 3.3%를 기록하였으며, AXA-Minmetals 및 Met life 보험회사가 운영하는 변액연금보험[14] 수익률은 각각 4.11%와 3.69%에 이르렀음.

14) 변액연금보험은 중국에서 2011년 8월부터 출시되었는데, 현재 이를 판매하는 보험회사는 AXA-Minmetals 및 Met life 2개가 있음.

〈표 17〉 인보험 수입보험료[1), 2), 3)]

(단위: 억 위안, %)

구분		CY2011		CY2012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인보험	보험료	1,942	9,721	3,534	2,299	2,251	2,073	10,157
	증가율[4)]	-14.2	-8.6	1.4	3.9	8.1	6.7	4.5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생명보험	보험료	1,714	8,696	3,203	1,962	1,945	1,799	8,908
	증가율[4)]	-16.6	-10.2	-0.2	1.0	6.3	5.0	2.4
	구성비	88.2	89.4	90.6	85.3	86.4	86.8	87.7
- 건강보험	보험료	159	692	229	237	204	193	863
	증가율[4)]	4.4	2.2	22.4	30.9	23.6	21.4	24.7
	구성비	8.2	7.1	6.5	10.3	9.1	9.3	8.5
- 상해보험	보험료	70	334	103	99	103	82	386
	증가율[4)]	25.2	21.5	17.9	11.2	17.0	17.1	15.6
	구성비	3.6	3.4	2.9	4.3	4.6	4.0	3.8

주: 1) 기간별 실적치기준.
2) 인신보험, 인수보험, 의외상해보험을 각각 인보험, 생명보험, 상해보험으로 의역함.
3) 상기 수치는 각 회사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감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4)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임.
자료: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지급보험금 현황〉

■ 2012년 4/4분기 인보험 지급보험금은 457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27.7% 증가했으며, 증가세는 전분기에 비해 확대됨.

○ 생명보험, 건강보험 및 상해보험의 지급보험금은 각각 351억 위안, 79억 위안 및 27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30.5%, 19.7% 및 12.5% 증가함.

○ 2011년 4/4분기의 인보험 지급보험금 급락에 따른 기저효과로 인보험 지급보험금은 2012년 4/4분기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남.

○ 한편, 2012년 인보험 지급보험금은 전년대비 9.1% 증가한 1,900억 위안을 기록함.

〈표 18〉 인보험 지급보험금[1), 2), 3)]

(단위: 억 위안, %)

구분		CY2011		CY2012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인보험	보험금	358	1,742	599	444	400	457	1,900
	증가율[4)]	-6.2	20.7	8.8	-5.7	10.5	27.7	9.1
- 생명보험	보험금	269	1,301	503	353	297	351	1,505
	증가율[4)]	-6.3	17.3	15.3	6.3	12.9	30.5	15.7
- 건강보험	보험금	66	360	73	69	77	79	298
	증가율[4)]	-13.6	36.2	-24.0	-42.5	-1.3	19.7	-17.2
- 상해보험	보험금	24	82	22	21	26	27	97
	증가율[4)]	19.2	15.3	24.7	10.5	23.8	12.5	18.3

주: 1)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실적치.
2) 인신보험, 인수보험, 의외상해보험을 각각 인보험, 생명보험, 상해보험으로 의역함.
3) 상기 수치는 각 회사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감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4)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임.
자료: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회사 그룹별 시장점유율〉

■ 2012년 4/4분기 수입보험료 기준 중국계 보험회사의 인보험 시장점유율은 다소 하락하였고, 외자계 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은 다소 상승함.

○ 중국계 인보험회사 시장점유율은 93.3%로 전분기에 비해 1.2%p 하락하였으며, 외자계 보험회사 시장점유율은 1.2%p 상승한 6.7%를 기록함.

- 외자계 인보험회사들 가운데 AIA China, Metlife, Generali China 등의 시장점유율은 각각 18.0%, 10.2%, 7.2% 수준임.

○ 한편, 중국계 인보험회사 중 상위 5개사[15)]의 시장점유율은 67.8%로 전분기에 이어 하락세를 지속함.

15) 인보험의 상위 5개사는 중국인수생명보험, 타이핑양생명보험, 핑안생명보험, 신화생명보험, 중국인민생명보험은 각각 29.4%, 9.1%, 13.7%, 9.8%, 5.8%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함.

〈표 19〉 인보험 회사그룹별 시장점유율(수입보험료 기준)[1), 3)]

(단위: %)

구분			CY2011		CY2012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인보험	중국계	상위 5개사	69.1	72.8	72.9	71.5	70.2	67.8	71.0
		중소형사[2)]	25.7	23.2	23.8	23.9	24.2	25.5	24.3
		소계	94.8	96.0	96.7	95.3	94.5	93.3	95.2
	외자계		5.2	4.0	3.3	4.7	5.5	6.7	4.8

주: 1) 시장 점유율은 해당기간별 수치임.
2) 중소형사는 상위사와 외자계를 제외한 보험회사들임.
3) 상기 수치는 각 회사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감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자료: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다. 손해보험

〈수입보험료 현황〉

■ 2012년 4/4분기 손해보험 수입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17.1% 증가한 1,339억 위안으로 전분기에 비해 증가세가 소폭 확대됨.

○ 2012년 4/4분기 전년동기대비 중국 경제 성장률이 전분기에 비해 개선되었으며 2012년 전국 자동차 판매 증가세가 확대되었기 때문임.

- 중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012년 3/4분기에 7.4%를 기록하였으나 4/4분기에 7.9%로 나타났음.
- 중국자동차협회(CAAM)에 따르면 2012년 전국 자동차 판매량은 1,931만 대로 전년동기대비 4.3% 증가했으며 동 증가율은 1~9월(3.4%)에 비해 0.9%p 확대됨.

○ 한편, 2012년 손해보험 수입보험료는 전년대비 15.4% 증가한 5,331억 위안을 기록함.

〈표 20〉 손해보험 수입보험료[1), 4)]

(단위: 억 위안, %)

구분		CY2011		CY2012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손해보험	보험료[2)]	1,143	4,618	1,301	1,399	1,292	1,339	5,331
	증가율[3)]	21.5	18.5	14.8	14.0	15.9	17.1	15.4

주: 1) 재산보험을 손해보험으로 의역함
2)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실적치임.
3)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임.
4) 상기 수치는 각 회사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감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자료: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지급보험금 현황〉

■ 2012년 4/4분기 손해보험 지급보험금은 전년동기대비 24.1% 증가한 866억 위안을 기록함.

○ 감독당국의 피보험자 보호 강화정책으로 자동차보험 지급보험금 증가세가 지속된 것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됨.

〈표 21〉 손해보험 지급보험금[1), 2)]

(단위: 억 위안, %)

구분		CY2011		CY2012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손해보험	보험금[3)]	698	2,187	573	647	730	866	2,816
	증가율[4)]	25.5	24.5	33.5	27.4	32.2	24.1	28.8

주: 1) 재산보험을 손해보험으로 의역함.
2) 상기 수치는 각 회사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감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3)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실적치임.
4)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임.
자료: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회사 그룹별 시장점유율〉

■ 2012년 4/4분기 수입보험료 기준 중국계 보험회사와 외자계 보험회사의 손해보험 시장점유율은 전분기와 같은 수준으로 나타남.

○ 중국계 보험회사는 98.8%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하였으며 외자계 보험회사는 여전히 1.2%에 그침.

○ 손해보험 상위 3개사인 중국인민재산, 핑안재산, 타이핑양재산은 각각 33.3%, 18.0%, 12.8%의 시장점유율로 손해보험시장에 64.1%를 차지하고 있으며, 상위 3개사의 시장점유율은 전분기에 비해 1.3%p 하락하였음.

○ 외자계 손해보험회사들 중 상위 3사는 Groupama Avic, AIG[16], Liberty Mutual 손해보험회사들로 외자계 시장점유율 중 각각 19.7%, 14.3%, 12.2%를 차지함.

〈표 22〉 수입보험료 기준 손해보험 회사그룹별 시장점유율[1), 3)]

(단위: %)

구분			CY2011		CY2012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손해보험	중국계	상위 3개사	65.9	66.6	66.7	65.2	65.4	64.1	65.3
		중소형사[2)]	33.0	32.3	32.1	33.6	33.3	34.7	33.4
		소계	98.9	98.9	98.8	98.8	98.8	98.8	98.8
	외자계		1.1	1.1	1.2	1.2	1.2	1.2	1.2

주: 1) 기간별 점유율은 해당기간에 대한 수치임.
2) 중소형사는 상위사와 외자계를 제외한 보험회사들임.
3) 상기 수치는 각 회사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감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자료: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16) Chartis의 회사명은 2012년 11월 5일에 AIG로 변경됨.

라. 연금보험[17)]

■ 2012년 4/4분기 연금보험회사의 수탁보험료는 160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46.8% 증가하였고, 누적 운용보험료 규모는 2,009억 위안으로 전분기대비 9.1% 늘어남.

○ 2012년 하반기에 들어 도시화 추진과 경제개혁의 가속화 및 정부의 기업연금 발전 추진정책으로 기업연금 수탁보험료는 급성장하고 있음.

○ 중국 기업근로자의 기업연금 가입률이 2.1%에 그치고 기업연금의 소득대체율이 1%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기업연금시장의 성장잠재력은 매우 크다고 판단됨.

○ 한편, 2012년 연금보험회사의 수탁보험료는 662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61.5% 크게 증가하였음.

〈표 23〉 중국 연금보험 수입보험료 및 자산 운용 현황[1)]

(단위: 억 위안, %)

구분		CY2011			CY2012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수탁보험료[2)]	금액	87	109	410	207	167	127	160	662
	증가율[2)]	22.5	-19.3	14.8	22.0	271.1	46.0	46.8	61.5
누적 운용 보험료	금액	1,265	1,378	1,378	1,561	1,723	1,842	2,009	2,009
	증가율[3)]	4.0	8.9	32.6	13.3	10.3	6.9	9.1	45.8

주: 1) 상기 수치는 각 회사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감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2) 수탁보험료는 해당기간에 대한 실적치이며,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임.
3) 누적 운용보험료 증가율은 전분기대비 수치임.
자료: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17) 중국은 2004년 4월부터 연금보험을 시범 시행하였으며 2007년 10월부터 연금보험회사의 운용을 정식으로 허용하였음. 현재까지 전국에서 연금보험을 운용하는 보험회사는 5개가 있는데 태핑, 핑안, 인수, 창장, 태강 등임.

조사 개요 및 출처

■ 중국 보험산업은 생명보험에 해당하는 인보험(人身保險)과 손해보험에 해당하는 재산보험(財産保險)으로 구분되는데, 중국 보험산업을 감독하는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http://www.circ.gov.cn)에서 입수한 통계를 바탕으로 기술함.

○ 월별 누적 통계(raw data)를 분기별로 전환해 분석함.

○ 수입보험료, 지급보험금 및 주요 경영실적 등 경영지표 분석을 위해 보험산업경영현황표(保險業經營情況表)를 사용함.

○ 또한, 인보험회사수입보험료현황표(人身保險公司保費收入情況表)와 손해보험회사수입보험료현황표(財産保險公司保費收入情況表)를 활용해 회사그룹별 시장점유율 분석을 시도함.

■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의 〈중국보험연감〉 분류 기준에 근거해 인보험을 상해보험, 건강보험, 생명보험으로 분류해 기술함.

○ 생명보험은 신종보험인 투자연동형보험, 만능형보험(유니버셜), 배당형보험과 저축성 위주의 전통생명보험으로 분류함.

■ 중국 보험용어를 편의상 우리식 용어로 의역함.

변경 전	변경 후
재산보험(財産保險)	손해보험
인신보험(人身保險)	인보험
인수보험(人壽保險)	생명보험
의외상해보험(人身意外傷害保險)	상해보험

■ 실적치는 보험회사들이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속보 자료로 연말에 최종 집계되는 데이터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보험연구원(KIRI) 발간물 안내

■ 연구보고서

2008-1 보험회사의 리스크 중심 경영전략에 관한 연구 / 최영목, 장동식, 김동겸 2008.1
2008-2 한국 보험시장과 공정거래법 / 정호열 2008.6
2008-3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자산운용 / 류건식, 이경희, 김동겸 2008.3
2009-1 보험설계사의 특성분석과 고능률화 방안/ 안철경, 권오경 2009.1
2009-2 자동차사고의 사회적 비용 최소화 방안 / 기승도 2009.2
2009-3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의 진단과 평가 / 유경원, 이혜은 2009.3
2009-4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제고 방안 / 류건식, 이창우, 김동겸 2009.3
2009-5 일반화선형모형(GLM)을 이용한 자동차보험 요율상대도 산출방법 연구 / 기승도, 김대환 2009.8
2009-6 주행거리에 연동한 자동차보험제도 연구 / 기승도, 김대환, 김혜란 2010.1
2010-1 우리나라 가계 금융자산 축적 부진의 원인과 시사점 / 유경원, 이혜은 2010.4
2010-2 생명보험 상품별 해지율 추정 및 예측 모형 / 황진태, 이경희 2010.5
2010-3 보험회사 자산관리서비스 사업모형 검토 / 진익, 김동겸 2010.7

■ 정책보고서

2008-2 환경오염리스크관리를 위한 보험제도 활용방안 / 이기형 2008.3
2008-3 금융상품의 정의 및 분류에 관한 연구 / 유지호, 최원 2008.3
2008-4 2009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 이태열, 신종협, 황진태, 유진아, 김세환, 이정환, 박정희, 김세중, 최이섭 2008.11
2009-1 현 금융위기 진단과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제언 / 진익, 이민환, 유경원, 최영목, 최형선, 최원, 이경아, 이혜은 2009.2
2009-2 퇴직연금의 급여 지급 방식 다양화 방안 / 이경희 2009.3
2009-3 보험분쟁의 재판외적 해결 활성화 방안 / 오영수, 김경환, 이종욱 2009.3
2009-4 2010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 황진태, 변혜원, 이경희, 이정환, 박정희, 김세중, 최이섭 / 2009.12
2009-5 금융상품판매전문회사의 도입이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 / 안철경, 변혜원, 권오경 2010.1
2010-1 보험사기 영향요인과 방지방안 / 송윤아 2010.3
2010-2 2011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 김대환, 이경희, 이정환, 최원, 김세중, 최이섭 2010.12

2011-1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 개선방안 / 오영수, 안철경, 변혜원, 최영목, 최형선, 김경환, 이상우, 박정희, 김미화 2010.4
2011-2 일반공제사업 규제의 합리화 방안 / 오영수, 김경환, 박정희 2011.7
2011-3 퇴직연금 적립금의 연금전환 유도방안 / 이경희 2011.5
2011-4 저출산 · 고령화와 금융의 역할 / 윤성훈, 류건식, 오영수, 조용운, 진익, 유진아, 변혜원 2011. 7
2011-5 소비자보호를 위한 보험유통채널 개선방안 / 안철경, 이경희 2011.11
2011-6 2012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 황진태, 이정환, 최원, 김세중, 오병국 2011.12
2012-1 인적사고 보험금의 지급방식 다양화 방안 / 조재린, 이기형, 정인영 2012.8
2012-2 보험산업 진입 및 퇴출에 관한 연구 / 이기형, 변혜원, 정인영 2012.10
2012-3 금융위기 이후 보험규제 변화 및 시사점 / 임준환, 유진아, 이경아 2012.11
2012-4 소비자중심의 변액연금보험 개선방안 연구: 공시 및 상품설계 개선을 중심으로 / 이기형, 임준환, 김해식, 이경희, 조영현, 정인영 2012.12
2013-1 생명보험의 자살면책기간이 자살에 미치는 영향 / 이창우, 윤상호 2013.1
2013-2 퇴직연금 지배구조체계 개선방안 / 류건식, 김대환, 이상우 2013.1
2013-3 2013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 전용식, 이정환, 최원, 김세중, 채원영 2013.2
2013-4 사회안전망 체제 개편과 보험산업 역할 / 진익, 오병국,이성은 2013.3
2013-5 보험지주회사 감독체계 개선방안 연구 / 이승준, 김해식, 조재린 2013.5

■ 경영보고서

2009-1 기업휴지보험 활성화 방안 연구 / 이기형, 한상용 2009.3
2009-2 자산관리서비스 활성화 방안 / 진익 2009.3
2009-3 탄소시장 및 녹색보험 활성화 방안 / 진익, 유시용, 이경아 2009.3
2009-4 생명보험회사의 지속가능성장에 관한 연구 / 최영목, 최원 2009.6
2010-1 독립판매채널의 성장과 생명보험회사의 대응 / 안철경, 권오경 2010.2
2010-2 보험회사의 윤리경영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 오영수, 김경환 2010.2
2010-3 보험회사의 퇴직연금사업 운영전략 / 류건식, 이창우, 이상우 2010.3
2010-4(1) 보험환경변화에 따른 보험산업 성장방안 / 산업연구실, 정책연구실, 동향분석실 2010.6
2010-4(2) 종합금융서비스를 활용한 보험산업 성장방안 / 금융제도실, 재무연구실 2010.6
2010-5 변액보험 보증리스크 관리연구 / 권용재, 장동식, 서성민 2010.4

2010-6 RBC 내부모형 도입방안 / 김해식, 최영목, 김소연, 장동식, 서성민 2010.10
2010-7 금융보증보험 가격결정모형 / 최영수 2010.7
2011-1 보험회사의 비대면채널 활용방안 / 안철경, 변혜원, 서성민 2011.1
2011-2 보증보험의 특성과 리스크 평가 / 최영목, 김소연, 김동겸 2011.2
2011-3 충성도를 고려한 자동차보험 마케팅전략 연구 / 기승도, 황진태 2011.3
2011-4 보험회사의 상조서비스 기여방안 / 황진태, 기승도, 권오경 2011.5
2011-5 사기성클레임에 대한 최적조사방안 / 송윤아, 정인영 2011.6
2011-6 민영의료보험의 보험리스크 관리방안 / 조용운, 황진태, 김미화 2011.8
2011-7 보험회사의 개인형 퇴직연금 운영방안 / 류건식, 김대환, 이상우 2011.9
2011-8 퇴직연금시장의 환경변화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영방안 / 김대환, 류건식, 이상우 2011.10
2012-1 국내 생명보험회사의 기업공개 평가와 시사점 / 조영현, 전용식, 이혜은 2012.7
2012-2 보험산업 비전 2020 : ⓝ sure 4.0 / 진익, 김동겸, 김혜란 2012.7
2012-3 현금흐름방식 보험료 산출의 시행과 과제 / 김해식, 김석영, 김세영, 이혜은 2012.9
2012-4 보험회사의 장수리스크 발생원인과 관리방안 / 김대환, 류건식, 김동겸 2012.9
2012-5 은퇴가구의 경제형태 분석 / 유경원 2012.9
2012-6 보험회사의 날씨리스크 인수 활성화 방안: 지수형 날씨보험을 중심으로 / 조재린, 황진태, 권용재, 채원영 2012.10
2013-1 자동차보험시장의 가격경쟁이 손해율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 전용식, 채원영 2013.3
2013-2 중국 자동차보험 시장점유율 확대방안 연구 / 기승도, 조용운, 이소양 2013.5

■ 조사보고서

2008-1 보험회사 글로벌화를 위한 해외보험시장 조사 / 양성문, 김진억, 지재원, 박정희, 김세중 2008.2
2008-2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도입에 대응한 장기간병보험 운영 방안 / 오영수 2008.3
2008-3 2008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안철경, 기승도, 이상우 2008.4
2008-4 주요국의 보험상품 판매권유 규제 / 이상우 2008.3
2009-1 2009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안철경, 이상우, 권오경 2009.3
2009-2 Solvency II의 리스크평가모형 및 측정방법 연구 / 장동식 2009.3
2009-3 이슬람 보험시장 진출방안 / 이진면, 이정환, 최이섭, 정중영, 최태영 2009.3
2009-4 미국 생명보험 정산거래의 현황과 시사점 / 김해식 2009.3
2009-5 헤지펀드 운용전략 활용방안 / 진익, 김상수, 김종훈, 변귀영, 유시용 2009.3
2009-6 복합금융 그룹의 리스크와 감독 / 이민환, 전선애, 최원 2009.4
2009-7 보험산업 글로벌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 / 서대교, 오영수, 김영진 2009.4

2009-8 구조화금융 관점에서 본 금융위기 분석 및 시사점 / 임준환, 이민환, 윤건용, 최원 2009.7
2009-9 보험리스크 측정 및 평가 방법에 관한 연구 / 조용운, 김세환, 김세중 2009.7
2009-10 생명보험계약의 효력상실 · 해약분석 / 류건식, 장동식 2009.8
2010-1 과거 금융위기 사례분석을 통한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전망 / 신종협, 최형선, 최원 2010.3
2010-2 금융산업의 영업행위규제 개선방안 / 서대교, 김미화 2010.3
2010-3 주요국의 민영건강보험의 운영체계와 시사점 / 이창우, 이상우 2010.4
2010-4 2010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변혜원, 박정희 2010.4
2010-5 산재보험의 운영체계에 대한 연구 / 송윤아 2010.5
2010-6 보험산업 내 공정거래규제 조화방안 / 이승준, 이종욱 2010.5
2010-7 보험종류별 진료수가 차등적용 개선방안 / 조용운, 서대교, 김미화 2010.4
2010-8 보험회사의 금리위험 대응전략 / 진익, 김해식, 유진아, 김동겸 2011.1
2010-9 퇴직연금 규제체계 및 정책방향 / 류건식, 이창우, 이상우 2010.7
2011-1 생명보험설계사 활동실태 및 만족도 분석 / 안철경, 황진태, 서성민 2011.6
2011-2 2011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김대환, 최원 2011.5
2011-3 보험회사 녹색금융 참여방안 / 진익, 김해식, 김혜란 2011.7
2011-4 의료시장변화에 따른 민영실손의료보험의 대응 / 이창우, 이기형 2011.8
2011-5 아세안 주요국의 보험시장 규제제도 연구 / 조용운, 변혜원, 이승준, 김경환, 오병국 2011.11
2012-1 2012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황진태, 전용식, 윤상호, 기승도, 이상우, 최원 2012.6
2012-2 일본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체계 특징과 시사점 / 이상우, 오병국 2012.12
2012-3 솔벤시 Ⅱ의 보고 및 공시 체계와 시사점 / 장동식, 김경환 2012.12

■ 연차보고서

제1호 2008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09.4
제2호 2009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0.3
제3호 2010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1.3
제4호 2011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2.3
제5호 2012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3.3

■ 영문발간물

10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8 / 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2008.9

11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9 / 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2009.9
12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0 / 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2010.9
13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1 / 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2011.9
14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2 / 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2012.9

■ CEO Report

2008-1 자동차보험 물적담보 손해율 관리 방안 / 기승도 2008.6
2008-2 보험산업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 관련 주요 이슈 / 이태열 2008.6
2008-3 FY2008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08.8
2008-4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의 영향과 보험회사 대응과제 / 류건식, 서성민 2008.12
2009-1 FY2009 보험산업 수정전망과 대응과제 / 동향분석실 2009.2
2009-2 퇴직연금 예금보험요율 적용의 타당성 검토 / 류건식, 김동겸 2009.3
2009-3 퇴직연금 사업자 관련규제의 적정성 검토 / 류건식, 이상우 2009.6
2009-4 퇴직연금 가입 및 인식실태 조사 / 류건식, 이상우 2009.10
2010-1 복수사용자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및 보험회사의 대응과제 / 김대환, 이상우, 김혜란 2010.4
2010-2 FY2010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10.6
2010-3 보험소비자 보호의 경영전략적 접근 / 오영수 2010.7
2010-4 장기손해보험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보험금 지급심사제도 개선 / 김대환, 이기형 2010.9
2010-5 퇴직금 중간정산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 류건식, 이상우 2010.9
2010-6 우리나라 신용카드시장의 특징 및 개선논의 / 최형선 2010.11
2011-1 G20 정상회의의 금융규제 논의 내용 및 보험산업에 대한 시사점 / 김동겸 2011.2
2011-2 영국의 공동계정 운영체계 / 최형선, 김동겸 2011.3
2011-3 FY2011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11.7
2011-4 근퇴법 개정에 따른 퇴직연금 운영방안과 과제 / 김대환, 류건식 2011.8
2012-1 FY2012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12.8
2012-2 건강생활서비스법 제정(안)에 대한 검토 / 조용운, 이상우 2012.11
2012-3 보험연구원 명사초청 보험발전 간담회 토론 내용 / 윤성훈, 전용식, 전성주, 채원영 2012.12
2012-4 새정부의 보험산업 정책(Ⅰ): 정책공약집을 중심으로 / 이기형, 정인영 2012.12
2013-1 새정부의 보험산업 정책(Ⅱ):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경감제 정책에 대한 평가 / 김대환, 이상우 2013.1
2013-2 새정부의 보험산업 정책(Ⅲ):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안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 이승준 2013.3

■ Insurance Business Report

26호 퇴직연금 중심의 근로자 노후소득보장 과제 / 류건식, 김동겸 2008.2
27호 보험부채의 리스크마진 측정 및 적용 사례 / 이경희 2008.6
28호 일본 금융상품판매법의 주요내용과 보험산업에 대한 영향 / 이기형 2008.6
29호 보험회사의 노인장기요양 사업 진출 방안 / 오영수 2008.6
30호 교차모집제도의 활용의향 분석 / 안철경, 권오경 2008.7
31호 퇴직연금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영향과 대응과제 / 류건식, 김동겸 2008.7
32호 보험회사의 헤지펀드 활용방안 / 진익 2008.7
33호 연금보험의 확대와 보험회사의 대응과제 / 이경희, 서성민 2008.9

※ 2008년 이전 발간물은 보험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iri.or.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기간행물

■ 간행물

○ 보험동향 / 계간
○ 해외보험금융동향 / 계간
○ 고령화리뷰 / 연 1회
○ 보험금융연구 / 연 4회

『도서회원 가입안내』

회원 및 제공자료

	법인회원	특별회원	개인회원
연회비	₩ 300,000원	₩ 150,000원	₩ 150,000원
제공자료	- 연구보고서 - 정책/경영보고서 - 조사보고서 - 기타보고서 - 정기간행물 · 보험동향 · 해외보험금융동향 · 고령화 리뷰 · 보험금융연구	- 연구보고서 - 정책/경영보고서 - 조사보고서 - 기타보고서 - 정기간행물 · 보험동향 · 해외보험금융동향 · 고령화 리뷰 · 보험금융연구	- 연구보고서 - 정책/경영보고서 - 조사보고서 - 기타보고서 - 정기간행물 · 보험동향 · 해외보험금융동향 · 고령화 리뷰 · 보험금융연구
	- 본원 주최 각종 세미나 및 공청회 자료(PDF) - 영문보고서	-	-

※ 특별회원 가입대상 :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도서관 및 대학도서관

가입문의

보험연구원 도서회원 담당

전화 : (02)3775-9113, 9080 팩스 : (02)3775-9102

회비납입방법

- 무통장입금 : 국민은행 (400401-01-125198)
  예금주 : 보험연구원

가입절차

보험연구원 홈페이지(www.kiri.or.kr)에 접속 후 도서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등록 후 회비입금을 하시면 확인 후 1년간 회원자격이 주어집니다.

자료구입처

서울 : 보험연구원 보험자료실, 교보문고,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부산 : 영광도서

『**해외보험금융동향**』 2013년 봄호 (창간호)

발행일 2013년 5월

발행인 강 호

발행처 보 험 연 구 원
주 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
연락처 02-3775-9000

인쇄소 경성문화사 / 02-786-2999

파본은 교환해 드립니다.

본 자료에 실린 내용에 대한 문의는 보험연구원의
국제보험금융센터(☏3775-9073)로 연락하여 주십시오.